■자료 A-13 (동아, 91.11.27.)

91.11.27 동아

日本人 필적감정가 「유서대필」 증인출두

지난 5월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金基尙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총무부장 姜基勳피고인(27)에 대한 9차공판이 27일 오전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5부(재판장 盧元旭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金씨의 유서와 姜씨의 필적에대한 비교감정을 실시, 「유서의 글씨체와 姜씨의 글씨체는 다르다」고 감정했던 일본인필적감정가 오니시 요시오(73·大西芳雄)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니시는 지난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요청으로 金씨의 유서사본과 姜씨의 편지, 金씨의 이력서등 아홉가지의 문건에대해 필적감정을 실시, 『金씨의 유서는 자필로 姜씨의 필적과는 다르다』고 발표, 유서가 대필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상이한 견해를 표시했었다.

일본인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가 28일오전 서울형사지법에서 있은 姜基勳씨 9차공판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다. <金東哲>

■자료 A-14 (동아, 91.11.28.)

91. 11.28 동아

감정의 失手있으나 유서-姜씨필적달라

日전문가 진술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金基尙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총무부장 姜基勳피고인(27)에 대한 9차공판이 27일오전10시부터 여섯차례의 휴정을 거듭하며 밤11시40분까지 13시간40분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일본인 필적감정가 오니시 요시오(73·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명예관원)에 대한 신문이 끝나지 않아 28일오전 공판이 속개됐다.

오니시는 28일 서울형사지법합의25부(재판장 盧元旭부장판사)심리로 속개된공판의 변호인 보충신문에서 『金씨와 姜씨의 글씨에서 특징이 되는 자음과 모음의 숫자를 감정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긴 했으나 그같은 계산상의 착오가 전체적인 필법의 차이를 감정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며 『사본으로 감정을 하긴했지만 두사람 필체의 특징이 워낙 뚜렷해 구분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오니시는 또 27일 검찰신문에서 전민련수첩의 전화번호가 한꺼번에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던 것을 번복, 전화번호란중 일부분은 한꺼번에 한것으로 보이지않는다고 말했다.

오니시는 27일오전 변호인신문을통해 숨진『金씨의 유서는 자필이며 姜피고인의 필적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니시는 그러나 이날오후 검찰의 집요한 반대신문에 『한글을 잘몰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에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니시는 자신이 金씨와 姜피고인의 필적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지목한 ㄹ ㅁ ㅂ ㅎ등 자음4개와 ㅏ ㅑ등 모음2개의 숫자가 감정서에 기재된 것과 감정문건에 실제 나타난 것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 검찰의 추궁에 『계산상 착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니시는 또 『필적감정을 의뢰받을 당시 전민련수첩등 여섯종류의 문건은 金씨의 필적이라는 말을 일본NCC 관계자로부터 전해듣고 이를 전제로 해서 감정을 했다』며 『이들 문건의 필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었다』고 진술했다.

■자료 A-15 (동아, 91.11.28.)

91.11.28. 동아

窓

日감정가의「代筆」증언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일부실수 인정

「증인은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등 한국어에 대해 전혀 아는게 없으면서도 한글필적감정을 할 수 있나요」

『필적감정의 원리는 일본어와 한글이 각기 때문에 한글을 몰라도 얼마든지 감정이 가능합니다』

27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린 유서대필 논란에 대한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일본인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73)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바람에 밤11시40분까지 계속됐다.

오니시는「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金基卨씨유서의 필체와 姜씨의 글씨가 달라 유서가 대필됐을리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상반되는 감정의견을 제시, 이 사건에서 변호인측이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 꼽아온 인물.

오니시는 그러나 이날 자신의 감정에서 틀린부분을 캐는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지금 보니 두 사람의 필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들을 실수로 잘못 지적한 부분도 있고…감정서의 일부 표현도 잘못됐다는걸 인정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7순노인인 그는 답변이 막히는 대목에선 머리를 감싸쥐거나 주전자의 물을 연방 따라마시며 몹시 곤혹스러워 했다.

전민련과 KNCC관계자등 30여명의 방청객들은 오니시의 진술이 기대에 못 미치는듯 난감해하는 기색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준비해온 칠판에 오니시의 감정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일이 써가며 조목조목 신문을 했고 오니시의 답변이 불분명할 때는 통역에게 거듭 확실한의견을 물어줄것을요청하기도했다.

일본의 1급감정가 오니시는 한글을 몰라「아버지」를「아비지」로 잘못보고「ㅂ」자의 특징에 대해 감정을 한 사실들이 검찰반대신문에서 밝혀졌다.

『…한글을 아는 재일한국인들의 도움으로 감정을 했는데 그들이 실수를 한 것같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옳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검사에게 자신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중 너무 세세한 부분은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을했다가 공박을 당하기도 했다.

태극기가 세워진 법정에서 한글필적감정에 대해 오전10시부터 자정무렵까지 증언을 하고 돌아서는 일본인 오니시는 몹시 지쳐보였고 방청객과 재판관계자들도 한결같이 뭔가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밖 어둠속으로 사라져갔다. 〈韓起興〉

91.11.29 동아 第21664號 【第3種郵便物】

「國科搜감정」채택여부 열쇠

「유서代筆」결심公判 관심

검찰 변호인 10차례불꽃攻防

재판부 "결론내리기 쉽지않다"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金基卨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총무부장 姜基勳씨(27)에 대한 1심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사건 1심재판은 28일 열린 10차공판에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이제 결심(오는12월4일예정)과 선고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8월28일의 첫공판 이후 지금까지 재판부(서울형사지법합의25부·鄭元旭부장판사)는 이 사건만을 위한 특별기일을 지정해 공판기일마다 오전부터 오후늦게까지 심리를 진행하는등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나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요청을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받아들이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격 방어전을 최대한 보장, 실체적 진실발견을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사건 재판에는 검찰측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모두 16명이 법정에 나와 양측으로부터 집요한 신문을 받았다. 또 수십건의 물건들이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측과 변호인측 다같이 더 내세울 증인도, 더 제출할 증거도 없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은 일단 막을 내린 셈이 됐다.

현재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입장은 기소당시의 입장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검찰측은 姜씨의 유죄를 확신하고 변호인측은 姜씨의 무죄를 확신하며 나아가 양측은 서로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28일 10차공판을 마친뒤 재판장인 鄭부장판사는「숨진 金씨의 유서가 대필됐는지 아니면 자필인지, 대필됐다면 과연 姜씨가 썼는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않을것 같습니다」고 난감해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부는 이사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려야한다. 재판부가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것은 무엇이 될까.

아무래도 유서를 姜씨의 필적으로 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것으로보인다. 또 검찰측 필적감정인인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52), 변호인측 필적감정인인 일본인 오니시 요시오(73)와 숨진 金씨의 여자친구 洪成銀씨 (25·여)의 증언들이 판단의 보조자료가 될것이다.

재판부가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姜씨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유서대필만으로 자살방조죄를 인정할수 있느냐는 논란에대한 판단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다.

반면 재판부가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가 증명력을 갖지못하게 돼 姜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국과수 감정결과의 공신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다면「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란는 형사재판의 법리에 따라 姜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을것이다.

姜씨의 유 무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도 정작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극히 조심스럽다.

이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姜信旭형사1부장은「姜씨의 유죄를 확신하지만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며「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최소한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무리하게 엮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준 것만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姜씨의 변호인인 柳鉉錫변호사는 진실은 하느님과 姜씨, 그리고 숨진 金씨만이 알겠지만 姜씨의 무죄를확신한다」고말했다.

이사건 1심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숨진 金씨의 유서가 대필이냐 자필이냐 하는 논쟁은 검찰의 수사착수 당시의 수준에서 특별히 진전되게 없는 실정이다. 〈林彩靑〉

■자료 나-11-1(공판기록 975~976)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11 회 **공 판 조 서**

사 건 91 고합 1126 자살방조
91 고합 1328 국가보안법 위반(병합)

재판장 판 사	노 원 욱	기 일	1991. 12. 4. 14:00
판 사	정 일 성	장 소	제 417 호 법 정
판 사	이 영 대	법정의 공개여부	공 개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고지된 다음 기일	1991. 12. 20. 10:00
피 고 인	강 기 훈		출 석
검 사	신상규, 송명석		각 출 석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각 출 석

재 판 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없다는 진술
재 판 장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검사, 변호인)
재 판 장 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쳤다는 고지
검 사 별첨 논고문과 같이 진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가 있으니 공소장 기재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
재 판 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부여
변호인들 별첨 변론요지서와 같이 변론
피 고 인 별첨 최후진술서와 같이 진술
재 판 장 변론 종결

1991. 12. 4.

법원 사무관 맹 일 순
재판장 판 사 노 원 욱

▣자료 나-11-2 (공판기록 977~1060?)

변 론 요 지 서

1991년 12월 4일

목 차

제1. 총 론
1. 유서는 누가 쓰는가
2. 이 사건의 배경-왜곡의 서막
3. 되돌아본 공소사실
4. 검찰의 증거조작 주장에 대하여

제2. 사실론
1. 김기설군의 가족관계
2. 검찰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론
가. 이른바 '대책회의'에 대하여
나. 홍성은 제출메모(압수물 7-2)
다. 홍성은의 수첩에 써준 김기설 전화번호
라. 5.7밤의 전화
마. 업무일지조작 주장에 대하여
바. 수첩조작 주장에 대하여
사. 승의여전 메모에 관한 진술조작 주장에 대하여

제3. 증거론
1. 검찰측 증거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1)감정인
2)감정서 요약
3)검찰의 의도에 따른 감정
4)필적감정의 비과학성
5)감정회보의 누락 등
6)해독불능의 감정결과
7)감정소견의 근거
8)사진자료를 통해본 감정의 부정확성
9)감정소견의 변경
10)업무일지에 대한 감정
11)수첩조작에 대한 감정
12)유서와 피고인 필적의 이동여부
13)한겨레신문 감정의뢰
나. 홍성은의 진술
다. 기타 검찰측 증인
1)장병호
2)이재구
2.결백의 증거들
가. 5.7일밤의 전화
나. 검찰의 필적 오해
다. 수많은 필적자료 및 관련 증인들
라. 수첩복사본
마.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 방식

제4.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제5. 결 론

제1. 총 론

1. 유서는 누가 쓰는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무엇인가의 얘기를 남기고 자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나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의 '유언장'을 대필한

다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자살자의 '유서'를 남이 '대필'하여 준다는 얘기를 우리는 일찌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유서를 쓸 능력이 있건없건 간에, 남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는 이미 자살을 포기한 사람이며, '유서는 내가 써 줄테니 빨리 자살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자살방조가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유서'를 '대필'하여 주었다는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아마도 강기훈 피고인은 자살자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필하였다고 하는 유서의 주인공인 고 김기설군은 글을 모르는 문맹자도 아니고 글씨를 쓰지 못할 신체적 결함도 물론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기설군은, 수도공고 3학년 때 자퇴하고 대학입학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고, 제대후 몇몇 회사를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방명록(증제1, 3, 10호)[265] 등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기설군은 글씨쓰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남에게 유서를 대필케 한다던가 남이 써준 유서를 안고 분신하였다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고, 유서의 내용도 특별한 문장력을 요하는 것들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들이 평소 즐겨 쓰는 문장입니다.

2. 이 사건의 배경 - 왜곡의 서막

이 사건을 흔히 '검찰의 권위'와 '재야의 도덕성'이 걸린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신시대가 앉은 하나의 비극'이며 궁극적으로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 26일에 발생한 강경대군 치사사건은 그동안 지리멸렬 상태이던 재야세력을 다시 결집케 하는 계기가 되어 그 다음날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고 연일 정부 규탄시위가 도처에서 벌어지는 한편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등이 분신한데 이어 5. 8. 08:07경 김기설군이 또 분신을 합니다.

검찰이 어떤 동기에서 상식을 초월한 이 '유서대필'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사기록과 신문보도 등을 종합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김기설의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은 「누님 우리 혜정이 잘 키워주세요 -삼촌 기설-」이라는 필적[266]과 주민등록분실신고서[267] 및 전민련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업무일지[268] 등을 5. 13.에 감정의뢰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인은 5. 13.자 감정의뢰회보[269]에서, 『1)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필적, 2)김기설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와 주민등록 분실신고서는 동일필적이나, 유서와 이들 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와 속필 및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 수 없어 이동여부 논단불가』라고 감정하였습니다.

위 제1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유서가 대필되었다기보다는 김기설 본인의 필적임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업무일지의 대부분이 김기설의 필적이고, 대조문자의 동일특징수가 45% 내지 60%일 경우 '이동여부 불명'으로, 60%에서 70%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다른 특징을 참고하여 동일필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통례이므로(별첨[270] 정창용 『문서감식의 연구』, p.20 및 증인 김형영의 진술) 가족제출 필적 2매 및 분실신고서와 유서와는 동일특징수가 45%에서 70%의 범위내라는 결론이어서 동일필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5. 15.에 제2차로 강기훈 피고인이 1986년도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271]와 김기설이 1991. 2.경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준 메모[272]를 유서와 함께 감정의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5.

265) 총자료집 II책 791쪽, 793쪽, 823쪽 참조.

266) 총자료집 I책 74쪽 참조.
267) 총자료집 I책 44쪽 참조.
268) 총자료집 I책 81쪽 참조.
269) 총자료집 I책 93쪽 참조.
270) 총자료집 III책 3쪽 참조.
271) 총자료집 I책 109쪽 참조.
272) 총자료집 I책 105쪽 참조.

17.자로 위 진술서 및 메모는 모두 유서와 동일필적이라는 회보[273]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메모는 김기설이 "내가 낙서한 것인데 잘 된 것 같다. 읽어보라"고 하면서 홍성은에게 준 것이므로(수사기록 256쪽 참조)[274] 김기설군 본인의 필적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감정결과가 위 메모도 유서와 동일필적이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도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음날 "유서와 업무일지의 필적은 같았으나 김기설이 누나집에 보낸 카드의 필적과는 달랐다. 전민련 관계자들이 김기설 분신 직후 검찰수사에 대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유서필적 위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서둘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설군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 유서가 '상이한 필적'이라고 감정된 바 없고, 더구나 전민련 관계자들이 소위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수사기록 어디를 뒤져보아도 김기설군 분신 직후 전민련 관계자들이 수차 '대책회의'를 열어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5. 18.의 검찰 발표시까지는 '유서대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떻든 위 검찰 발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의 시국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재야운동권에는 치명타를 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성급한 5. 18. 발표를 계기로 검찰의 '왜곡열차(歪曲列車)'는 멈출 수도 되돌아올 수도 없는 궤도에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검찰이 위 발표를 뒤로 미루고 좀더 신중한 조사를 계속 하였더라면 강기훈 피고인을 구속한 뒤 한때 임무영에게 유서대필의 혐의를 두고 허둥대는 헤프닝도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사실과의 갭을 메꾸기 위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사상 초유의 '유서대필'이라는 이 재판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신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73) 총자료집 I책 116쪽 참조.

3. 되돌아본 공소사실의 요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275]는 이렇습니다.

『… 1991. 4. 26.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김기설이 그 투쟁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분신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의와 결행을 용의하게 할 의도로, 1991. 4. 27 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여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의하게 도와주어 김기설이 …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픽션'임을 우리는 압니다.

피고인이 유서를 써주었다는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김기설군이 분신자살한다는 생각을 언제하였다는 것인지, 또 피고인은 김기설군의 그와 같은 생각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공소장은 물론 수사기록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유서를 써주는 행위가 어떻게 그 자살 결심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이 된단 말입니까? 김기설군이 분신자살은 결심하였지만 유서가 없어서, 유서를 쓸 능력이 없어서 분신자살의 결행을 망설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또는 사후 장례식이 걱정되어서 망설

274) 총자료집 I쪽 102쪽 참조.
275) 총자료집 II책 28쪽 참조.

이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또 공소장은 『김기설은 1982경 광탄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라고 적시함으로써 김기설군의 '지식과 문장력 부족'이 유서대필의 동기인양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설군은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3년 중퇴 후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이며, 검찰이 압수한 이력서(압제10-1)[276]에도 『81. 3. 3. 수도공고 입학, 83. 4. 20. 동교 자퇴』라고 명시되어 있고, 아버지 김정렬도 검찰에서 '큰누나가 시집간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기설이가 그곳에서 고등학교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54쪽)[277] 왜 검찰이 '광탄고 1년 중퇴'라고 적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이제까지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인 '픽션'으로 야간 법정시간의 기록까지 세워가며 공방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의 위반된 공소제기로서 같은 법 제32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검찰의 증거조작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전민련측에서 제출한 업무일지나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숭의여전 학생회 간부들이 공개한 김기설군의 메모(변호인 제출 증제5호)[278]나 방명록에 기재된 김기설군의 필적(변호인 제출 증제1, 3, 10)에 대하여도 조작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증거관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전민련을 믿지 않는 선입견에서 비롯되었거나 잘못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로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대군 치사사건 후 결성된 범국민대책회의에 법률자문을 위하여 몇 차례 참석하였던 변호사들과 전민련 관계자들 및 관련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검찰이 5. 18.에 '유서가 대필되었다'라고 발표할 때까지는 일련의 분신자살 사태에 대하여 검찰이 그 배후 조종세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지 유서의 '대필' 혐의에 관하여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전민련측에 김기설의 필적을 제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하였을 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김기설의 책상위에 있던 업무일지를 가져와 5. 11. 연세대학교에서 검찰에 건네주었던 것인데, 5. 18. 검찰의 발표에 놀란 전민련에서는 그때서야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게 되었고, 수첩(압수물 11-1)[279]을 5. 20에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 수첩만 보면 검찰도 유서가 대필되었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업무일지도 수첩도 모두 조작되었다고 강변하고, 숭의여전 학생회 간부들이 가져온 김기설의 메모에 대하여도 조작의 혐의를 두고 어린 여학생들을 밤샘추궁하는 등 철저하게 불신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기설군이 과거에 관계하였던 성남민청련 등에 연락하여 김기설군의 필적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그때부터는 수집되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변호인단에 이를 넘겨주어 법원에 제출케 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오해가 있으실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2 사실론

1. 가족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김기설의 어머니가 계모이므로 유서 내용상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고", "3명의 누나와 자형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서가 아버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써 있으므로 김기설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듯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기설의 셋째 매형인 장병호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인이 김기설의 셋째누나 김화용과 결혼한 것은 1985년으로서 그 이전의 김기설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은 장병호가 알리가 없습니다. 동인은 김기설의 큰 매형과 둘째 누나 이름도 잘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기설이 평소 누나라고 따랐던 증인 이효경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의 어머니가 영안실에서 많이 울면서 진심으로 김기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설이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으므로 집을 떠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누나 등이 김기설을 양육한 바는 없습니다. 김기설의 아버지도 이 법정에서 김기설이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을 위해서 꽃다발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기설의 여자친구 홍성은은 5. 7.밤 김기설의 부탁으로 김기설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찾아가 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관한 통화내용은 유서의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 김기설이 누나 등을 특히 마음속에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서 내용과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2. 검찰 주장에 대하여.

가. 이른바 '대책회의'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1991. 5. 18. 발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홍성은, 이영미, 김진수 등이 모여 피고인의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지금까지 피고인이 나머지 세 사람을 만나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세 사람 등이 만난 것은 3, 4회 있었으나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는 처음부터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컨대 5. 10. 추모모임을 끝난 후 또는 5. 12. 김기설 장례식 후 나머지 세 사람이 피고인을 불러 만났을 뿐입니다. 그것도 추모모임이나 장례식에 관계된 얘기였고, 주로 김기설의 분신 후 상심해 있는 홍성은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을 비롯한 세 사람이 만났을 때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분신사건 때나 단국대학교 최덕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김기설 분신사건 때 최대의 실수는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홍성은의 진술을 인용하여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위 진술 중 "이번 김기설 사건때 최대의 실수는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이다."라는 부분은 "중인을 인터뷰에 내보낸 것이 선배로서 후배를 배려치 못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홍성은의 증언에 의하여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홍성은은 이어서 장례식 운운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은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진수는 홍성은이 증언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홍성은의 증언을 종합할 때, 설사 위 장례식 운운 부분과 최대의 실수 운운 부분이 같은 날에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의 전체적인 맥락은 평소 홍성은을 후배로서 아껴온 김진수가 5. 8. 김기설 분신직 후 극도로 상심해 있는 홍성은을 기자들의 인터뷰 공세에 시달리게 한데 대한 선배로서 미안한 감정에서 한 말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김진수의 말이 유서대필 은폐로 해석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이영미의 증언에 의하면 김진수의 말중 최대의 실수 운운 부분은 5. 10. 김기설 추모모임 후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이고, 장례식 운운 부분은 5. 12. 김기설의 장례식 후 장례식 분위기와 관련하여 한 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영미의 진술이 당시 정황에 부합함은 상식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대책회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것이

276) 총자료집 I책 216쪽 참조.

277) 총자료집 I책 636쪽 참조.
278) 총자료집 II책 쪽 참조.
279) 총자료집 I책 717쪽 참조.

반증되었습니다.

나. 홍성은이 제출한 메모(압수물 7-2)

'그때 나의 마음은 패배와 좌절로 어둠과 연기로 자욱하여 …'로 시작되는 메모(압수물 7-2)는 홍성은이 1991. 2. 18. 10:00경 슈베르트 카페에서 김기설로부터 "내가 낙서한 것인데 잘된 것 같다. 읽어보라"고 받아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메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서와 동일필적이라고 감정되었습니다. 이 메모에 관하여 검찰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쓴 것을 김기설이 가지고 있다가 홍성은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홍성은은 "의혹과 혼돈"속에서 진술한 1991. 5. 17.의 검찰 조사 시에도 "김기설이 자기 글씨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가 잘 쓴 글이라고 생각된다며 읽어보라고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위 메모가 "가상의 내용을 감상적으로 쓴 낙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홍성은의 진술을 종합할 때, 위 메모는 현실의 일과는 무관한 낙서로서 김기설이 2. 18. 홍성은에게 둘이 만난 자리에서 주었다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위 메모가 피고인이 쓴 것이라기 보다는 김기설이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훨씬 자연스럽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김기설이 위 메모를 줄 때는 1991. 1. 20. 처음 만난 이후 꼭 4번째 만나는 자리였습니다.(수사기록 250면)[280]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이제 막 이성간의 교제를 시작한 때로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때입니다. 특히 김기설의 경우는 피고인에게 졸라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자리여서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할 때 「위 메모가 본래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데, 김기설이 이를 가져다가 잘 쓴 메모라고 하면서 홍성은에게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특히 홍성은이 그때까지만 해도 김기설보다는 피고인과 친구 이영미를 함께 더 자주 만나고 있을 때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그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 남자가 쓴 메모지를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가장해서 읽어보라고 하며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김기설이 위 메모지가 피고인이 행여 볼까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홍성은에게 당부한 부분이 없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이 메모를 쓴 것이라면 어떤 경로로 김기설의 손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당시 피고인과 김기설은 전민련에 같이 일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총무국, 김기설은 사회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로 내근인데 반하여 김기설은 바깥에서 대부분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이로 보나 전민련 경력으로 보나 김기설의 선배됩니다. 따라서 김기설이 피고인이 쓴 메모를 몰래 훔쳤을 리는 없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김기설에게 주었어야 이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상적인 낙서에 불과한 메모를 피고인이 김기설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든 본인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김기설이 이제 막 교제하기 시작한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쓴 것처럼 가장하여 가지라고 주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론구성을 해도 피고인이 위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검찰의 논리는 기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홍성은은 김기설이 메모를 쓰는 것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성은이 기억하는 두 사람의 대화내용, 교제의 기간, 교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김기설 및 홍성은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위 메모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당시 상황을 머리에 그려볼 때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성은이 위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을 때 검찰은 보다 신중하고 냉정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 메모가 유서필적과 흡사하자 위 메모는 피고인이 쓴 것으로 바로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합리성과 객관성 및 상식을 뛰어넘은 발상과 착상이 이 사건 전반에 깔려 있는 검찰 논리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100년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저 유명한 '드레퓌스 사건'에서, 독일과 내통하는 비밀문서를 보고 딱 한눈에 드레퓌스가 쓴 것 것이라고 단정한 프랑스 군부의 놀라운 직관력(?)과 어딘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체의 골격과 진행 양상이 어쩌면 그렇게도 100년전의 드레퓌스 사건과 흡사한지 정말 아연할 따름입니다.

다음, 메모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메모는 피고인이 아니라 김기설이 쓴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단히 감상적으로 쓴 것입니다. 실제의 일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상념을 가상적 상황에 투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이나 문자의 형태를 볼 때 한날에 쓴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쓰여진 시기도 "새해 이제 27"이란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새해를 앞둔 연말에 쓰여진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든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풍기는 느낌은 대단히 회의적이고, 반성적인 성품의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이든 어떻든 이성에 대하여 간절한 동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래가 회의적인 성품도 아니고 감상적인 성품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여자친구 이영미와의 관계는 교제한 기간이 오래되고 서로 장래를 약속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므로, 두 사람의 교제관계에 비추어볼 때 위 글의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사려깊은 마음" 운운 부분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낯선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설은 1965. 11. 27.생이므로 1991년이면 '새해 27세'가 되지만, 피고인은 28세가 됩니다(새해 되면서 이제 몇세 된다라고 할 때, 이때 나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만 몇세가 된다라고 나이를 세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 내용도 위 메모는 김기설이 쓴 것임을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 메모를 전달하는 과정이나 그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메모는 김기설의 쓴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메모가 유서필적과 같다는 것은 검찰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결백은 증명되었습니다.

다. 홍성은 수첩에 써준 김기설 전화번호

홍성은이 유서대필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품게 된 것은 5. 17. 검찰 조사 때부터 였습니다(수사기록 432면,[281]) "그 당시 저는 김기설의 유서가 그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라는 홍성은 진술 부분 참조).

따라서 홍성은이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것이 아니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1991. 5. 13. 조사에서 홍성은은 그의 수첩을 제시하면서 3. 20. 메모란 부근의 글씨와 약도, 뒤 모눈종이 부분에 쓰여진 "김기설 743. 9127 f)742. 8289"라는 것이 김기설이 써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위 진술은 앞서와 같이 유서대필의 의혹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홍성은이 실제 사실과 달리 말할 이유가 없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위 약도 및 전화번호 기재는 김기설이 쓴 것임이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1991. 5. 1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홍성은은 위 전화번호 기재부분은 김기설이 아니라 피고인이 5. 10.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홍성은은 그동안 불안한 상태에서 몇가지 밝히지 않았던 사소한 것에 관해서 상당한 추궁을 받았고, 밤을 새운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았으며(중간에 증거보전 절차까지 들어 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제시한 압수물 9-1(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으로 된 편지)[282]이 진짜 피고인이 쓴 것이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동 필적이 유서와 똑같지 않느냐는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 자신도 같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김기설 및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의혹과 혼돈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변경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전화번호 기재 부분은 현재 누가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5. 10. 피고인이 쓰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앞서의 전화번호는 검찰이 그동안 피고인이 유서대필했다는 데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혐의점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김기설의 분신직후인 5. 10. 홍성은을 만나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써놓은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수사기록 437면,[283]) "그 당시 진술인은 김기설의 유서가 자필이 아니고 바로 강기훈의 글씨였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받게 될 경우 마치 김기설이가 생전에 진술인의 수첩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 놓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뜻이라고 생각

280) 총자료집 I 책 102쪽 참조.

281) 총자료집 I 책 181쪽 참조.

282) 총자료집 I 책 952쪽 참조.

283) 총자료집 I 책 181쪽 참조.

하지 아니하였는가요"라는 검사 질문 참조).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우선 홍성은이 5. 10. 피고인이 쓰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였으므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홍성은이 김기설 분신자살 후 피고인을 만난 것은 분신 후 연대내에서 분향하면서 잠깐 서로 보았던 것이 한번, 5. 10. 카페에서 둘이 만난 것이 한번, 같은 날 저녁 및 5. 12. 저녁 이영미, 김진수와 같이 만난 것 등 모두 4번입니다. 5. 10. 피고인이 홍성은의 수첩에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김기설의 분신 후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홍성은의 수첩에 기재한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홍성은은 이 수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준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말해준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김기설의 분신전에 피고인이 분신후의 일에 대비하여 홍성은의 수첩에 위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결국 "5. 10. 피고인이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는 홍성은의 증언은 피고인이 위 김기설 전화번호 기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서대필 여부에 관하여 전혀 짐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유서대필혐의가 피고인에게 미치고 있으리라고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1991. 5. 17.자 홍성은 자술서,[284] "맨처음 조사받을 때 제출한 쪽지가 기설씨가 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썼고, 그것이 유서를 쓴 사람과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다"는 부분 참조), 피고인이 쓴 것을 김기설이 썼다고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은 홍성은이 김기설의 여자친구로서 결혼상대로까지 서로 생각했던 바를 감안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설은 그 무렵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홍성은 수첩내의 3. 20. 메모란 부분에 서로 만날 장소의 약도까지 그려주고 장소이름을 썼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이 약도가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284) 총자료집 I책 160쪽 참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홍성은이 이 부분까지 제시하며 사실을 숨기려 했겠습니까. 1991. 5. 13. 검찰에서 홍성은이 한 김기설 전화번호 기재부분은 "의혹과 혼돈" 속에서 진술한 1991. 5. 17.의 진술과는 달리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홍성은은 당시 "약도는 김기설이 1991. 3.경 위 수첩을 저에게 주었는데, 약속장소를 저의 집과 자신의 자취집인 모래내의 중간지점인 신촌으로 하자고 하며 신촌 복지다방을 아느냐고 하였다가 제가 모른다고 하자 버스안에서 적어준 것이고, 전화번호는 1991. 4. 경 어느 카페안에서 적어준 것으로 모두 제 앞에서 직접 적어준 것입니다."[285]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기설 전화번호는 김기설이 홍성은 앞에서 직접 적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 기재가 유서와 같다는 사실은 검찰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유서는 김기설이 썼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뒤의 김기설의 수첩부분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 국번호 다음에 예컨대 529- 7238식으로 "-"를 넣어 쓰는데 반하여, 김기설은 국번호 다음에 "."를 찍어 쓰는 습성이 있는바, 홍성은의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 역시 "743. 9127"로 기재되어 국번호 다음에 "-"가 아닌 "."이 찍혀 있는 걸로 보아 김기설이 쓴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라. 5. 7. 밤의 전화

홍성은은 1991. 5. 7. 밤10:30경 김기설과 헤어진 후 11:30경 공중전화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홍성은은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 "기훈이형 왜 사무실에 안 나왔느냐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기에 … 아마도 술주정 때문인가 생각하고 "괜찮다"고 말한 뒤 "김기설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며 김기설씨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말해주었습니다."라고 1991. 5. 17. 검찰조사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수사기록 436면)[286]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홍성은의 이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행을 알고(방조한 관계로) 그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뜻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은 정말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만일 피고인이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방조하고 공소사실대로 은밀히 부추기고 있었다면 이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교활하고 도덕적으로 파탄된 성격의 소유자임이 분명한데, 도대체 그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그전날 왜 사무실에 안 나왔느냐, 그리고 건강상태를 묻는 통화에 대하여, 대뜸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방조하였으니 미안하다라고 말할 리 만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기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부분은 피고인은 무슨 전화번호인지 몰라 기억이 없다하고 있는 바, 홍성은의 진술대로 김기설 아버지의 전화번호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맥락상 앞의 "미안하다"는 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홍성은의 목소리가 작은 점, 밤늦은 시각에 처음 홍성은의 전화를 받은 점, 공중전화이기 때문에 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통화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의 통화나 내용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피고인의 기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아가 5. 7.밤 홍성은이 피고인의 집에 전화건 경위는 이 사건 정황에 있어서 피고인이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사전에 몰랐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항을 두어 밝히기로 합니다. 5. 7.밤의 전화 역시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 업무일지 조작 주장

검찰은 지금까지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이 검찰의 요청을 받고 김기설의 필적으로 제출한 전민련의 업무일지에 대하여 동일지는 유서필적과 같으나, 피고인이 마치 김기설이 쓴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전민련 업무일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3장으로 되어 있는 바, 첫째장이 중간에 잘려 있는 부분을 가리켜 실은 떨어져나간 쪽에 김기설이 진짜 쓴 일지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찢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일지야 말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보이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일지는 서준식이 처음 검찰로부터 김기설 필적자료 요청을 받고 특별한 생각 없이 김기설이 작성하던 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업무일지와 유서가 동일인이 쓴 것이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 왔습니다.

업무일지가 1인이 쓴 것으로서 피고인이 썼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한 이후 5회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검찰은 매 조사시마다 업무일지와 유서를 피고인 앞에 펴 보이고 양자가 동일인이 쓴 것이니 만큼 업무일지는 피고인이 김기설이 쓴 것처럼 조작하지 않았느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피고인은 물론 업무일지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전민련 관계자 누구도 업무일지는 김기설 1인이 작성한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진출두한 지 11일째 되는 날인 1991. 7. 5.에 이르러 뜻밖에도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업무일지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검사로부터 심하게 추궁받았으나, 어쩔 수 없이 자꾸 업무일지를 보던 중 피고인은 업무일지 맨 앞장의 글씨가 전민련 동료인 이동진의 글씨고, 둘째장의 파란볼펜 글씨로 쓰여진 "4/9 4월혁명 기념대회 준비"가 마찬가지로 전민련 동료인 임무영의 글씨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두 사람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전민련 내의 총무국에서 일을 보면서 전민련 실무자들로부터 각자가 작성한 초고를 받아 타자하여 컴퓨터 문서를 정리하고 발송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각자의 글씨를 어느 정도 눈여겨 알고 있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앞장이 이동진의 글씨이고, 둘째장의 일부분이 임무영이 쓴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업무일지가 이미 유서와 동일인이 쓴 필적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업무일지를 쓴 사람이 유서를 쓴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검찰의 주

285) 총자료집 I책 103쪽 참조.
286) 총자료집 I책 182쪽 참조.

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업무일지는 김기설이 아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전체를 다시 써서 검찰에 제출하게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김기설 본인이 쓴 것처럼 꾸미는 마당에, 바꿔 말하면 업무일지가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보이도록 의도하고 있는 마당에 3인의 필적이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임무영이 쓴 부분은 별도로 독립된 장이 아니고 업무일지 한 가운데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업무일지 내에 이동진, 임무영의 필적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당시 검찰은 업무일지가 3사람이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앞장은 이동진이 쓰고, 나머지 두장은 피고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동일인이 내쳐 끝까지 쓴 것으로 논리를 폈습니다. 만일 나머지 2장을 동일인이 썼다면 비록 처음 업무일지가 유서필적과 동일하고 1인이 썼다는 감정결과는 잘못되었지만, 최소한의 논리구성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앞서의 "4/9 4월 혁명기념대회 준비"가 임무영이 쓴 것임은 확인되었으므로, 둘째장과 나머지 셋째장 모두 임무영이 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991. 7. 5. 자술서에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업무일지의 복사본을 보고 업무일지 2번째항 중하단의 '4월혁명 기념대회준비'가 다른 것들과는 다른 필적이며 필기구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필적은 다른 것이 없고, 한 사람의 필적(맨 앞장을 제외하고)으로 보였으며, 필기구가 다르다는 것은 정확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번째, 3번째 장은 1번 혹은 2번에 나누어 한꺼번에 기재되었음을 원본을 보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287] 라고 쓰고 있는 바, 당시 검찰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음이 쉽게 이해됩니다(이 부분 자술서는 피고인이 도대체 업무일지를 쓰거나 조작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그가 스스로 김기설이 쓴 것처럼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면, '4월혁명 기념대회준비'가 다른 것들과는 …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데'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 시점에서 검찰은 적어도 업무일지가 피고인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앞서의 논리와 같이 둘째장, 셋째장은 한 사람, 임무영이가 쓴 것으로 결론짓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피고인의 2회 공판진술중 "하루는 부장검사가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승의여전 학생들이 김기설의 필적이라 하여 가져온 메모와 무슨 노트를 책상에 내던지며 '봐라, 똑같지 않느냐'라고 소리쳐서 그 노트를 보니까 임무영의 노트였고 육안으로 보기에 승의여전 메모의 글씨와 너무나 같아서 한동안은 임무영이가 유서를 대필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288] 는 부분 참조). 이때부터 검찰은 임무영이 이 사건 유서대필의 진범으로 단정하고 "현상금을 걸고 잡으러 다녔습니다"(피고인의 2회 공판진술).[289] 말하자면 이때 검찰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유서대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임무영은 1991. 7. 6. 안기부 요원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어 사실상의 유서대필 피의자로서 만 이틀동안 혹독한 신문과 추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업무일지 둘째장중 앞서의 "4/9 4월혁명 기념대회준비"가 동인이 쓴 사실만 확인되고 동인은 유서를 결코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임무영은 위와 같이 혐의가 없었으면 곧 석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엉뚱하게 구속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마땅히 피고인을 무혐의로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피고인이 임무영을 끌어들이려 했다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죄의 멍에를 계속 씌우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업무일지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유서를 쓰지 않았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업무일지가 3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업무일지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필적을 꾸미려고 조작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유서와 같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3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 것을 김기설의 필적으로 제출할 리 만무합니다. 즉 상식적으로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든 어디든 만일 필적감정을 하면 3사람이 쓴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설령 실제 3인이 썼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조작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1인이 다시 써서 한 사람의 필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게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인의 필적이 있는 그대로 제출해도 결국 유서필적과 동일필적으로 판명되어 그 의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3인의 필적을 구별해 내지 못할 정도로 감정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정도의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물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업무일지와 유서가 모두 1인이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요컨대 업무일지는 이동진, 임무영 외에 김기설이 생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은 김기설이 주로 업무일지를 작성했음을 알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한 것뿐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로 향하는 해석은 자연스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허위로 향하는 해석은 복잡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유서는 업무일지라는 문서처리 양식을 직접 만들고, 그 대부분을 기록한 김기설 본인이 쓴 것입니다. 업무일지 조작시비를 둘러싼 과정에서 이 단순한 진실은 놀랍도록 명쾌하게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자백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찾아낸 이 진실, 이동진과 임무영의 필적이 눈앞에 드러나는 과정은 불가사의한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바. 수첩조작 주장에 대하여

1991. 5. 20. 전민련은 검찰에 김기설이 생전에 사용하던 수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수첩은 5. 7. 저녁 김기설이 홍성은에게 건네준 것으로서 홍성은이 가지고 있다가 5. 8. 점심 무렵 전민련 실무자인 원순용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수첩은 그동안 연대내의 범국민대책회의 사무실, 전민련 사무실내에 보관되어 있다가, 검찰의 유서대필 혐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자 1991. 5. 19. 찾아서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수첩이 처음 검찰에 제출되자 아직 정밀한 감정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첩이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5. 25.경에 이르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수첩중 떨어진 형태로 끼워져 있는 전화번호기재 부분 3매가 수첩의 잔류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감정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위 수첩은 조작된 것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찰의 수첩 주장이 과연·논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위 수첩은 외관상 상당기간 사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서 새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첩이 본래 완전하게 제본된 것이라고 가정할 때(제본과정에서 파본이 생기거나 종이가 덧 끼워져 있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 수첩이 완전하게 제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화번호 기재부분 종이 한장과 뒤의 모눈종이 3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주로 필기구의 색깔에 관한 홍성은의 진술과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위 수첩은 김기설의 수첩이 아니라 본래 피고인의 수첩인데 그 위에다 피고인이 김기설의 수첩을 보고 그안의 내용을 피고인의 수첩에다 옮겨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필기구의 색깔 기억에 관한 홍성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엉터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뒤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검찰의 수첩조작 논리만 검토해보기로 합니다. 검찰의 수첩조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기설이 5. 7. 저녁 홍성은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설의 수첩을 전화번호기재쪽이 3장(또는 4장)이 떨어져 끼운 상태로 홍성은에게 주었다.

(2) 홍성은은 이 수첩을 김기설 분신 후인 5. 8. 전민련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홍성은이 전민련에 건네준 이 수첩의 전달과정과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김기설의 수첩과 같은 형태의 1991년 전민련 수첩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

287) 총자료집 Ⅰ책 82쪽 참조.

288) 총자료집 Ⅱ책 88쪽 참조.

289) 총자료집 Ⅱ책 88쪽 참조.

(5) 피고인은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첩을 마치 김기설의 것인 것처럼 조작하려고 마음먹었다.

(6) 1991. 5. 8. 오후부터 1991. 5. 20. 검찰에 제출될 때까지 사이의 어느날 피고인은 김기설 수첩을 빼내었다.

(7) 피고인은 1차 피고인의 수첩 여백에 김기설의 일정에 관계된 메모를 옮겨 적었다.

(8) 이어서 김기설의 떨어진 전화번호 부분 3매를 옮겨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첩 전화번호란은 이미 꽉차 있거나 적어도 3매 이상 기재할 공간이 없었으므로, 다른 수첩을 도용하기로 했다.

(9) 그런데 당시 상황이 급하여 새 수첩은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던 전민련 수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는 바, 보통 처음 전화번호 기재부분은 누군든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므로, 여백이 있는 둘째장부터 차례대로 석장을 옮겨썼다(김기설 수첩의 전화번호란 제일 첫장이 없는데 대한 이유이다).

(10) 피고인은 피고인 본래의 수첩에다 이와 같이 다른 수첩에서 뜯어 거기에 김기설의 전화번호란을 옮겨쓴 3장을 떨어진 채로 끼워 넣었다.

(11) 이렇게 하여 수첩조작이 완성되었다. 수첩조작에 동원된 수첩은 본래의 김기설 수첩, 피고인의 수첩, 제3의 전민련 수첩 등 모두 3개가 동원되었다.

(12) 피고인은 이 조작된 수첩을 보관 장소에 도로 넣었다.

(13) 전민련은 이 수첩을 김기설의 것이라 하여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게 3개의 수첩이 조작에 동원된 관계로 전민련이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제출한 수첩 몸체와 떨어진 채로 끼워져 있는 3장의 절취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검찰의 논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리야말로 이 사건이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맹목적 사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의 위 추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려면 수첩 절취선이 과연 일치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피고인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는 1991년도 전민련 수첩을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왜냐하면 기왕에 조작의 의도가 있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바의 절취선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과연 베꼈는지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새 수첩에 처음부터 김기설의 수첩에 적은 것을 필기구 색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떨어진 부분 3장도 바로 같은 수첩에서 3장을 뜯으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검찰에 제출된 수첩이 기왕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최소한 몇군데 정도 피고인 자신의 스케즐임을 나타내는 대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먼저 첫번째 전제에 관하여 보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상식에서 어긋나 있는 것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만일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고, 실제의 김기설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어 진짜 수첩이 공개되는 경우 그의 유서대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하였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수첩을 찾아내어 폐기시키거나 다른 곳에 감춰두는 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적극적으로 유서를 김기설이 썼음을 수첩조작을 통해서 보이고자 기도한다면, 이는 상당히 지능적이고 교활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능한한 최대한 남이 쉽게 구별 못하게 수첩조작을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김기설 수첩이 홍성은에게서 전민련측에 전달된 때인 5. 8. 오후부터 5. 20. 무렵까지 10일 이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수첩은 서류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그는 새 수첩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새 수첩을 구한 연후에야 수첩을 찾아내어 조작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쓰지 않은 1991년도 전민련수첩은 전민련 사무실내에도 상당수 있고, 피고인은 내근자인 관계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 수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새 수첩을 선택하지 않고 그가 쓰던 수첩을 선택했다는 이 전제는 사회통념상 대단히 무리한 가정입니다.

두번째로, 피고인이 만일 피고인의 수첩에 김기설의 수첩을 옮겨 적었다면 최소한 피고인 자신의 스케즐이 상당부분 수첩 어딘가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마도 검찰은 정말 철저하게 수첩에 기재된 메모전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첩에 기재된 내용중 피고인에 관한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도 피고인에 관한 것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 김기설의 수첩에 기재된 모든 메모는 김기설에 관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침묵은 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수첩이 본래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발을 디딜 데가 없어졌습니다.

검찰은 위 수첩의 글씨가 유서와 완전히 일치하니까, 수첩이 조작되었으며, 조작에 동원된 수첩이 3개나 된다는 웃지 못할 괴기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은 분명히 김기설의 것입니다. 김기설의 수첩이 분명하고 그 글씨가 바로 유서글씨와 같은 것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유서대필 시비는 벌써 종결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사. 숭의여전 메모에 관한 진술조작 주장에 대하여

1991. 4. 18. 김기설은 속초 동우전문대 정연식학생분신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숭의여자전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보령 등에게 시민궐기대회 등의 일정을 직접 쓴 메모를 주었습니다. 당시 이보령 등이 모금을 하겠다고 하여 모금이 쉽게 될 수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대중집회 일정을 적어준 것입니다. 이보령은 위 메모를 보관하고 있다가 1991. 5. 20. 혹시 숭의여전 학보사에 김기설의 원고가 남아 있는지 문의하는 이동진의 전화를 받고 동인에게 위 메모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령은 위 메모 원본을 복사하여 부회장인 최수미에게 2매를 맡긴 후(최수미 자술서[290] 참조), 원본을 가지고 명동성당에 가서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을 만나 원본을 전달하고 다음날 기자회견전에 다시 받아 원본을 공개한 후 이를 서준식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 원본의 사본은 그후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으면서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이보령이 기자회견시 공개한 메모가 동인이 4. 18. 김기설로부터 받은 바로 그 메모이고, 또 검찰에 제출한 사본이 바로 그 원본을 복사한 것임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보령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검사 신상규의 물음 "그후 91. 5. 20. 저녁에 증인은 명동성당에 가서 김기설로부터 받았다는 메모지라는 것을 전민련측에 넘겨주었다가 다음날인 5. 21. 오후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였지요"에 대하여 "예" 하고 답변한 부분[291] 참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김기설이 4. 18. 적어준 그 메모지가 언론에 공개되고 그 사본이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자회견 전날에 메모지 원본이 서준식에게 건네준 사실을 처음 조사 당시에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들어 진술조작 운운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메모지 원본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검찰도 이를 확인한 이상,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과연 그 메모지 필적이 유서필적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만일 메모지 원본이 바꿔치거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문제삼으면 되고, 메모지 원본이 분명한 것이라면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든지 해서 유서와의 동일성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진술을 달리 하였다고 해서 메모지 원본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변조라도 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메모지 원본이 조작되었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앞의 진술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원본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조작만 부각시킵니까.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잔꾀만 부리고 치졸해졌습니까.

290) 총자료집 Ⅰ책 376쪽 참조.

291) 총자료집 Ⅱ책 191쪽 참조.

제3. 증거론

1. 검찰측 증거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

(1) 감정인

검찰은 이 사건에서 모두 10회의 감정의뢰를 하였고, 보충질의를 1회하였습니다. 감정결과는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실장인 김형영 명의로 작성 보고 되었습니다.

김형영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감정의뢰는 문서분석실의 감정요원 4명이 모두 심의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되, 주로 증인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 감정서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형영이 중심이 되어서 한 이 사건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의뢰 및 회보요지

* 1차 의뢰(5. 13) - 012032 유서 2매, 김기설가족 제출 필적 2매,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1매, 업무일지 3매, 책표지 필적 1매 (국민연합 김기설님)	* 1차 의뢰회보(5. 15) · 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필적 · 가족제출 2매, 분실신고서 : 동일필적, 단 유서와는 유사점·차이점이 공존,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 알 수 없어 이동여부 논단 불가
* 2차 의뢰(5. 15) - 012296 피고인 진술서 2매, 유서, 김기설이 홍성은에게 준 메모	* 2차 의뢰회보(5. 17) 유서와 모두 동일필적
* 3차 의뢰(5. 21) - 012751 유서 2매, 피고인 진술서, 피고인 옥중편지	* 3차 의뢰회보(5. 29) 유서, 진술서는 원본이나 편지는 사본-사본은 특정현출상태가 약하여 미세한 특징을 비교 검사 어려워 이동논단 불가.
* 4차 의뢰(5. 21) - 012752 수첩 1권, 피고인 진술서, 김기설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 4차 의뢰회보 없음
* 5차 의뢰(5. 23) - 013041 유서, 분실신고서, 이력서, 누나선물책 메모, 김기설 친구 안혜정이 받은 편지·카드	* 5차 의뢰회보(5. 25) ①유서 ②분실신고서 ③이력서 ④책 메모 ⑤편지봉투, 내용 ⑥카드봉투, 내용 ⑦수첩 감정결과 : ①은 싸인펜 속필, ②내지 ⑥은 전체적으로 정서, ⑦은 좁은란에 정서형태와 싸인펜 속필형태의 차이가 있어 변화상태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부적합하나, ②내지 ⑥은 동일필적으로 사료되고, ②내지 ⑥과 ①, ⑦은 정서와 속필상의 변화상태 알 수 없으나 상이필적으로 사료됨
* 6차 의뢰(5. 25) - 013245 수첩, 분실신고서, 이력서, 책 메모, 위 편지·카드	* 6차 의뢰회보 없음
* 7차 의뢰(5. 24) - 013052 수첩절취선 일치 여부	* 7차 의뢰회보(5. 25) 절취선 불일치 ; 3매의 여러 곳, 연필기재 문자 밑에 강한 필압형태 나타나 있으나 그 필압 아래에 있어야 할 필압흔적 판찰 안됨
* 8차 의뢰(5. 27) - 013378 유서, 수첩, 피고인 진술서	* 8차 의뢰회보(5. 29) 동일필적
* 9차 의뢰(5. 28) - 013499 유서, 수첩, 홍성은 제출 메모, 화학노트, 피고인 진술서	* 9차 의뢰회보(5. 29) 동일필적
* 10차 의뢰(6. 27) - 016452 유서, 수첩, 일터에서 90, 화학과 당시 공책, 피고인 진술서(85.11.18) 3매, 피고인 진술서(85.11.22) 4매, 항소이유서, Two Tac 13매, What is 9매	* 10차 의뢰회보(7. 4) 동일필적
* 보충질의(5. 27) 절취선 일치 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보충질의	* 7차 회보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5. 29) 잔류형태 3매 정도, 1매는 길게 잔류, 2매는 상단에 부분적으로 돌출된 부분이 잔류함

(3) 검찰의도에 따른 감정

여기서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건 감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김형영도 이에 대하여 처음 변호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292]하였습니다.

292) 총자료집 Ⅱ책 122쪽 참조.

문 : 필적감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정인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필적자료에 관하여 감정에 앞서 의뢰자측으로부터 필적자료의 경위, 작성시기, 작성방법 등을 묻거나 듣지 않고 오직 제시된 필적자료의 내용과 형상에만 집중하여 감정하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건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검찰측으로부터 감정목적물인 필적자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압수경위 및 배경 등을 들은 바가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이건 각 필적감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검찰측을 비롯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오직 증인에게 제시된 필적자료만에 의하여 증인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 필적감정을 행하였나요.

답 : 예.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감정의 중립성을 말하면서도 실제 있어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293] 철저하게 검찰의 의도에 맞추어 감정을 하였습니다.

문 : 그런데 증인이 한 감정사항은 위 유서필적과 다른 나머지 필적여부의 이동 여부로 변경되어 있어 본래의 감정의뢰사항과 다르게 감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각각 이동 여부를 감정여부하려면 복잡하므로 검사에게 전화해 "얻어야 할 목적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유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렇다면 유서와 다른 것들과의 이동여부를 감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여 그렇게 감정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위 업무일지가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3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 사실을 아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어떻게 위 사실을 아나요.

답 : 검사가 얘기 하였습니다.

293) 총자료집 Ⅱ책 125쪽 참조.

문 :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하였나요.

답 :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 동일한 부분만 감정대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 4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요.

답 : 검사로부터 감정할 무렵에 들었습니다.

문 : 검찰에서 의뢰할 때 추가자료가 책자 글씨와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답 : 예, 그리고 감정도 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 답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김형영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제시받으면 오직 그 자료에 집중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검사와 연락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될 사항까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감정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증거가치가 없습니다.

(4) 필적감정의 비과학성

필적감정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의뢰자에 따라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도 문제되지만, 일반적으로 언제나 옳은, 누구에게나 타당한 과학의 범주에 속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점은 상식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김형영도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문 : 개인의 숙련도와 능력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한 필적을 감정하는 때에도 경우에 따라 감정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지요. 답 : 예. 문 : 이건 필적감정의 결과도 1+1=2 또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정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이 사건 필적감정결과와 일치 않을 수도 있는가요. 답 : 예. 등 참조).[294]

필적감정이 본질적으로 과학성이 결여된 관계로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필적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과 또는 강좌가 없고,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시험제도

294) 총자료집 Ⅱ책 119쪽 참조.

등도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감정결과에 관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김형영의 경우도 1980년경 허위감정죄로 구속되어 복역한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김형영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동일사안에 대하여 3-4명이 감정을 하여 증인과 다른 판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김형영은 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동인과 다른 판정을 한 사설감정인들이 대체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결과가 서로 상반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필적감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검찰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김형영에 대한 무죄판결에 의하면 2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원 이인환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이인환은 검찰이 역시 참고자료로 제출한 한겨레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감정한 이인환 바로 그 사람으로 보인다. 이인환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김형영과 같은 소견을 내어 김형영을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였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형영과 상반되는 감정결과를 내놓고 있는 바, 이것은 필적감정의 비과학성과 개인 및 입장에 따른 편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인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는 뒤에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필적감정은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그 감정결과의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요컨대 다른 객관적인 입장자료 없이 필적감정 결과만에 의하여 어떤 결론을 단정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외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 사건의 핵심에 관한 한 거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홍성은의 진술 하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건 감정결과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의 이건 공소는 대단히 무리하게 유지되었음이 분명합니다.

(5) 감정회보의 누락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은 감정의뢰인과 감정의뢰 및 감정목적물에 대하여서만 서로 연관이 있고, 감정인은 오직 감정의뢰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모두 10회의 감정의뢰 및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감정회보도 마땅히 11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위 4차 의뢰 및 6차 의뢰에 대하여는 회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형영은 "검사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회보와 묶어 보냈다고 하면서도, "감정 완료한 시기가 언제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의뢰를 하면 반드시 독립된 문서로서 서무계에 접수인이 찍혀야 하는데도 "문서는 일일이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이 "검사의 양해"에 따라 두건의 감정회보를 다른 감정회보와 함께 묶어 보냈다는 것은 동인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동인은 각각의 감정이 끝나면 감정물은 바로 검사가 와서 가져갔으며, 검사가 연구소에서 보관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호모순되는 진술은 감정과정 전체가 김형영이 독립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검사의 양해와 편의에 따라 감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건 감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6) 해독 불가능의 감정결과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사건 감정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감정방법"이라고 기재한 부분과 "감정소견"입니다. 감정방법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정하였느냐를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8차례의 감정결과를 살펴볼 때 감정방법은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현미경, 확대투영기,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 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 …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및 숙련과 미숙련 차이, 자음과 모음의 특징, 개인의 특성, 잠재습성 등을 주시 검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 등은 필적감정이 아니라 인영감정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또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머지 감정방법도 언제나 실제로 그렇게 각 특성을 주시 검사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각 개인의 필적이 그 잠재적 습성이나 개성의 표현이 모두 다르고, 필적자료의 질이나 양도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각각의 감정마다 감정방법도 일률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적감정에도 사용되지 않는 도구들까지 열거하며 온갖 감정방법을 수행한 것처럼 나열한 것은, 이건 감정이 과연 필적자료의 특징에 맞춰 세심하게 이루어졌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감정방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정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논리적 추론에 해당하는 감정소견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건 감정을 보면 앞서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감정방법에서 몇가지 항목을 따와 동일필적이라든가, 다른 필적이라든가로 기재하고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서 감정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필적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우선 글자를 가로 또는 세로로 쓰는 방향에서의 특징 여부 및 유사 여부를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각 글자와 글자,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모양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예컨대 글자의 쓰는 방향이 서로 같거나 다르다면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글자에서의 필법의 특징도 짚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전혀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가 없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려놓고 뒤에 참고자료로 사진을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붙여논 사진도 전혀 설명은 없고, 다만 다르다거나 같다고만 표시하였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감정결과는 도대체 합리적인 분석이나 비판을 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옳으면 무조건 옳은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감정결과를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론만의 기재는 감정인에게는 편할 지 모르지만, 감정결과가 어떤 추론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일본인 증인 오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의 감정서들은 제3자가 보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항목과 설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7) 감정소견의 근거

김형영의 증언에 의하면 동일인이 비슷한 시기에 쓴 글이라 해도 모든 필법의 특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100퍼센트 동일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고 감정목적물의 모든 글자와 글자 또는 자음과 모음을 비교하여 각 글자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양자에서 확률적으로 유사한 비율로 존재하는 경우 보통 필적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에 있어서 동일필법의 비율이 70%이면 동일필적, 45% 이하면 상이한 필적, 45-60%면 이동식별 불능, 60-70%면 동일, 불능중 택일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형영은 이에 따라 이건 감정의 경우 동일한 필적이라고 판단한 때는 동일필적 비율이 70% 이상인 때였으며 상이한 필적이라고 판단한 때는 동일필적 비율이 45% 이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동일필적 비율은 한눈에 그 비율을 알거나 직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매 감정마다 어떠한 감정방법을 사용하던 특징그룹을 분류하고 여기에 일정정도의 수학적인 계산을 거쳐 70% 이상 또는 40% 이하로 판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대비되는 필적자료에서 종선의 필적을 비교하여 본 결과 이러한 방향으로 필법상의 특징을 보인 경우는 양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이고, 저러한 방향으로 필법상의 특징을 보인 경우는 어느 정도라는 등으로 반드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

일 이러한 검토없이 동일필적 비율이 70%라고 판정하였다면 이는 '나는 감정을 엉터리로 하였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김형영은 이건 감정에 있어서 한눈에 보고 감정한 일은 없으며, 분명히 동일필적 비율이 70% 이상일 때 동일필적으로, 45% 이하일 때 상이필적으로 감정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위와 같은 확률상의 비율을 얻기 위한 사전조사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감정서 어디에도 그가 위와 같은 합당한 검증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러저러한 자료를 비교하여 본 결과 동일내용의 문자에서 문필구성과 배자의 형태 등에서 특징적인 상사점이 발견되므로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감정소견에 대하여 그가 정말 감정을 수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에 관하여 몹시 궁금하여 김형영에게 그렇다면 동인이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에는 혹 근거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지 물어본 바, 그는 뜻밖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이건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필법상의 유사비율 문제는 모두 증인의 머리속에서 보고 계산하고 현재 또한 증인의 머리속에만 기억되어 있나요"라고 물어본 바, 놀랍게도 "그당시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초인적인 계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 복잡한 필적감정의 여러 감정방법을 행하면서 동일필적 비율 70% 이상 또는 45% 이하로 판정하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70% 비율은 구체적인 숫자의 비율대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가 제대로 감정을 하였으면 막연히 70% 이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75% 또는 80% 정도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70% 이상이 되어 동일필적으로 판정했고, 45% 이하가 되어 상이필적으로 판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영이 증심이 되어 한 이건 감정은 정말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감정서 말미에 붙인 사진만 보아 가지고는 그가 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대체 어떤 필법의 형태와 종선의 방향에 관하여 유사점을 찾아 검토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형영은 검사신문에서 관례적으로 비율관계를 감정서에 표시 안한다고 하나, 그렇다면 동인의 연구실에는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할 텐데 보관하지도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인의 이 말은 나는 유사비율을 측정한 바가 없다는 대답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동인이 70% 이상이면 동일필적으로 감정하고, 45% 이하이면 상이필적으로 감정했다는 말은 믿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동인은 이런 유사비율을 측정한 바가 없이, 오직 동인의 경험에 의거한 직관에 의거하여 이런 감정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 감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8) 사진자료를 통해 본 감정의 부정확성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형영은 확률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의 직관에 따라 감정을 행하였고, 그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얼마간의 사진들을 감정서 뒷부분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들에서 그가 표시한 동일하다고 보는 부분들도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보통사람의 눈으로도 그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보낸 감정서 10차 회보에서 첨부된 사진을 보면 주로 유서와 피고인의 진술서중 동일필법으로 보이는 부분을 확대하여 찍어 놓았습니다. 동인이 어째서 첨부된 사진자료들이 유서와 피고인의 진술서 중 동일필적으로 보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대체로 특정부분의 모음이나 자음 또는 그 연결과정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듯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그가 오직 특정부분만 보려고 했지 글자의 전체적인 필세나 끝맺음, 쓰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즉 여러 요소로 나누어 보면 그가 동일필법으로 찍어 놓은 글자들은 오히려 대부분 상이한 필법의 글씨로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가 첨부한 소수의 사진자료에 의하더라도 그의 판단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유서와 김기설 가족이 제출한 책표지 글씨 및 김기설의 주민등록 분실신고서에 대한 감정소견의 변경

검찰은 1991. 5. 1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서 2매,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 김기설의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1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91. 5. 15. 유서필적과 업무일지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이며,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이나 유서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 수 없어서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고, 유서필적과 책표지 필적은 대조문자 부족으로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회보해 왔습니다.

즉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및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필적과는 서로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이고, 그 이유는 유서는 속필체 다음 두 필적은 정서체로서 구별이 곤란하고 필기구가 달라 이동여부를 판단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소견은 김형영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도 뒷받침되어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즉 동인은 "한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쓴 것이라 해도 속필체, 정서체, 횡서체, 종서체, 초서체 등으로 필체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인의 필적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와 주민등록분실신고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유서와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유서와 동일한 필체, 즉 속필체로 다시 써서 유서와 대비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위 감정소견은 바뀔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형영이 작성한 1991. 5. 25. 감정서 회보(수사기록 539면)[295]를 보면 뜻밖에도 유서와 두 필적이 서로 상이한 필적이라고 감정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5. 25.자 감정서를 보면 위 두 필적을 포함하여 김기설의 편지 등의 필적이 모두 유서와 다른 필적이라고 결론지어 있습니다. 동 감정서에는 "이 모든 필적과 유서 및 수첩과는 기재된 형태가 정서로 기재된 형태와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형태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부적합하지만, 현재에 나타난 상태에서 대조한 바 일부 받침과 연결부분,… 등에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관찰됨"이라고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결과는 앞서의 감정결과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앞서의 유서와 가족들이 제출한 필적 2매 및 주민등록 분실신고서의 필적에 관하여 서로 이동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속필과 정서의 차이, 필기구의 차이'에 의한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속필과 정서의 차이 및 필기구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감정결론이 달라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1. 5. 25.자 감정서에도 여전히 "정서로 기재된 형태와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감정을 하지 못한 요소에 있어서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혀 감정의 조건이 변화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결론을 달리한 것은 명백한 허위감정이며 이건 감정 전체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형영은 이 점에 관하여 추가된 대조자료가 많아져 감정결론이 변경된 것처럼 증언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가된 자료가 정서체이고 또 유서와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종전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와 주민등록 분실신고서는 글자수도 많아 상식적으로 추가자료가 더 필요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자수가 적을 때는 개인특징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자료가 추가되면 개인특징을 대조가능하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여 마치 종전에는 글자수가 적어 이동논단 불능으로 감정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거짓말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두번째 감정을 의뢰하면서 추가자료가 책자글씨와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여, 사실상 감정결론을 검찰의 의도에 맞게 유도했습니다. 더욱이 김형영은

295) 총자료집 I 책 251쪽 참조.

"대조자료로써 부적합하지만, 현재에 나타난 상태에서 대조한 바 상이한 필적이라고 사료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조자료가 부적합하면 감정을 유보해야지 어떻게 상이한 결론을 단정지을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그는 변호인 신문에서 "편지에는 술을 먹고 쓴 필적도 있어 일관성 있는 필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편지속에 있는 술먹은 내용이 도대체 필적감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감정물인 편지가 군입대전의 여자친구에게 쓰여진 것이고, 편지봉투가 정성적 인 붓글씨 형태로 쓰여진 것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로 쓸 때는 안정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추측된다. 편지속의 술 먹은 얘기가 바로 술취한 상태에서 쓴 것으로 연결시키는 그의 순진한 사고가 어리등절하기만 하다).

이상에서 감정결론을 바꾼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김형영의 감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감정서 자체의 검토에 의한 감정변경 불가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는 필적감정의 이론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 이동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김형영은 한 개인의 글씨체가 연령에 따라 바뀌는 것에 관하여 "어릴적에는 계속 바뀔 수 있으나, 20세를 전후에 필적이 고정되며, 그후의 변화는 개인차가 많습니다."라고 증언하면서, 동일인이 쓴 글이라 해도 작성시기에 따라 다른 필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만일 필적감정의 대상이 된 각 필적자료의 작성시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러한 작성시기를 고려하여 감정소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형영의 증언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20세 이전에는 필적의 변화가 많으므로 필적감정이 용이하지 않고, 그 이후라도 작성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면 역시 동일인의 필적인지 판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에 의할 때 1991. 4. 27.부터 5. 8.까지 사이에 쓰여진 것입니다. 한편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는 김기설의 큰누나가 조카 혜정을 출산하자 이를 축하하여 육아법에 관한 책을 선물하면서 책표지 안쪽에 써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수사기록 169면, 장병호 진술 참조)[296]

조카 혜정은 1981. 7. 9.생입니다.(수사기록 23면)[297] 따라서 1965년생인 김기설이 위 글을 쓸 때는 중학교 3학년 무렵으로서 유서의 작성시기와는 10년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앞서의 김형영의 증언에 의할 때, 이론적으로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는 과연 동일인이 쓴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김형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자료'가 김기설이 작성한 것으로 검사로부터 들을 정도이므로, 필경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양심적인 필적감정 전문가라면 마땅히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는 이동여부 논단불능의 소견을 견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감정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필적감정에 관한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과 같이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및 주민등록 분실신고서의 이동여부는 최소한 논리적으로 여전히 이동여부 논단불능으로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김기설이 여자친구 안혜정에게 보낸 카드나 편지 등도 유서와 이동여부 논단불능으로 되어야 합니다.

(10)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회보에서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감정했습니다.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필적이란 말은 유서와 업무일지 모두 한 사람이 썼다는 뜻임은 삼척동자에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형영도 이 법정에서 "유서와 전민련의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란 감정소견은 동일인이 썼다는 뜻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유서와 업무일지를 동일인이 쓴 것으로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감정결과는 아마도 이 사건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검찰에 있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일지는 앞서

296) 총자료집 I 책 73쪽 참조.
297) 김기설 퇴거신고서(생략).

상술한 바와 같이 3인의 필적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일지 3장중 맨 앞장은 전민련 실무자인 이동진, 둘째장은 김기설과 임무영, 세째장은 김기설이 쓴 것입니다. 새삼 반복할 필요없이 업무일지와 유서와 동일필적이란 뜻은 업무일지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유서 역시 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으며, 양자가 동일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업무일지가 3사람이 쓴 것이 명백한 이상 업무일지와 유서가 동일필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명백합니다.

만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처음부터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알고도 업무일지가 유서와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으면 분명한 허위감정일 터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 모른 채 감정하여 양자가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면 감정전반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감정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김형영은 처음부터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감정의뢰 받는 당시 검사로부터 "맨 앞장 글씨(이동진이 쓴 부분)와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로 기재된 부분(임무영 글씨)"이 각각 다른 글씨로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그는 두 필적이 업무일지내에 유사비율 45% 이하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처음부터 3사람의 필적이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감정대상물의 필적이 누구의 필적이냐를 감정하는 사람이 의뢰자로부터 감정물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가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유서와 동일한 필적이 업무일지에 있느냐에 주안을 두었지, 업무일지에 다른 사람이 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정서에는 이와 같이 3인의 필적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유서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업무일지와 유서가 동일필적이라고 썼다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평소에 서로 다른 필적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특정 필적을 뽑아서 대상필적과 대비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공존여부를 기재하지 않고 양자 동일필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유서와 업무일지에 관한 필적감정 외에 이 사건의 모든 다른 필적감정 자체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필적이라고 사료됨"이라는 또는 결론에 대하여 과연 대상필적에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데 이와 관계 없이 한 사람의 필적인 것처럼 기재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하여 정당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동일필적"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처음 전민련 업무일지를 압수할 당시부터 감정의뢰할 당시까지 업무일지가 이동진, 임무영, 김기설 3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두한 이후 1991. 7. 4.까지 업무일지를 피고인 눈앞에 들이대며 네가 김기설이 쓴 것처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백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마 전민련 업무일지가 김기설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후 처음 유심히 보게 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전민련 업무일지가 이동진, 임무영, 김기설 3인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앞서의 김형영의 증언에서 보다시피 검찰도 시인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립무원의 검찰청 조사실에서 자백을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돌연 드러난 진실, 이 일은 이 사건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증거를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극적으로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번갯불처럼 번쩍 빛나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환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감정의 허구가 발가벗겨지고, 논리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증인 김형영은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다고 하면 될 것을, 그가 보기에 다수의 필적이 유서와 비슷하게 보여, 즉 70% 이상의 유사비율이 발견되어 동일필적으로 감정하였다고 하면 될 것을 그는 허둥대며 처음부터 3인의 필적이 공존하는 줄 알았다고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일 수 없는 감정결과 "유서와 전민련 업무일지는 동일인의 필적"은 업무일지가 3인의 필적이라는 사실과는 영원히 융합될 수 없는 물과 불의 관계인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결과 대로라면 유서필적과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이므로 그의 감정

소견을 다른 감정소견을 적용할 때의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업무일지가 3사람이 쓴 것이므로 유서도 3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이동진, 임무영을 새로 추가하여 유서대필자로 기소할 것입니까. 아니 임무영은 이미 한번 유서대필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엄청난 강압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동진 차례입니까.

단언컨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진 이상 이 비극적이고 잔인한 코메디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11) 수첩조작 문제

앞서 검찰의 수첩조작 주장 논리의 기괴함에 대하여 일별하였습니다만, 검찰의 수첩조작 논리는 밑바탕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첩절취선 불일치 감정결과와 수첩에 기재된 글씨들의 필기구 색깔 등에 관한 홍성은의 친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전민련이 제출한 김기설의 수첩에 관하여 떨어진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는 수첩본체의 잔류부분과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습니다. 수첩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감정결과는 앞서의 전민련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과 함께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감정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김기설 수첩 본체와 떨어져 있는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의 절취선 일치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첩에서 일부 면수가 떨어져 나가기 전의 완전한 수첩의 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히 파본과 덧끼워져 있거나 겹쳐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감정의 대상이 된 수첩이 과연 완전한 형태로 제본되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책자 뒤에 보통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로 기재된 것을 상기하면 된다). 그리고 제본의 방법, 사용된 접착제의 종류와 점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잔류부분이 수첩의 맨 아래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다소 바닥선에서 올라와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면수는 몇장이고 남아 있는 잔류부분은 몇매인지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아울러 떨어져 나간 부분의 상호순서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열거한 감정방법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곧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뒤에 만일 감정대상이 된 책자가 파본이나 덧끼워져 있는 부분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는 한 감정소견은 "감정물에 파본이나 기타 덧끼워져 지거나 접쳐져 있는 부분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떨어진 부분 몇매는 남아 있는 책자의 몇면째의 잔류 부분과 절취선이 일치한다 또는 일치하지 아니한다"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감정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 김형영은 변호인의 "상식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주장되는 부분이 과연 원래의 책자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는, 책자의 총 면수, 책자의 제본에 관하여 낱장으로 하나씩 묶어 만들었는지 또는 여러장으로 묶어 만들었는지 기본적인 책자의 제본방법, 제본에 사용되는 실과 접착제의 종류, 굵기, 전체적인 접착도 및 각면의 접착도, 떨어져 나간 부분의 면수 및 남아 있는 흔적의 면수 위치 등을 검사해야 하지요"라고 물었더니 뜻밖에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변호인이 "증인은 증인이 감정한 바의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 제출한 수첩 1부'의 총 면수가 몇쪽인지 아나요"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라고 엉뚱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감정에 앞서 최소한 완전하게 제본된 1991년도 전민련 수첩은 보고 이것과 김기설 수첩을 대조하면서 감정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하여 "증인은 어느 한 면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증인이 감정한 수첩과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제본된 전민련 수첩을 본 일이 있나요"라고 물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감정이 끝난 후에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알고 있다시피 전민련에서 제출한 김기설 수첩은 최소한 7매가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중 전화번호기재 부분 3매가 떨어진 채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첩본체의 잔류부분은 7매이며, 만일 김기설의 수첩이 다른 보통의 수첩과 다르게 인쇄소의 제본과정에서 덧끼워져 있는 장수가 혹 더 있다면 그리고 그것도 마져 떨어져 나갔다면 떨어져 나간 매수 및 잔류부분은 7매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우리중 그 누구도 김기설의 수첩이 파본이나 덧끼워진 장수가 없는 보통의 완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어떻든 김기설 수첩본체에 남아 있는 부분은 최소한 7매 이상인데, 변호인이 아무리 대강 했어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감정했겠지 하고 김형영에게 "증인은 증인이 감정한 수첩의 잔류부분의 면수가 총 몇쪽인 줄 아나요." 물었더니 정말 뜻밖에도 "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면수에 대하여는 검사로부터 감정할 무렵에 들었는데 "4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떨어져 나간 면수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소한 7매 이상임이 분명한데 그는 검사가 4매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한편 남아 있는 매수는 3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첩의 절취선 여부를 감정하도록 의뢰받은 사람이 어째서 검사로부터 떨어진 매수를 듣게 되었는지 그 경위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떨어진 매수는 4매인데 남아 있는 잔류부분의 매수는 왜 3매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인은 검사의 "4장이 떨어진 것을 완전한 수첩과 대조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도 "예"라고 답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절취된 석장의 순서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첨언하지 않더라도 도대체 김기설 수첩의 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일반 상식인에 의한 관찰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며,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행해진 바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감정은 정밀감정이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는 오직 떨어진 3장의 존재만 알고 있었을 뿐 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에 관한 지식도 없었고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아무리 정밀한 기계와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건 수첩의 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한 완벽한 감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김기설의 수첩이 파본이나 덧끼워져 있는 부분이 없는 완벽하게 제본된 수첩임을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감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전민련이 김기설의 수첩을 제출하자마자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으니 조작되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이제 검찰 스스로도 왜 검찰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그릇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본래적인 감정불능의 논리는 이 부분 감정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무능과 무책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12) 유서와 피고인 필적의 이동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고인의 진술서, 항소이유서 등이 유서와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정의 전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예를 제시하여 이 감정결과가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견 보기에 유서 2매에는 보통사람들이 쓰는 글씨와 달리 'ㅎ'의 필법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즉 보통은 'ㅎ'을 쓰는데 있어서 대개 윗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써 'ㅎ'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되는데, 유서는 이와 달리 매우 특이하게 'ㅎ'의 윗부분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서 'ㅇ'으로 쓴 것이 많이 눈에 띄며 후자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 김형영도 이러한 필법상의 특징을 시인하고 있으며,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유서의 필체와 같은 속필체로 동일한 분량의 글을 쓰는 경우 자음 'ㅎ'의 필법에 있어서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에 보이는 비율로 'ㅎ'과 'ㅇ'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였다면 그의 속필체로 쓴 글에 있어서는 그 비율은 어떻든 간에 'ㅎ'과 'ㅇ'이 혼용되는 필법상의 특징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형영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감정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진술서 등에서는 'ㅎ'의 필법에서 오직 'ㅎ'만이 사용되고 'ㅇ'으로 쓰여진 것

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의 필적 및 교도소의 검열을 거친 옥중편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의 필적에 예외없이 공통된 'ㅎ'의 필법입니다. 정말이지 단 한 자도 'ㅎ'으로 쓴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만일 유서대필자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ㅎ'의 필법, 이것은 피고인과 김기설의 글씨를 쓰는 습성에서 가장 눈에 쉽게 띄는 차이입니다.

두번째로 통상인이 곧 알아채는 글씨의 특성은 유서 2매는 글씨의 방향이 대체로 수직방향 또는 왼쪽 아래 방향으로 기울여 쓰여져 있으나, 피고인이 쓴 글은 대체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기울여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글은 특히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옥중편지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김형영도 이 점에 관하여 "다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유서나 다른 김기설의 필적과는 달리 피고인의 필적이 특히 오른쪽 아래로 기울여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옥중에서 쓰는 것이므로 특별히 급하거나 쓰는 자세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만일 유서대필자라면 유서 2매도 대체로 옥중편지처럼 오른쪽 아래로 기울여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서 2매는 오히려 수직방향이거나 왼쪽 아래로 기울여져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글씨의 방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서 2매와 피고인의 진술서 등을 비교할 때, 유서 2매의 글씨는 전체적으로 글자가 가로로 넓게 퍼지고 글자가 비교적 큰 편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글씨는 피고인의 각종 필적자료를 두루 살펴볼 때 가로보다는 세로로 길게 쓰여진 편이며 글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따라서 필적감정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필적과 유서필적이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견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양자의 필법상의 특징으로 보이는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일본인 증인 오오니시 요시오가 증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언급하여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13) 한겨레신문사가 의뢰한 사설감정결과

한겨레신문사는 2회에 걸쳐 증앙인영감정원을 운영하는 이인환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1회는 유서필적 사본 1매, 김기설 수첩사본 1매, 피고인의 옥중편지 사본 1매를 감정의뢰하였고, 2회는 유서사본 2매,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 방명록 원본 1매, 피고인의 보고서 원본 1매, 성남 터사랑 창립대회 방명록 사본 1매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정사항은 1, 2회 모두 유서필적과 나머지 필적과의 이동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바, 1, 2회 모두 유서필적과 이동여부 논단불능의 회보되었습니다(검찰이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유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적이 김기설 필적과 피고인 필적이 섞여 있으므로 모두 유서와의 이동여부 논단불능으로 나온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당시 언론은 피고인의 필적이 유서필적과 같다고 감정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여 위 감정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인환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시사저널 1991. 6. 27.자 참고자료 참조). 특히 동인은 2회 감정에서 유서필적과 제일 가까운 필적은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때 쓴 김기설의 방명록의 필적이고, 가장 다른 필적은 피고인이 1988. 3. 16. 작성한 보고서의 필적이라고 개인소견을 밝혔습니다.(1991. 5. 25. 자 한겨레신문기사 참조)[29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인환은 1977년 정식 공채시험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가 1981년까지 필적감정업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이인환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무고함을 보이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나. 홍성은의 진술

홍성은의 진술증 공소사실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홍성은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 홍성은의 수첩에 기재된 김기설 전화번호, 대책회의 문제, 5. 7. 밤의 피고인 집전화 등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김기설의 수첩에 관한

298) 총자료집 III책 632 쪽 참조.

기억인데 이 부분 역시 홍성은의 기억이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검찰에서도 이미 홍성은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의 증거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한겨레신문 1991. 5. 24.자 참조)[299] 홍성은이 김기설의 수첩을 소지했던 시간은 김기설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5. 7. 밤10:30경부터 다음날 전민련의 원순용에게 건네준 5. 8. 12:00경까지 시간적으로 대략 13시간 가량되며, 그중에서도 홍성은이 잠잔 시간 및 5.8. 아침에 일어나 학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 시간을 빼면 불과 한 시간도 수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성은은 수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특별히 수첩의 형상이나 기재내용, 쓰여진 필기구의 종류나 색깔에 관하여도 기억하려고 마음먹은 바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유일하게 김기설이 5. 7.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첩을 펴서 확인했다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홍성은은 대체로 수첩의 내용이나 특히 사용된 필기구의 색깔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노트나 책 등에 쓴 필기구의 색깔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더듬어보면 분명하게 알게 될 사항입니다. 필기구의 색깔에 관한 기억이 흔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때 작성한 방명록 기재시 사용된 필기구의 색깔에 관하여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곽대순의 진술에 의하여도 반증됩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직접 방명록 서명을 권유하였으며, 김기설이 파란 싸인펜으로 서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이 방명록을 찾아 한겨레신문사에 보내기까지 하였으면서도, 당시 필기구의 색깔을 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역시 증거로 제출한 성남 터사랑청년회 창립대회때 김기설과 같이 참석하여 방명록에 서명한 바 있는 전현철은 당시 방명록이 일반 노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은표지에 백지가 철해져 있는 통상의 방명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설 수첩에 관한 홍성은의 기억은 반드시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홍성은의 기억에 의존하여 김기설의 수첩여부를 가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다. 기타 검찰측 증인

(1) 장병호

장병호는 김기설의 세째 매형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김기설의 큰 매형과 누나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자신이 이건 책표지 필적 2매를 뜯어 제출하였으면서 동 필적이 같은 책에서 뜯은 것인지, 다른 책에서 뜯은 것인지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물어본 바도 없고,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김기설이 다친 상처가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동인의 증언은 이 사건 유서대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이재구

이재구는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서가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동인은 그 근거로 김기설과 평소 친하게 지내고 낙서도 같이하고 김기설의 글씨를 모방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김기설의 필체를 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위 진술은 증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특히 증인은 증인이 국민학교 5, 6학년 때 시작하여 중학교 때, 김기설이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 약100회 가량 같이 낙서하고 김기설을 글씨를 모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과 김기설의 나이가 5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동인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없습니다.

2. 결백의 증거들

가. 5.7. 밤의 전화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은 5. 7. 밤11시가 훨씬 넘어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성은은 이때

299) 총자료집 III책 621쪽 참조.

까지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통화한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홍성은은 분신하겠다는 김기설을 만류하지 못하고 10:30경 헤어져 전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와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집에서 다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공중전화 앞에 서서 홍성은은 우선 김기설의 아버지에게 김기설을 대신하여 내일이 어버이 날인데 가서 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번도 피고인 집에 전화를 건 일이 없고, 그리고 분신하겠다는 남자친구를 울면서 만류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몹시 허탈해 있던 그때, 그리고 피고인이 자고 있을 지도 모르는 그 늦은 시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을까요. 홍성은은 김기설이 마지막으로 "'유서를 써야 하는 등 신변정리를 위해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나의 손을 뿌리치고 자취집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에 김기설은 자취집으로 돌아가 이미 유서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실제로는 방으로 들어가다가 분신 얘기를 듣고 김기설의 소재를 백방으로 찾고 있던, 같이 자취하던 임근재를 만나 인근 포장마차집에 앉아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홍성은이 김기설과 헤어진 마당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까. 그 이유는 김기설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설이 홍성은에게 피고인 집에 전화걸도록 부탁했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각에, 처음으로 홍성은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홍성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기설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강기훈에게 전화하여 가르쳐주라고 부탁하여 전화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이 피고인의 유서대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한 5. 7. 밤의 이 전화가 실은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가장 확실한 정황이라고 이 자리에서 제시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김기설이 분신자살하기 이전부터 이를 알고 김기설 사후 모든 문제를 피고인이 알아서 마무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어버이날인데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의 유서도 대신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을 종합할 때 만일 피고인이 정말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장례문제 등을 책임지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김기설의 가족관계 및 그 연락처는 최소한 알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유서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가족의 연락처도 모르겠습니까. 최소한 실제로 연락을 하던 안하던 김기설이 그의 가족의 연락처를 유서를 써준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김기설은 홍성은과 아현 전철역에서 헤어지면서 유서를 쓰러 자취방에 간다고 하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강기훈에게 전화하여 가르쳐주라"고 홍성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김기설이 홍성은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김기설과의 인적관계에 있어서 홍성은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김기설의 가족관계나 연락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설의 부탁은 적어도 홍성은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이후 김기설이 피고인을 만날 계획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 7. 10:30 이후부터 그가 분신자살할 때까지 피고인을 전혀 만날 계획도 만난 일도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곧 만날 사람에게 그것이 암호가 아닌 한 특별히 자기 가족 전화번호를 알으켜주라고 제3자를 통하여 전화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기설은 유서를 쓰러 자취집으로 갔습니다(실제로 유서를 쓰러 갔으나, 임근재를 만나 다시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분신까지 피고인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홍성은은 김기설로부터 분신 결심을 듣고 가족관계 및 친구들 연락관계 사항을 상세히 전달받고 김기설과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피고인은 김기설이 죽으면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김기설의 가족의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떠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피고인은 김기설의 분신 의도도 전혀 몰랐으며, 방조한 일도 없으며, 유서는 쓴 일도 없다는 바로 그 진실입니다. 피고인은 결백합니다.

나. 검찰의 필적오해에 의한 반증

홍성은이 1991. 5. 17.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서대필 의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

는 검찰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제시한 문서가 너무나 유서와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홍성은은 이때부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의혹과 혼돈속에 피고인과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고, 분신 이후부터 검찰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사실상 기억을 강요받으며 피고인과 이영미, 김진수 등의 말을 유서대필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기억의 저편에 있던 말들이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띄며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로하며 했던 말들이 갑자기 유서대필 은폐의 뉘앙스를 갖는 것으로 재생됩니다. 자기를 기자회견에 내보낸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최대의 실수'라고 농담처럼 한 김진수의 말이 범상치 않게 들리고 5. 12. 김기설 장례식을 마치고 얘기하던 장례관계 말들이 갑자기 어제서 나온 것인지, 그게 언제인지 혼동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피고인이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기 수첩에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기억의 프로그램이 뒤바뀝니다. 김기설로부터 받은 메모도 피고인이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홍성은의 이와 같은 의식변화의 과정은 1991. 5. 17.에 작성한 그의 자술서[300]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갑자기 홍성은의 정신을 의혹과 혼돈의 덩어리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검찰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제시한 문서가 바로 유서필적과 너무나 똑같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압수물 9-1, '수신:김정훈 발신:김명훈'으로 된 편지입니다. 홍성은은 "유서와 증9-1호가 가장 확실하게 비슷하였다"고 증언[301]하고 있습니다. 홍성은에게 제시된 이 편지는 검찰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필적으로 가장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언론이 궁금해 했던 압수물 9-1과 9-11내지 11호의 의사록이 검찰이 숨겨논 비장의 무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서는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였을 때 검찰은 이미 검찰 내부의 문서분석실에서 유서필적과 가장 닮은 필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동일필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사진을 찍어 놓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에 출두하기전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압수한 위 문건들이 유서필적과 동일하며, 피고인이 쓴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심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위 편지를 홍성은에게 보여 피고인을 유서대필자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영미에게도 보여 유서와 위 편지의 필적이 같지 않느냐고 윽박질렀으며, 숭의여전 학생회장 이보령에게는 의사록(1991. 6. 13.자 자술서[302])에 '회의록'이라 되어 있는데, 압수물중 '회의록'은 없으므로 의사록으로 추정된다)을 보여주어 같지 않느냐고 동의를 강요했습니다. 검찰이 위 자료들을 보여준 까닭은 두말할 나위없이 피고인이 유서대필자라는 것을 참고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자료들은 검찰 스스로도 가장 유서와 필적이 흡사한 자료라고 믿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홍성은은 검찰의 이와 같은 확신에 따라 그의 정상적인 기억체계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와 같은 위 자료들에 대한 필적확신은 피고인이 출두하자 산산히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위 자료들은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검찰이 얼마나 낭패감에 휩싸이고 당황해 했을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와 같은 필적에 대한 엄청난 오해, 틀림없이 검찰청내의 문서분석실의 검토가 뒷받침되어 유도되었던 엄청난 오해, 이 사실은 이 사건 수사가 애초부터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 있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똑같다고 확신했던 자료들이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유서대필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다. 수많은 객관적 필적자료들 및 관련 증인들

지금까지 우리는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필적자료들을 제출하였고, 40여년동안 필적감정에 종사해 온 일본인 감정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각 자료 하나하나가 모두 피고인의 결백함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던 간에 본래의 것 그대로이기 때문

300) 총자료집 I책 178쪽 참조.

301) 총자료집 I책 952쪽 참조.
302) 총자료집 I책 371쪽 참조.

에 더이상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눈이 있으면 와서 보면 됩니다. 선입견 없이 보면 진실은 곧 다가섭니다. 분명하잖습니까. 꼭 필적감정을 해야 합니까.

라. 수첩 복사본

변호인측 증거서류 중제20-1, 2호[303]로 제출된 수첩의 복사본은 전민련이 제출한 김기설 수첩이 본래의 김기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위 자료는 홍성은이 가지고 있던 것의 전화번호부 기재부분 3매를 나란히 앞뒤로 복사하여 2부 복사한 것입니다.

이 복사본의 중요함을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은 전민련 인권위원장인 서준식이었습니다. 그는 6. 25.경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후 이 사건 관계로 검찰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복사본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성동구치소로 수감된 후 전민련 실무자들에게 5. 8.에 한 수첩 복사본의 행방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시 수첩을 복사했던 최경환, 이효경을 찾아내고 그 복사본도 받아 변호인단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복사본이 전민련 김기설의 수첩 원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 방식

김기설에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첩의 전화번호를 적을 때 특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피고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 예컨대 '777-8888'처럼 국번호 다음에 "-"로 연결하는데 반하여, 김기설은 예컨대 '777. 8888'처럼 국번호 다음에 "."로 연결하여 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이한 전화번호 기재방식을 전민련이 제출한 김기설의 수첩에서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탄할 만하게도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습성은 정말 특이한 기재방식입니다.

압수물 9-24[304]는 피고인의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서 우리는 피고인은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 국번호 다음에 "-"로 연결하여 쓰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기재방식에 있어서의 김기설의 특징, 이것 역시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이 김기설의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피고인이 초능력을 가진 홍길동인가.

이제 우리는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증거자료들로부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습니다. 유서는 김기설 자신이 쓴 것입니다. 그래도 만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메모, 편지, 방명록, 수첩, 사진 등등 이 모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료를 피고인이 위조, 변조 또는 조작했습니까. 피고인은 검찰이 유서대필 사실을 발표한 이후에 삼엄한 경비속에 오도가도 못하고 명동성당내에 있다가 검찰에 출두하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 법정에 선서하고 증언한 모든 사람들과 유언, 무언으로 연락하여 이들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했습니까. 또 일본인 필적감정 전문가로 하여금 필적감정을 조작하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전에 만나 보거나 알지도 못한 이 증인들이 피고인이 자살방조한 사실을 감싸주기 위하여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짜로 만들로 허위증언을 한 것입니까. 피고인이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초능력을 가진 신출귀몰한 홍길동입니까.

제4.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1. 검찰은 피고인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하고 1991. 5. 16.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피고인의 장서, 유인물, 노트 등을 압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수신:김정훈, 발신:김명훈>의 필사본 1건(압수물 9-1), <혁명의 불꽃 2, 3, 4, 8, 10호>(압수물 9-98, 100, 101, 103, 104), <재건대회 의사록>(압수물 9-111 내지 116) 등 '혁명적 노동자계급동맹'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하였고, 같은 해 8. 21. 피고인을 '혁명의 불꽃' 및 '혁노맹'에 가입하여 혁노맹 관련자 박대호, 노성철 등과 회합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 탐독하였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의도는, 피고인이 소수정예의 급진적 사회주의자 그룹에 소속된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아느냐, 살부회 곧 자신의 아버지를 스스로 죽일 수 없으니 회원끼리 돌려가며 아버지를 죽이는 역할을 대신하는 모임을 아느냐라는 등의 해괴한 질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3. 또한 검찰에서 주목한 것은, 피고인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남겨놓은 필적 중에서 유서와 유사한 필적을 발견한 점입니다.

검찰은 위 압수물(9-1) 필사본을 유서와 같은 필적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홍성은 등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유서가 대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왜곡된 진술을 받아내는데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필사본은 박대호나 조성철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4. 피고인은 한때 혁노맹 관련자들과 연관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정작 1989. 8. 14-19.에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에 있는 자리회관에서 행하여진 본격적인 재건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경까지는 가끔 연락을 취하다가 새로운 지도부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한 불만과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약속장소에도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 이후 그들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당시의 상황을 혁명적 정세로 볼 수 있는지와 임시혁명정부의 구성에 관하여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혁노맹의 중앙위원들은 피고인을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조직 외곽의 인물로 보아 피고인에게 재건대회 의사록을 전하여 준 것으로 압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이 비밀조직보다는 공개조직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사회변혁을 희망하는 비판세력에 속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혁노맹과 같이 비밀혁명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은 꺼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전민련과 같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일원으로 머물면서 나름대로의 민주화 활동을 하여 왔을 뿐입니다.

5. 혁노맹 관련자들은 이미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혁노맹이란 조직도 이미 와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이 1989년 하반기에 혁노맹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때에도 피고인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잘 은폐되어서가 아니라 혁노맹의 조직활동과는 지극히 미미한 연관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뒤늦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것은 마치 분신사건에 배후가 있고, 그 배후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현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전민련이라는 공개조직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적인 처사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방조 부분이 무죄가 되더라도 조기에 석방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저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실중 혁노맹 가입 부분은 무죄입니다.

제5. 결 론

1. 이제 이 긴 변론도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전민련을 포함한 재야운동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과 편견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변호인도 처음에는 그와같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유일한 인물이며 김기설군의 여자친구여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던 홍성은양은 이 법정에 나와서는 진실의 상당부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303) 총자료집 II책 854쪽 참조.

304) 총자료집 I책 666쪽 참조.

사랑하는 애인이 대학 3년 중퇴인 줄 알고 있다가 고등학교 3년 중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여자의 자존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기설군을 소개시켜 준 피고인이나 친구 이영미에 대한 감정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증언대에는 처음 앉아보았을 터인데도 짐짓 태연한 듯한 자세와 이 사건의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에서, 우리는 한 젊은 여성의 미묘한 감정변화의 편린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3. '오니시요시오'씨가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인이었더라도 검찰관이 그토록 심한 대접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범한 몇가지의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와 '오니시'씨의 그것을 비교하여 볼 때 어느쪽이 필적감정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어느 편이 보다 성실하게 감정하였는지는 두개의 감정서를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감정의뢰를 요청하였던 것은 외국인의 감정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고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문서감정 업무에 보다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 이 변론의 서두에서, 상식을 초월한 이 사건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사회는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의 대부분이 드레퓌스(DREYFUS)가 유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의 무고함을 확신한 '끌레망소'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고인 강기훈의 승리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지금 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강기훈이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강기훈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변호인단을 대표하여

변호사 유 현 석
김 창 국
박 연 철
이 석 태

1991. 12. 4.

■자료 나-11-3 (공판기록 1160?~1180)

사건 91 고합 1266
91 고합 1368

최 후 진 술 서

피고인 : 강 기 훈
서울구치소 재감중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 25부 재판장님 귀하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과학적 사고 방식과 이성적 판단력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대중의 다양한 생각이 사회적 발전을 추동한다는 다원주의의 발전과, 오랫동안의 대립과 반목을 청산해가는 바탕위에서 이념적 대립과 적대감이 해소되어 가고 긴장상태에 있던 동-서가 화합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사상과 제도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대립과 투쟁, 그리고 극단적인 편견으로 대표되는 메카시적인 사고방식도 이젠 그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땅 한반도에선 아직까지도 이전 구시대적인 편견과 아집의 영역이 허물어지기는 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6공화국, 특히 89년 공안정국 이후 하루 평균 4.4명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혹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의 수호를 위해 불의와 맞섰다는 이유로 구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소위 유서대필 사건과 별 무관한 이야

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사건이 바로 이 구시대적인 편견과 아집에서 비롯된 비극이요, 이런 배경하에서 검찰 등 수사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희대의 조작극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이 구태의 악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공산주의 콤플렉스와 그로 비롯된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 했다면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요, 역사와 진실의 이름으로 단죄되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두진술에서 밝혔다시피 소위 유서대필사건은 재야 민주화운동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타격하기 위해 전민련에 몸담고 있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사기 조작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을 빌은 엉터리 필적감정과 참고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강압수사, 그리고 자신들의 시나리오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해온 서울지검 강력부의 창조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중 국과수의 필적감정의 허구라는 것은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에서 가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 검찰의 범인 단정에 가까운 견디기 어려운 허위사실을 언론에 조직적으로 발표할 때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사실들이 조만간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믿었던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제가 소신을 갖고 일해 왔던 제 직장에서 배워왔고, 품어왔으며, 가져왔던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이성적 판단에 따른 최소한의 양식을 존중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포기하고 아니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목불인견으로 달려들고, 이제까지의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모든 사실들을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검찰수사 당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 불가능한 공상적인 시나리오만을 완성하려 하는 검찰을 제 상식적 견지에서 인간이라고 인식한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자면 제가 사무실 동료인 기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필력이 부족한 그대신 유서를 써주었다는 것인데 새삼 그 누구가 같이 일하는 동료의 죽음을 부추기고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말입니까?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사회 일각을 바라보는 이들의 편견을 목도하고서 정신이상자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신매매, 마약, 각종 강력범죄 등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주임무인 강력부 수사관들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나, 혹은 이들 범죄자들의 인식과 동화된 것인지 아니면 설령 피의자가 무죄라는 심경이 들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엮어넣고야 마는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병폐가 지금 이 순간까지의 과정을 밟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에 나타나 있듯이 검찰은 분신자살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을 구체적, 논리적이 아닌 상상에 기초하여 명시하여 그들의 인식단면을 노출시켰다는 것과, 서준식, 임무영씨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구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민련 동료인 임무영의 경우 검찰이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들의 판단상 제 글씨보다 그의 글씨가 더욱 유서와 유사하게 보인다 하여(이 부분에 대해선 모두에 진술한 것처럼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가 무영의 필적을 가져와 이럴 수가 있느냐며 그의 필적과 수첩 등을 대조했다는 사실과 수사가 진행되던 중간중간마다 "이놈아(무영이를 가리킴) 글씨가 맞는데" 하며 수차례 중얼거린 사실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조사를 벌이다가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자 이전까지 전혀 수사대상에 올라 있지도 않던 공안관련으로 넘겨 구속시켰으며,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의 경우 소위 '유서대필 공방'이 한창이던 당시 저의 결백을 확신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를 밝히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여 보복적 구속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담당 수석검사이

며 서울 법대 68학번 동기동창인 신 검사께서 서준식 선배의 사전영장 발부, 구속 및 이후 공소관계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7년간의 옥고를 치루고 난 학교동기이며 친구를, 망자의 유서에 이름이 거명되었다 하여 처음엔 분신배후로 몰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했다고 하여 3년만에 공안관계로 재수감시키는 것을 지켜본 저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비애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신 검사께서 스스로 이야기하듯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임무영과의 대질신문이 진행되던 당시 제가 "무영이에게 혐의가 없으면 그만 풀어주어야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하다 풀어주는 게 어디 있느냐. 대필혐의로 안되면 다른 것이라도 엮어놓고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검찰관들의 대답 속에서 저는 이 사건 전반에 걸쳐 당신들이 취했던 태도와 수사방식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혹여 비난에 가깝게 들릴 지도 모르겠으나 이 사건의 사회적 도덕적 파장과 그 성격을 너무나 극명히 드러내주는 부분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사건은 개인관계를 뛰어넘고 있으므로 개인적 비난이 아님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이야 서로 적대하는 관계로 마주보고 앉아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야 그동안 검찰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해 가한 모든 것에 대해 화해하고 용서할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곁길로 빠졌습니다. 이제 몇가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정황관계 증거로 검찰이 지난 7월 12일 언론에 발표한 대부분의 것은 제 학교 후배이며 기설이 친구였던 홍성은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중의 대부분이 검찰이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발표하였고, 일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사건 초기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언론에 흘려진 것은 둘째 치고라도 증언, 진술한 내용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저를 경악케 합니다. 먼저 제가 분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왜곡한 그 첫 번째입니다. 5월 7일의 전화통화는 사실 기억이 거의 미미한 정도였을 뿐이었습니다. 두번째는 기설의 사후 성은을 위로하기 위해 동창들과 만났던 일들을 대책회의라고 왜곡한 점입니다. 세번째 검찰은 마치 홍성은의 진술인양 하면서 5월 10일 성은의 연락을 받고 저와 둘이 만났을 당시에 제가 성은의 수첩 뒤에 "김기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검찰에 가서 이 글씨를 기설의 글씨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일간지에 허위사실(아마도 검찰의 상상인 듯합니다)을 유포시켰습니다. 물론 써준 것도 사실이 아님을 제가 누차 밝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필적관계 수사에 있어서도 억설과 공상으로 일관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고 단정하다시피 한 저의 집에서 나온 메모지를 제 글씨로 단정해버린 사실은 구속영장의 제가명란[305]에 기재되어 있던 "김명훈"이 공소장에는 "김정훈"으로 바뀐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며, 그간 검찰이 육안으로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필적 관계 수사를 진행시켜 왔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기설이가 과거 머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들어 정신병자라고 단정하다시피 하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과정, 지금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차이를 거짓말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사실의 왜곡과 편의적인 해석을 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며, 일일이 구구하게 설명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검찰은 허위사실을 사건결과 발표라 하여 언론에 유포시켜서 국민들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고, 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진실을 가리는 폭거로 일관했음이 이런 부분적인 사실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 검찰은 사실에 대한 침착한 접근과 규명보다도 공명심과 출세욕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와 억측, 언론공세를 통한 국민 여론의 호도를 통하여 5월 당시 강경대 열사 죽음 이후 들끓기 시작하던 정권의 부도덕성과 반민주성을 질타하는 국민적인 항의를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희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305) 총자료집 II책 28쪽 참조.

사건 초반부터 지금까지 언론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최소의 상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언론이 이토록 한 개인에 대해서 폭력적일 수 있었던가를 뼈저리게 느낀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진 죄인으로 단정하고 취급될 수 없다는 고등학교 때 배운 이 소박한 민주주의의 원칙은 고사하고라도 사실관계와 실체가 명확치도 않은 것들을 검찰의 발표라 하여 대서특필하고, 심지어 모 일간지에선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조차 했던 이 사실들은 저와 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상업성으로 치환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언론사끼리의 경쟁에서 짓뭉게지고 무시될 때 느끼던 비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공표된 기사를 번복하기 힘들 듯 그만큼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할 때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로 인한 어이없는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켰더라면 제가 지금 여기에까지 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의 횡포에 가까운 태도는 지금에 와선 조금은 개선된 듯합니다만, 벌써부터 모 일간지엔 이 사건이 영원한 미궁으로 빠질 지도 모른다든가 하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며, 언론이 국민의 여론을 선도하기 보다는 사실규명을 방해하기조차 하는 것을 보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미궁에 빠질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되고 이미 그 사실적 진실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필적감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특히 국과수 감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국과수 필적감정은 제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 아닙니다. 이전의 범죄수사에 필적감정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서 제 상식으로는 그것이 무척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오차율이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진 바대로 국과수는 최소 4명을, 검찰은 6명의 필적을 동일한 사람이 쓴 필적으로 감정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 불능이라고 감정한 글씨가 다른 글씨가 되는 한편 같은 글씨로 감정한 것이 이동 불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필적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게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제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한 국과수의 필적감정은 결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수사당국의 주관적인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얼마전 이 법정에서 한글을 잘 모르는 일본인 감정인이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경 일본에서 그런 필적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언론으로부터 전해 듣고 기쁨보다는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실을 위한 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현실과 함께 사실의 인과관계나 상식적이고 건전한 판단을 꼭 감정으로 공신력을 빌어야 믿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왔기 때문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은 일본인 감정가의 증언 이후 하나가 추가 되었습니다. 한글을 잘 모르는 그 감정인의 극히 부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보다 진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에 출두할 당시에 그 어떤 부분보다도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그 허황한 말들이 무리없이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섬뜩한 느낌이 들었으며 지금까지 그때의 그 느낌은 여전합니다. 거의 매일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강력사건들, 돈 몇푼에 사람을 죽이고 고귀한 인격을 거래하며, 자신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인명을 해치는 이 각박하고도 무서운 현실이 "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인가" 하며 경악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는 가운데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상식의 뒤안에서 "혹시 유서를 대신 써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비상식의 상식을 용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가치관이 혼란되고 극단적인 배금주의와 비인간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되는 그런 비상식의 상식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몇백년전에도 있었을까 말까 한 일들은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이 땅 한반도에서 발생하게끔 했던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 사건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확실히 척결

해내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서대필 사건으로 어이없는 비상식의 상식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죽어서도 명예롭지 못한 고 김기설동지와 저, 그리고 제 가족들과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홍성은을 비롯한 몇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의 그 어느 누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은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희생의 댓가와 땀과 눈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동료의 죽음을 부추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이 재야라는 말은 정부당국의 반민주성 반민중성에 항의, 목숨마저 내던졌던 수많은 열사들의 고귀한 죽음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돌려져야 할 말입니다. 지난 5월 8일 기설이가 서강대에서 분신한 직후 서강대 박홍 총장은 "우리 사회에 죽음을 부추기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는 요지의 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발언의 여파는 곧이어 정구영 검찰총장의 "분신배후 수사 지시"로 이어졌고, 고인의 유서에 거명된 전민련의 서준식 인권위원장과 김선택 사무차장이 분신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 치기어림과 어불성설을 구차스럽게 여기서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처음부터 수사당국은 유언비어에 가까운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들을 조직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유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옥상위에 흰 점퍼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후에 분신과정을 보고 올라간 서강대생으로 밝혀짐)", "라이터가 발견되지 않았다(엄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옥상문을 혼자서는 열 수 없다(후에 열리는 것으로 밝혀짐)", "신나 구입 경위가 모호하다(후에 밝혀졌음)" 등의 국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유언비어들만 만들어내더니 이젠 유서대필입니까?

이 지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회에서 누가 젊은 청춘의 목숨을 앗아가는 배후입니까? 재야인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젊은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조직적인 배후가 재야입니까? 검찰입니까? 동료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그의 뜻을 기리는 사람들이 분신의 배후세력입니까? 아니면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 만회하려는 정치적 목적하에 재야민주단체에 몸담고 있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이 분신의 배후입니까? 최소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난 5월 8일 이후 전남대에서 분신했던 한 노동자의 유서에는 "도대체 누가 분신을 배후조종한단 말인가"라는 요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검찰은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질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6월 24일 검찰에 자진출두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한달여에 걸친 농성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가운데 거의 매일같이 정·사복 전경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며 저를 찾아오셨던 어머니도 이날 제가 담담히 성명서를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제 앞에 앉아계셨습니다. 당시 저는 지쳐서 파리해지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찰에 가서 어떤 수사관으로부터 "왠 쇼를 그리 하느냐"며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 두번째 서는 것인데, 그 첫번째는 85년 대학교에 다녔을 당시였습니다. 당시 전두환정권하에서 끝내 개헌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농성사건에 제가 가담하여 2년의 형을 받았을 때입니다. 제 어머님은 제 면회를 위해 의정부교도소, 성동구치소, 영등포교도소에 있는 동안 수많은 눈물을 뿌리셨습니다. 큰아들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기 위해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처음 눈물을 보인 것은 형이 확정되어 마산교도소에 도착한 다음 날인 1986년 9월 9일,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낯설고 물설은 고장에 아들을 면회키 위해 내려온 그날 마산교도소 접견장에서 였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고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 발을 디밀었다는 고립감보다는 저를 더 슬프게 했던 것은 핼쑥한 어머님의 얼굴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가족만이 특별히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꺼

운 유리벽 사이로 안타까운 눈길만 서로 확인한 채 돌아서는 어머님의 모습은 이 땅의 한을 가진 모든 어머님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6월 24일 그때의 그 눈빛, 그 모습을 또다시 다소곳이 명동성당 한켠에 앉아서 의연함을 잃지 않던 어머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개월에 걸친 수금생활 동안 편치 않은 몸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와 그때 마산교도소보다 더 두꺼운 이중창 너머로 안타까운 눈길만 제게 던지고 계십니다.

제가 특별히 효자도 아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는 것은 지난 8월 추가 기소된 '국가보안법이라는 혹'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몹쓸 죄를 지은 죄인으로 단정되어 세상의 온갖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다닌 5개월의 면회길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인간의 눈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더 이상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고통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만을 확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간의 고통이 저와 제 가족에겐 이미 너무나 큰 것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고난의 역사속에서 샛별처럼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반대로 가식과 허위는 그 명이 짧아 감추인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없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둔갑되어도 사실은 머지 않아 참모습을 띠며 백일하에 밝혀지게 됩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경험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확실히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명제는 최근 몇개월동안 제 좌우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위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만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떳떳하며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무거운 마음이 제 가슴속 한켠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사건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지나간 우리 역사에서 단지 정치적이었다는 이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못한 예는 상당히 여러번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묻혀져 있는 시간은 우리의 역사를 퇴보하게 하고, 무수히 많은 재난을 부릅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우격다짐 받고, 그것이 사실인양 광범히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에 "유서를 대신 써주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관념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다가, 만일 사법부에서마저 이를 인정한다는 끔찍한 가정은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을 의미할 뿐입니다. 비단 이것이 저 한 사람의 불행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때까지의 기간은 살아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의 단절이요, 좌절의 시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입김이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백지에 한 글자를 쓰는 마음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5개월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허위가 진실로 둔갑되어버리는 기막힌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하겠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무참히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는 현실에서 예지와 공명정대함으로 올바른 판결을 해 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역사에 다시는 허위가 참으로 둔갑되는 기막힌 일들이 반복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이야기 두 가지와 감상의 말씀을 전하고 진술을 마칠까 합니다.

그 첫번째는 제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각종 유인물이나 문건을 2년 가까이 폐기시켜버리지 않은 그 게으름과 어리석음입니다. 견해의 일치여부와는 관계없이 시종 저를 부끄럽게 했던 첫번째 주제입니다. 두번째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제가 전민련 동료인 임무영의 글씨를 보고 유서가 대필되었을 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일에 대해서 입니다. 물론 사건의 발단은 검찰의 판단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저의 유약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쉽게 검찰의 대필 주장에 동조했던 것이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의혹과 당혹감을 던져 주었기에, 그리고 설령 지금은 혐의가 벗어졌더라도 동료

임무영은 다른 건으로 엮여져 아직까지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평생을 다해도 씻지 못할 동료로서의 최소한의 신뢰를 한때나마 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바쳐서라도 저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상응한 사죄를 하겠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명동성당 농성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은혜을 입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무렵 제 건강과 정신상태를 염려해주던 대책회의(국민회의) 관계자분들과 전민련의 동료들, 특히 저를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해주신 서준식 선배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농성 도중 만난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명동성당 신도 여러분, 특히 크나큰 압력하에서도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안아준 김 추기경님과 경 신부님 이하 모든 성당 관계자 분들, 카톨릭 단체 여러분, 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셨던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변호사님 이하 10여분의 변호사님들과 기독교 대책위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밤을 새며 조사를 받을 때 함께 고생한 서울구치소 출정과 담당님들은 매우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제 일신만을 염려해주신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끝 -

1991. 12. 4.

피고인 : 강 기 훈

▣자료 나-11-4 (공판기록 1088~1133)

論 告 文

(自殺幇助等事件)

1991. 12. 4.

서 울 地 方 檢 察 廳

目 次

一. 序 言 —— 1
二. 公訴事實의 要旨 —— 3
三. 證據關係 —— 4
1. 自殺幇助
가. 遺書가 代筆되었다는 點에 관하여
나. 遺書를 被告人 姜基勳이 代筆하였다는 點에 관하여
다. 犯罪의 日時, 場所, 動機에 관하여
라. 辯護人團의 主張과 提出證據에 관하여
2. 國家保安法違反
四. 法律適用 —— 37
五. 情狀關係 —— 38
六. 求 刑 —— 44

一. 序 言

0. 저희 검사 일동은 장장 5개월여동안 10차에 걸쳐 특별재판기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엄정하게 심리하시느라 애쓰신 재판부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변호인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0. 본론에 앞서 이 사건 수사착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김기설의 분신 후 현장검증과정에서 동인의 분신시작이 이른 아침인 08:07경이고, 당시 서강대에는 아무런 집회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다른 시국관련 분신자살사건들이 시위 또는 집회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행하여진 전례와 상이하며, 분신자살 장소가 김기설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동인의 분신자살과정에 제3자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둘째로 김기설의 사체검시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임근재에 의하면 분신 당일 새벽 05:30분경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기설이 누구에게인지 전화를 한 후 도망쳐 놓쳐버렸다는 것인 바, 분신 시점에서 유서를 작성하거나 시너를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분산자살 당일 검찰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양시 호계동 동사무소에서 긴급 입수한 동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의 필적이 유서필적과 현저히 달라 김기설의 자살이 순수하게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되었고, 특히 분신현장에서 발견된 김기설 명의의 유서 내용 및 필적에 관하여 유족측에서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망 경위에 대하여 강력한 의의를 제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건 기소에 이르른 것입니다.

二. 公訴事實의 要旨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각 공소장 기재[306]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합니다.

三. 證據關係

1. 自殺幇助

가.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1)국립과학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제4차, 제5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유서의 필적은 동일인이 가질 수 있는 필적이 아니라는 증언과 동인 작성의 각 감정회보의 기재 중 같은 취지의 기재부분에 의하여 유서는 대필되었음이 판명되습니다.

(2)나아가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김기설의 필적 및 행적이 담긴 그의 수첩이 조작된 사실이 아래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즉,

0. 홍성은의 7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은 사망하기 전날인 5. 7.밤 신촌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그의 여자 친구 홍성은을 만나 분신자살 계획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수첩을 꺼내어 전화번호란을 찢은 다음 자신이 죽은 후 연락할 사람을 표시하고 이를 홍성은에게 건네주었다가 즉시 수첩도 쓸 만하다면서 찢어진 전화번호란과 함께 수첩 전부를 홍성은에게 건네준 사실이 명백하므로 김기설이 죽기 전 남기 수첩은 찢어진 전화번호란의 절취선 부분과 그 잔류부분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형영의 4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전민련이 김기설의 수첩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수첩은 찢어진 전화번호부란의 절취선이 잔류부분과 일치하지 않고 겹쳐지며 수첩의 글씨 또한 김기설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취지의 증언 및 각 감정회보서 중 같은

306) 총자료집 II책 27쪽 참조.

취지의 기재부분.

0. 김기설이 분신자살하기 전 남긴 수첩을 가장 관심을 갖고 생생하게 목격한 김기설의 여자친구 홍성은의 제7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김기설이 분신 전날 자기에게 넘겨준 수첩을 5. 8. 연대 범대위 사무실에서 전민련 간부 원순용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전민련에서 검찰에 제출한 수첩을 살펴보니 1)수첩이 더 홑어져 있고, 2)일정표란에 자신의 기억과 달리 연필, 청색 필기구, 녹색 하이테크, 분홍색 형광펜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며, 3)『회원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란을 수정한 부분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검정색 필기구가 아닌 청색 필기구로 씌여져 있고, 4)일정표란의 "가든호텔"이라는 5. 7.자 약속장소 기재 부분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검정색이 아닌 녹색 하이테크 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5)전화번호 기재란이 한장 없어졌고, 6)수첩 맨 뒤의 모눈종이 부분 석장이 없어졌으며, 7)전화번호 기재란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검정색이 아닌 청색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8) 전화번호란의 수첩절취선이 기억보다 매끄러웠다고 하는 취지의 증언과 위 홍성은의 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같은 취지의 증언 및 인재근, 김진수 등의 지시로 검찰 1회 조사시 수첩의 존재를 숨겼다는 취지의 증언과 검찰에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

0. 숭의여전 학생 이보령의 제8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4. 18. 김기설이 자신의 수첩에 "목요예배 헌금 38,600"이라고 기재한 것과 숭의여전 총학생회 직통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필기구로 기재한 것인데 전민련에서 검찰에 제출한 수첩을 확인해 보니 "목요예배헌금 38,600"은 연필로, 숭의여전 총학생회 직통전화번호는 청색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위 이보령의 검찰 자필 진술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및 숭의여전 학생 민수진, 최수미의 각 검찰에서의 자필 진술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0. 피고인 강기훈의 제4, 5회 피의자신문시 진술 중 수첩의 절취선은 육안으로도 분명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첩이 조작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제8차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중 이영미가 5. 8. 연세대에서 수첩을 처음 보았을 때 전화번호 기재부분이 주로 검정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등에 의하여

전민련이 김기설의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수첩은 김기설이 남긴 진본이 아니라 조작된 것임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3)더우기 김기설의 가족 증언에 의하여 유서가 대필인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0. 김기설의 부친인 김정열의 제4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5. 8.밤 영안실에서 유서 사본을 천천히 읽어본 바, 김기설은 6세 때 생모가 사망한 이래 큰누나인 김화자의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평소 계모에 대한 정이 없음에도 유서 내용에 아버지, 어머니만을 언급하고 누나들, 특히 큰누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족들은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가족들이 가진 김기설의 글씨와 상이하며 나아가 김기설이 1991. 4. 중순경 누나에게 여자가 생겼으니 곧 결혼하겠다고 말하여 유족들이 상의, 방을 얻어주려고까지 하였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 및 위 김정열의 검찰에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

0. 김기설의 이종사촌인 이재구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평소 김기설의 글씨를 좋아하여 약 100회 모방해 보아 김기설의 글씨를 아는데 유서의 글씨는 김기설의 글씨와는 다르다는 취지의 증언 및 위 이재구의 검찰에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

0. 김기설의 자형인 장병호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유서의 필적이 가족이 소지하고 있는 육아책자 속의 김기설의 필적과 달라 검찰에 제출, 감정을 요청하였고, 연대 영안실에서 대책위 관계자가 김기설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감시하여 싸웠다는 취지의 증언 및 위 장병호의 검찰에서의 같은 취지의 질술에 의하여 유서는 김기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하여 대필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또한 피고인은 유서대필 및 수첩조작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오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궁지에 몰리자, 제5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유서가 김기설의 글씨와는 다르고 수첩은 육안으로 보아도 절취선이 겹쳐 조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그와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도 유서는 대필되었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5)결국, 국립과학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증언, 동인 작성의 각 감정회보, 증인 홍성은, 이보령의 각 증언, 참고인 최수미, 민수진의 검찰 자필진술서 기재 및 김기설의 가족들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강기훈의 검찰진술에 의하여 유서가 대필되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 유서를 피고인 강기훈이 대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제4차, 제5차 공판기일 증언 중 유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언 및 동인 작성의 각 감정회보서의 같은 취지의 기재부분에 의하여 유서는 피고인 강기훈에 의하여 대필된 것임이 명백히 판명되었고,

(2)위 김형영의 제4차, 제5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조작된 수첩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언 및 동인 작성의 각 감정회보서 중 같은 취지의 기재 부분에 의하여 조작된 것임이 인정되는 전민련 수첩도 피고인이 조작,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유서가 피고인 강기훈에 의하여 대필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되었습니다.

(3)그밖에도 피고인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태필하였다는 정황증거로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 증인 홍성은은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

0. 김기설의 친구인 홍성은의 제7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5. 7. 저녁 김기설로부터 다음날 분신자살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23:00경 강기훈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설의 부 김정렬의 전화번호를 2회에 걸쳐 불러주며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강기훈은 홍성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 및 위 홍성은의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같은 취지의 증언과, 위 홍성은의 검찰에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 위 홍성은의 제7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중 5. 10. 봉쥬르카페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홍성은에게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예, 아니오로 간략하게 답변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사람을 끌여들이지 말라"고 말하고 5. 12. 도이치 호프집에서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최덕수 등의 분신 사건에 직,간접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사건에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이 최대의 실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대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위 같은 취지의 진술, 위 홍성은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중 5. 10. 봉쥬르카페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죽은 김기설을 빨리 잊으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수첩 뒤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를 써주어 불쾌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및 위 홍성은의 검찰에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과 검찰 최초 조사시 강기훈이 자신의 수첩 뒤에 죽은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써준 이유를 알아차리고 이를 김기설이 써준 것으로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주고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필적을 조작하려 한 사실이 입증합니다.

0. 다만 위 홍성은은 피고인과 대질하거나 피고인과 자신의 대학친구 이영미 등이 있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수첩 뒤에 김기설의 이름 및 전화번호

를 적어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증인의 대학선배이고 피고인의 애인인 이영미가 증인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면전에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 또는 증언를 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고뇌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진실은 위 홍성은이 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한 내용과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7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추궁에 증인 홍성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불합리한 진술 등

0.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궁지에 몰리자 유서는 대필되었고, 전민련측에서 김기설의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수첩이 조작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1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태도를 돌변하여 범행을 묵비 또는 은닉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순서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모순에 가득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0. 즉, 피고인은 1991. 5. 18. 검찰이 피고인을 유서 대필자로 지목하자 명목성당에 숨어들어가 농성을 계속하면서 각계에 자신이 무고한 듯이 호소하다가 성당측의 퇴거 요청 및 수사기관의 포위상태 속에서 검찰에 출두하게 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협의자로 지목된 것은 1991. 5. 18. 신문보도를 본 동료가 알려주어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5. 13.에 홍성은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친구인 김진수, 방수연, 이영미 등과 회동하면서 그 대책을 숙의한 점, 나아가 김기설이 분신하기 전날인 5. 7. 23:30경 홍성은이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하여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여 달라면서 김기설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두차례씩 불러주고 메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검찰 조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홍성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과, 또 동녀가 전화번호를 불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또 왜 홍성은이 그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는지 기억할 수 없으며 전화번호를 메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어불성설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통화 당시 홍성은이 전화를 걸자마자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여 홍성은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김기설의 분신계획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는 동녀의 법정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5. 18.에야 자신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로 지목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것으로 허위진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0. 더우기 피고인은 이미 언론에서 유서대필사건을 보도하기 전인 5. 17.에 자신의 어머니를 홍성은의 집에 보내어 홍성은의 어머니에게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느냐 홍양이 잘못 진술하면 피고인이 곤란해진다며 변호인 선임을 독촉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홍성은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여러가지 방도를 강구하였음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0.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1991. 6. 24.부터 7. 5.까지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에 대하여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전민련의 부장인 김형민, 정윤서 등이 검거되어 진실이 밝혀지자 할 수 없이 1991. 5. 10. 전민련 사무실에서 위 업무일지를 찾아내었으며 다음날인 5. 11. 위 정윤서에게 피고인의 손으로 넘겨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조작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다가 위 정윤서 등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탄로된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0. 또한 피고인은 김기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5. 12.밤 김진수, 홍성은, 이영미 등과 술집에서 대화할 때 위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분신사건과 단국대학생 최덕수 분신사건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무사히 장례를 마쳤는데 이번 김기설 사건에서 성은이를 내세운 것이 최대의 실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말을 받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명백히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전민련 제출의 수첩이 조작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첩을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90년도까지 매년 전민련 수첩을 사용해 왔음에도 '91년도에는 전민련 수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의 '91년도 전민련 수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진술거부, 부인 등을 일삼으며 앞뒤 모순된 진술로 자신의 범행을 은혜하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난 사실까지 모두 묵비 내지 부인을 하고 있는 바, 그의 변소는 모두 거짓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0. 더우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김기설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1. 5. 1.부터 5. 3.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뿐 특별한 일이 없었다며 자신의 행적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홍성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5. 13.부터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5. 16.부터 5. 18.까지는 연세대 학생회관에 있는 강경대 대책위 사무실에 숨어들어가 있다가 5. 18. 밤부터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것으로 밝혀져 홍성은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피고인의 모순되고 거짓된 진술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다.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에 관하여

(1) 일시, 장소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장에 범행의 일시, 장소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부적합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8.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관하여 진술 거부, 또는 부인을 하고 있고 필요한 주요 참고인들이 수사 절차를 공동화시키기 위하여 잠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래된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하겠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 및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고 이것이 죄가 되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 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고 할 수 없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엄격한 요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 그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족하다"는 것이므로(대법원 판결 1984. 8. 14. 84도113 및 1965. 12. 10. 65도826, 1985. 3. 12. 83도2197, 1987. 1. 20. 86도2260)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등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2) 동기

형법 2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관여죄의 교사 또는 방조라 함은 널리 타인의 자살행위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며, 특히 자살방조행위는 이미 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정신적 무형적 방조도 인정된다 할 것인 바, 피

고인이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고조된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 도화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살을 결심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의 분신 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적으로 자살방조 행위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유서 내용을 살펴볼 때 김기설은 고교 1년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식과 문장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더욱 아닙니다. 아름답고 맑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 속에 얻은 결론이겠지요…중략… 민중권력 쟁취를 위한 행진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선동적인 유서(1)와 "… 이제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 전민련 선택이형, 서준식 인권위원장님께 위임하세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서(2)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분신자살을 미화하고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의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은 바로 자살방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 변호인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관하여

0. 이 사건 공판진행 중 변호인단에서 제5차 기일 이후에 이르러 검찰의 전민련에 대한 수차에 걸친 서증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던 자료와 증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내놓은 여러가지의 글씨는 과연 그것이 김기설의 필적인지 아니면 김기설의 필적인 것처럼 조작된 필적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김기설이 죽기전 남겼다는 수첩의 절취선이 겹쳐 불일치하고 수첩 목격자인 홍성은, 이보령, 최수미, 민수진 등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하여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일부 변호사가 이보령 등 증의여전 학생들로 하여금 검찰 조사시 허위진술하도록 지시 내지 유도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 이상 피고인이나 그의 일부 변호인이 이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이 내놓은 여러가지의 글씨에 대해서는 먼저 그것이 과연 김기설의 필적인지에 대하여 과학적인 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한 변호인단은 그 감정을 신청하지 않음은 물론 재판부에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종 서증에 대하여 필적감정 전문기관에 감정을 신청할 용의가 없느냐고 수차 촉구하였고, 검찰이 위 각종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증인의 증언 모순 등에 비추어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은 필적감정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변호인단이 제출하지도 않았으면 존제 자체를 몰랐을 서증을 굳이 감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위 각종 서증들이 반드시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까지 10차 공판기일에서 공언함으로써 위 서증이 김기설의 필적인지에 대하여 변호인단 자신도 확신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기까지 하였습니다.

0. 이제 변호인단이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각종 서증과 증인에 대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변호인단 제출의 증제5호 증의여전 메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것을 전민련측에 건네준 이보령의 검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상이하고(이보령은 검찰에서 위 메모가 과연 김기설의 글씨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질술했는데 공판기일에서는 위 메모가 김기설의 글씨임에 분명하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였음) 특히 위 메모는 5. 20. 저녁에 진민련측에 제출되었다가 그 이튿날인 5. 21. 이보령 등이 다시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보령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의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검찰 조사에 대비해 녹음을 하면서 변호인과 일문일답식의 예행연습까지 한 다음 검찰에 출두, 위 메모가 전민련측에 하룻밤 있었던 사실을 숨긴 채, 위 메모를 기자회견을 한 후 당일 전민력측에 넘겨주었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위 메모가 조작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다음. 증제1호 성남터사랑학우회 방명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것이 과연 노트였는지 아니면 앨범식 방명록이었는지에 관하여, 제출자인 김병희, 김시중은 "노트"였다고 검찰에서 증언하고 방명록 서명자인 전현철은 검찰에서 "앨범식 방명록"이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방명록의 성상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전달받은 전민련 관계자가 이보은(이명:도레)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인지에 대하여 제출자인 김병희, 김시중의 진술, 증언이 상이하고, 그 방명록을 찢은 시기에 대하여도 관련자인 김병희, 김시중의 진술 및 증언이 제출 직전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서로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시중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방명록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찢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중요한 서류도 아닌 찢어진 방명록을 계속 보관한 이유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공판정에 찢어진 상태로 제출된 위 방명록의 글씨가 과연 김기설이 한정덕이라는 가명으로 쓴 바로 그 방명록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우기 위 방명록은 피고인측의 감정의뢰로 감정한 결과 유서와 이동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사설 감정인의 감정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 다음 증제10호 수원민주화청년연합 방명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방명록은 100여명이 참석한 수원민주화청년연합에서 씌여진 것으로 명의가 "성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원 일동"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명록 자체의 성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측 증인 강효남이 제6차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문방구에서 전날 구입, 준비하였다는 방명록이 앞장의 하늘색 간지가 찢어져 있고 모두 5묶음으로 분리 편철되어 있음에도 첫째 부분은 26매, 둘째 부분은 5매, 셋째 부분은 6매, 넷째 부분은 8매, 다섯째 부분은 9매로 조작된 것이 육안으로 뚜렷하고, 호치켓으로 재제본되었으며, 첫째 부분 중 20매는 옆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편철되고, 준비된 필기구로 쓰는 것이 관례인 방명록에 볼펜, 매직펜, 하이테크 포인트펜 등 여러가지 필기구로 쓴 부분이 혼재하며, 특히 김기설이 썼다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질에 차이가 있어 옆으로 튀어나와 나중에 재편집된 것이 자체의 성상으로 보아 거의 신빙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음 증제4-1호, 대유학보 원고와 증제8호 속초동우전문대 녹취기록노트는 그 어느 누구도 김기설이 그것을 쓰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특히 녹취서의 경우 김기설의 글씨라고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부분은 뜯어졌다가 호치켓으로 붙인 상태이며, 여러 사람의 필적이 혼재되어 있고, 여러 곳에 낙서가 되어 있는 조잡한 상태인 바, 이러한 성상으로 보아 그것이 과연 서준식의 증언처럼 김기설이 전민련 실무자로서 인권위원장 서준식을 보좌, 수행한 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정리해준 것이라 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검찰이 전민련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김기설의 필적 제출을 요구했을 때 조작된 업무일지를 제출하면서도 바로 김기설의 책상에 있었다는 위 녹취노트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더우기 위 녹취노트는 여러 사람이 기재한 것이고 김기설의 부탁으로 녹취작업을 거들었다는 홍성은의 제7차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김기설이 쓴 녹취노트는 이 법정에 제출된 녹취노트보다 김기설의 글씨가 더 빽빽히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위 녹취노트는 김기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 변호인단이 5. 8. 김기설의 수첩을 사본한 것이라며 제출한 증제20-1호, 증제20-2호 각 수첩 사본과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측 증인 최경환, 이효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민련 제출의 조작된 수첩이 적어도 3회 이상 수십부 복사된 사실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고, 위 수첩중의 진선생이

라고 기재된 전화번호 기재란이 수배된 한상렬 의장의 전화번호이므로 외부에 흘러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인재근 등 전민련 관계자가 말하면서 찢었다는데도 한부는 그 부분이 찢어져 있고 한부는 반대로 그 부분이 찢어지지 아니한 채 오히려 진선생이 한상렬 의장이라고 명기되어 증인들이 외부로 가져간 점, 위 증인들이 김기설의 사망사실을 연락하기 위해 수첩전화번호란을 사본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전화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전후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위 최경환이 연락을 하기 위하여 연락할 사람의 전화번호 옆에 소속, 단체 등을 자신이 부기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의 옆에도 소속을 부기하였다고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위 이효경이 수첩사본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의 이름 옆에 부기된 소속 표기가 자신의 글씨가 아니고 누구의 글씨인지 모른다고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수첩사본이 과연 5. 8. 복사된 사본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사본을 소지하던 사람이 다리를 저는 남자였다고 제7차 공판기일에서 증언한 홍성은의 진술과 달리 위 증인 중 남자인 최경환은 다리를 절지 않는 점, 수차에 걸쳐 검찰이 수첩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수첩조작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어 검찰과 전민련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었음에도, 그 당시 전민련측이 공개하거나 제출하지도 않았던 수첩사본을 제7차 공판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수첩사본들은 바로 5. 8. 김기설의 진짜 수첩을 복사한 사본이 아니고 조작된 후의 수첩을 사본한 것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 증제3호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 증제6호 청구서, 증제11호 책(한국사회와 자본론 강의), 증제13-1 명함, 증제23-1 각서 등은 그것이 김기설이 쓴 것이라는 최소한의 형식적 입증마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위 각서의 경우 성질상 당연히 있어야 할 김기설의 인장이나 무인이 찍혀 있지 않은 점, 유서대필 논쟁이 한창이던 6월 초순부터 전민련측의 수중에 위 각서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존재에 관하여 한번도 주장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나 그의 일부 변호사가 이 사건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점에 비추어볼 때 그것이 모두 김기설의 글씨인지 아니면 피고인이나 다른 누구에 의하여 조작된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증제3호 방명록의 경우 피고인측의 의뢰에 의한 사설감정인의 감정결과 유서와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판명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 그밖에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종 서증과 관련하여 증언한 증인 중, 증인 이영미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이미 피고인의 범행 은폐기도에 관련되었음은 물론 증인 홍성은의 증언을 번복시키고자 수회 접촉하였음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고, 또한 전민련 인권위원장이라는 증인 서준식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차에 걸쳐 검사 입회 아래 피고인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김기설의 필적을 잘 모른다고 명확히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김기설의 필적을 잘 알고 있고 위 각서를 포함한 각종 서증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증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접견 내용이 녹음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위 증의 벌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후 재차 신문하자 강기훈과의 접견시 김기설의 필적을 잘 모른다고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후퇴한 점으로 볼 때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0. 마지막으로 일본인 오니시의 필적감정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인의 감정은 그가 법정에서 인정하였듯이,

첫째, 김기설의 글씨인지 논란이 있는 수첩, 승의여전 메모, 방명록 노트 등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김기설의 글씨인지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감정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들이 김기설의 글씨라는 전제하에서 감정을 함으로써 출발점인 전제가 잘못되었고,

둘째, 감정의 중심대상인 유서 등을 사본으로 자료를 삼아 감정하여 세밀한 특징 및 필압 등을 검토할 수 없었으며,

셋째, 유서, 수첩, 승의여전 메모, 방명록 등의 필기구를 전혀 엉뚱한 것으로 판단하여 필기구에 따른 필적의 변화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고,

넷째, 한글을 전혀 몰라 「ㄹ」, 「ㅁ」, 「ㅂ」, 「ㅎ」, 「ㅏ, ㅑ」 등 자모의 형태를 감정하면서도 어느 글자가 「ㅂ」인지 「ㅁ」인지로차 전혀 몰랐으며,

다섯째, 한글 필적감정의 경력이 없어 한글에 없는 해서체, 행서체의 구별을 멋대로 하고 과연 「ㄹ」, 「ㅁ」, 「ㅂ」, 「ㅎ」, 「ㅏ, ㅑ」 등 자모의 형태 중 어떠한 형태가 희소성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징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었고,

여섯째, 한국 자모가 총 24자 임에도 위 6가지 자모만을 비교하면서 필적감정의 기본인 필세, 필순, 필의 각도, 간격, 개인의 잠재습성 등을 감정의 기본으로 삼지 못하였고,

일곱째, 종선의 방향을 대조하면서도 글을 쓸 때의 자세, 종이가 놓인 위치 등을 고려하지 못함은 물론, 사본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하고,

여덟째, 종선의 방향을 대조함에 있어 유서에서는 "수직과 좌하방"의 2가지 필법만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강기훈은 "우하방"의 필법만을 사용하여 서로 상이하다고 감정하면서 유서에 있는 "좌하방"의 종선이 16개라고 감정서에 표기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유서에도 피고인의 필법과 같은 "우하방"의 종선이 28개 있음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이 명동성당에서 시필한 유서내용에도 필적 증에는 유서의 필적과 같은 "좌하방"의 종선이 13개소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아홉째, 받침 「ㄹ」을 대조함에 있어 김기설의 필적 중 「ㄹ」은 어느 것이나 모두 제2의 횡선을 생략하고 「ㄷ」과 같이 쓴다고 감정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김기설의 「ㄹ」자 중에 유서와 다른 제2의 횡선이 있는 「ㄷ」자가 있음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필적중 받침 「ㄹ」자는 어느 것이나 유서와 달리 제2의 횡선을 가하여 「ㄷ」과 같이 쓴다고 감정서에 기재하였으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강기훈의 「ㄹ」자에도 유서와 같은 제2의 횡선이 없는 「ㄷ」자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쓴 진술서에는 유서와 같은 제2의 횡선이 없는 「ㄷ」자의 형태가 첫째장과 둘째 장에만 40개소 나타남을 시인하였으며,

열째, 「ㅁ」, 「ㅂ」, 「ㅎ」, 「ㅏ, ㅑ」의 필법에 대해서도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서에 기재하였으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같은 「ㅁ」, 「ㅂ」, 「ㅎ」, 「ㅏ, ㅑ」 등이 많이 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의 오류가 법정에서 하나하나 탄로나자 증인은 감정서의 표현 중 "어느 것이나 모두"라는 부분을 빼버린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자신을 도와준 이름도 모르는 N.C.C 계통의 한국인이 잘못 가르쳐주어 결국 자신의 감정이 엉터리로 되었다는 점을 시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 자신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N.C.C.에서 보내준 한국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감정이 불가능하였다고 자인함으로써, 증인의 이번 감정은 실질적으로 증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N.C.C.가 보낸 한국인에 의하여 유도된 감정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이로써 증인의 이건 감정은 결론을 미리 상정한 의도된 감정으로 증인은 그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0.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결국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는 어느 것이나 모두 도저히 취신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2. 國家保安法 違反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이적 단체

인 "혁명의 불꽃"그룹에 가입한 사실 및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기관지인 "혁명의 불꽃"및 혁노맹의 창립선언문등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은,

0. 피고인의 제1차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및 검찰에서의 진술.

0. "혁명의 불꽃" 및 혁노맹"의 조직원이었던 참고인 이종원, 같은 김경숙 등의 경찰에서의 진술.

0. "혁명의 불꽃" 및 "혁노맹" 조직원이었던 박대호, 같은 노성철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기재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四. 法律의 適用

이 서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자살방조 부분은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에,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5항, 제1항, 제14조에 각 해당하고 이상의 죄들은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五. 情狀關係

1. 이사건의 정상관계를 논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피고인의 반국가적, 반체제적 성향입니다.

0.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재학시 "군부독재 타도와 민중민주정부 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투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985. 11.에는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 방화 사건"을 주동하여 처벌받는 등 반체제 학생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그후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이현우"라는 가명으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약칭:전노운협),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전민련) 등에 소속되어 재야운동권 인사로 활동해오던 중 급기야는 1988. 11.에 이르러 "상우"라는 가명으로 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그룹에 가입하여 1989. 8. 동 이적단체가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 동맹"(약칭:혁노맹)으로 확대 개편된 후에까지 김정훈이라는 가명으로 그 핵심멤버인 노성철 등과 계속 접촉하면서 급진적 과격 변혁 노선인 소위 민족민주혁명이론(NDR)에 심취된 좌경혁명분자입니다.

0. 피고인이 가입활동해 온 "혁명의 불꽃"그룹은 그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그 성격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면서 노동자 중심의 기층민중이 무장봉기하여 미제국주의와 파쇼 독재권력인 현정권 및 독점자본을 타도하고 임시혁명정부를 구성, 혁명적 사회변혁을 수행함으로써 소위 민중 주체의 민중공화국을 구성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을 기본강령으로 하고 있으며 혁노맹은 그 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하노동당 건설, 혁명군대 창설, 요인암살 등 테러, 무장수단 비축 등 구체적 전술계획까지 수립한 불법지하이적단체인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진술했듯이 그의 낡은 혁명이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0. 피고인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주어 그의 자살을 방조한 것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과 성향에 비추어 볼 때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맹신하고 불법 지하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그룹에 가입하여 민족민주혁명이론(NDR)으로 무장, 그 실천의 장을 엿보던 중 1991. 봄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고조된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 분위기와 잇단 분신자살로 야기된 극도의 사회혼란을 이용하여 현정부를 타도한 후 민중 주체의 민중민주정부의 수립을 획책하면서 민중봉기를 유도, 그 기폭제로 삼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념적 동지인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주어 그의 자살을 부추긴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 부분은 목적을 위하여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음 피고인의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은 후 그 배후가 있지 않나 하는 국민적 의혹이 일어,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 유서대필 여부가 수사의 촛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혐의자로 부각되어 증거가 수집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가장 도덕적인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김기설이 남긴 수첩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일부 변호인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가는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 내지 유도하는가 하면 피고인 자신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묵비하거나 기억에 없다고 하고 때로는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도덕성 운운하면서 내심으로는 목적을 위하여 증거도 조작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피고인측의 평소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의 발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0. 이러한 피고인측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한글도 모르는 일본인에게 한글을 감정시키고 그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 문화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킨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측은 자신이야말로 애국애족의 표본으로 지고한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그러한 민족주의자가 우리 민족문화의 표상인 한글의 감정을 한글도 모르는 일본인에게 시키고 그를 이 법정에 내세워 그 감정이 신빙성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피고인측이 입만 벌리면 외쳐되는 민족 주체성의 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피고인측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끝으로 피고인의 부인과 묵비 그리고 참고인들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소위 『분신의 배후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김기설 분신사건의 배후관계 수사에 착수하여 김기설의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수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그전에는 2-3일 간격으로 일어나 사회를 극도로 혼란시켰던 분신자살 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증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발생한 일련의 분신자살사건에 배후가 있지 않나 하는 국민적 의혹이 단순한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회에 다시는 소위 『죽음을 부추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적 충정을 모아 피고인을 논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六. 求 刑

위에서 살펴본 사실 및 증거관계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에 마땅함으로 피고인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11-5 (공판기록 1134~1143)

참고자료 제출

사 건 91고합 1126 자살방조
피고인 강 기 훈 (姜 基 勳)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명동성당에 머무르고 있을 때인 1991. 5. 29.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낸 피고인의 편지(사본)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1991. 12. 5. 변호인 유현석이 김수환 추기경께 말씀드려 직접 받아온 것입니다.

1991. 12. 6.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 창 국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25부 귀중

* 강기훈 편지(1991. 5. 29.자) <생략>[307]

노원욱 재판장님께 드립니다.

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강기훈의 어미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늘 피로해 계실 재판장님께 이런 글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이어서 망서리고 또 망서리다가 하소연할 길 없는 이 어미의 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 염치를 무릅쓰고 펜을 들었습니다. 괴로우시더라도 부디 외면만은 말아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4일 11차 공판때 법정에서 소리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자식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부터 제 마음에 굳게 다짐한, 자식이나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추태를 부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56년 동안의 삶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6개월의 그 고통의 결과가 7년이라는 구형으로 나타났을 때 제 인내심의 한계가 다달았던듯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십시요. 저의 가정은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풍을 이야기하고자 함에서 입니다. 올해 93세인 조부님은 40대 초반에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교회의 기둥으로서 원로로서 건재해 계시고 10남매나 되는 기훈이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은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으로 한 사람도 빠뜰어짐 없이 정도를 외길로 걸어오면서 옥심없이 살아왔습니다. 50여명이나 되는 저의 가족들은 나름대로 형제끼리 우애하며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봉사하면서 화목하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듯이 저의 가족들도 조금 소심하기는 하나 저의 시아버님의 성정을 물려받아서 한결같이 유순하고 선량하기만 합니다. 기훈이 아버지는 40여년 동안 국민학교 평교사를 봉직해온 정년을 1년여 앞둔 교육공무원입니다. 평생을 아이들과만 생활해온 탓인지 말할 수 없이 순진무구하고, 열한번이난 열리는 아들의 공판에 한번도 참석 못할 정도로 자신의 직책에 충실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훈이는 이렇듯 선량하고 순진하기만 살람들 틈에서 자랐고 5살때부터 교회에 나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등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온 여리고 정많은 아이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귀히 기르지 않겠습니까만 아버지가 38세가 되어서야 겨우 얻은 맏아들이기에 제 혼신의 힘을 기울려 길렀고 특히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하여 공들인 귀한 자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사람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식으로 기르려 노력했고 또 완벽하지는 못하나마 저의 꿈에 부합된 자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런데 그런 자식이 연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죄인으로 거의 단정되어 찍혀 나올 때의 저의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짐작하시는지요? 거기에다 주위사람들

307) 원본을 총자료집 I 책 340쪽에 수록.

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출처 모르게 떠도는 유언비어들은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자식의 누명을 벗겨줄 수만 있다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고통중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천하에 밝혀내 주시리라는 믿음과 추호도 의심이 가지 않는 제 자식의 행동과 그의 성품을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이 그것이기에 그저 순하고 여리며 조금 소극적인 우리 기훈이는 맡이답게 이 어미의 마음을 살뜰히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제 어미를 생각해서도 그런 짓을 못할 효자입니다. 바쁜중에서도 제가 위장이 좋지 못하여 때를 거르고 누워 있을 때면 주방에 나가 죽을 끓여 들어와 제가 한술 뜨는 걸 보고야 출근하던 딸보다도 살뜰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사려깊은 아이이기에 공부만하는 두 동생도 어쩌보면 형 또는 오빠 때문에 피해를 볼 때도 있건만 한번도 원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몹시 따르며 존경했었고 저의 집은 언제나 조용하고 화기애애 했었습니다. 3.1운동때의 임영신여사의 후배로서 만세운동에 동참하셨던 돌아가신 기훈이 할머님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대학 3학년때 교회에서 야학선생을 하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기훈이는 3학년때에 조금씩 시위에 참가하더니 4학년이 되어 학생회 간부가 됨과 동시에 완전히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처음에는 눈물로 말려도 보았습니다만 세상의 소금이 되겠다는 아이의 신념을 깨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정당 연수원점거사건에 가담하여 2년형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한일에 대한 처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입니다.

저는 사리판단을 조금할 수 있고 이것저것 상황을 종합하여 아이들의 비밀(?)을 잘 유추해낸다 하여 제 아이들로부터 '미쓰 마-플'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상당히 외골수이고 조금은 강직한 성격입니다. 또 아이들을 동물적인 맹목적인 사랑으로 기르는 어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김기설의 분신 전후에 제 자식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면 제 손으로 고발을 하던지 아니면 자수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봐도 검찰의 주장에 머리가 끄덕여지지 않는 것은 어미이기 때문에 아전인수로 생각하는 탓일까요? 친구의 돌연한 사고사에 몇달을 두고 슬피울던 아이가 어떻게 동료에게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마음여린 사람이 그 사람이 죽는 그 시간에 그렇게 평화롭게 세상 모르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냉정히 생각을 고쳐해봐도 제 자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무엇 무엇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제 자식은 지금까지 그런 술수를 배워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교활하지도, 비열하지도, 냉혈적이지도 않는 순수하고 신경줄이 가늘디 가는 계집애 같은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고 처칠이나 케네디보다는 강재구소령이 진짜 위인이라고 하던 아이입니다. 자신이 죽었으면 죽었지 남의 죽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서를 대신 써줄 사람이 아닙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자신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한 7년의 세월이 죄가 된다면 또 동료에게 후배를 소개시켜 준 것이 죄가 된다면 6개월 동안 저희가 받은 고통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요! 제발 검은 것이 흰 것이 되고, 흰 것이 검게 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TV에서 '천사의 미소'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 저는 우리나라에도 저런 천사 한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공상해보는, 이 안타까운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고 지저분한 글 용서하시고 재판장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더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1991년 12월 12일
강기훈 모 권태평 드림

▣자료 나-11-6 (공판기록 1145~1162)

국립과학연구소

물 리 23110-14000 (698-2012) 1991. 12. 16.
수 신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5부
참 조 재판장 판사 노 원 욱
제 목 진술서 송부

귀원 91고합 1126(1991. 10. 9. - 1991. 10. 23)호 피고인 강기훈의 자살방조 등 사건에 감정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과정에서 동일필적으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및 동일감정기준으로써 특징비율이 70% 이상 등의 의미에 대하여 서면으로 진술서의 제출요구가 있어 이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진술서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진 술 서

직 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성 명 김 형 영

1991. 10. 9 및 1991. 10. 23. 강기훈에 대한 재판에서 감정인으로서 증언한 후 재판장님께서 감정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및 동일 감정기준으로서의 특징비율 70% 이상 등의 의미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1991. 12.

위 진술인 김 형 영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5부 귀중

1. 국립과학연구소의 필적감정 방법

가. 필적감정의 종합적인 방법

필적감정은 먼저 대상 증거물을 검토한 후 그 증거물에 의한 특징을 관찰한 후 대상 증거물과 비교 검사합니다.

특징이라 함은 필의 구성상의 여러가지 형태, 문자간의 배자 부분, 운필 형태에 따른 필의 방향, 필의 연결 부분과 교차되는 위치, 필획간의 연결 부분에서 기필점과 종필 습성, 필압의 형태, 숙련과 미숙한 형태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현출하여 대조하게 됩니다.

특히, 필적감정에서 문자획이 많은 한자에서는 특징의 현출 상태가 잘 나타나는데 단조로운 한글에서는 여러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사성인지, 개인 고유의 특성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또 기재 장소와 자세, 건강, 심리적인 상태에 따른 변화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조로운 중에서도 개인 고유의 희소성 있는 특징 및 잠재습성을 찾아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종합적인 필적의 특징을 현출시켜서 대조하여 최종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 필적감정에 사용하는 감정 기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기기는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현미경, 고정밀 비교확대 투영기, 필흔 재생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밀 기기로서 특히 고정밀 비교확대 투영기는 동양에서 우리나라만이 구입한 정밀 기기로써 주문 생산하여 제작, 판매한 기기입니다.

이러한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 미세한 특징을 관찰하여 정밀 분석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으로 나타난 부분을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사진 촬영한 후 특징 부분을 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첨부하고 있습니다.

2. 유서와 강기훈의 자술서 필적과 동일 판정 이유

유서와 강기훈의 자술서 필적은 모두가 기재 과정상에서 변화점이 나타나 있었고, 이러한 변화점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여러 사람에게서 공통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과 기재 과정상의 변화 상태를 검토한 후 그중에서 나타나는 희소성 있는 특징만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생"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서에 두 군데 있는 "생"자 중에서 '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1획에서 제2획을 마치는 종필이 위로 올라와 있고 다음의 형태 즉(즉 'ㅐ')부분에서 제2획에서 제3획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각도가 위에서부터 차츰 좁아지는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이 자술서에서도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 있읍니다.

"형"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서의 "형" 부분과 자술서의 "경"자의 'ㅎ'부분에서 제2획에서 제3획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데 이와같은 통상적인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2획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즉 'ㅎ')로 기재되어 있는 특징이 자술서에서도 나타나 있읍니다.

"선, 준, 인, 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서에 기재된 위의 문자 등이 아래 받침인 니은(ㄴ)의 필획을 침범하여 그 아래까지 내려와 있읍니다. 이와같은 형태가 자술서의 "문, 분"자 부분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희소성 있는 특징으로써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서에서는 대략 두 종류의 형태, 즉 "에"의 연결 부분(에)에 "ㅐ" "ㅇ"이 떨어 있는 형태와 바로 이어진 형태(즉 "ㅔ") 등의 두 종류로 나타나 있읍니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형태가 자술서에서도 같은 형태로 동일한 부분이 있읍니다.

또한 "에"의 'ㅔ'의 제2획에서 3획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필획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습성의 일치점도 나타나 있읍니다.

"위"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서에서의 "위"자는 다소 기형적인 것처럼 '우'부분(즉 "ᄋᆞ")이 나타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속필로 기재하다 보면 이와같은 형태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중에서도 다소 기형적인 특성이 자술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읍니다.

"오"자 부분을 살펴보면 유서에서 정상적으로 기재하면 제1획으로 'ㅇ'을 기재한 후 'ㅗ'와 같이 제2, 3획이 연결되는데 이와같은 정상적인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획을 바로 연결시켜서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ㅇ'의 중앙을 뚫고 바로 아래고 내려오는 형태를 구성하였는데 이와같은 특징이 자술서의 "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진"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서의 "진"자에서 'ㅈ'의 기필 부분이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며 제2획의 종필 형태로 삐쳐 올라간 형태, 또 이를 구성하는 운필 방향과 각도 등에서 희소성 있는 특징이 관찰되는 바 이와같은 형태가 진술서의 "진"자에서도 미세한 기필 부분과 종필의 습성이 상호 일치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습성은 같은 내용의 'ㅈ, ㅅ'부분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ㅁ"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서에서 미음자가 제2획으로 구성하는 형태(즉 'ㄱ'), 제2획과 제3획이 연결되는 형태(즉 'ㄹ'), 제1, 2, 3획이 모두 한 획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제1획과 2획의 필획 연결 각도가 급한 형태(즉 'ㅁ')와 완만한 형태(즉 'ㅇ')의 4가지 형태가 함께 병행하는 독특한 습성이 나타나 있는데, 강기훈의 자술서에서도 위와같은 4가지의 형태가 모두 현출되는 습성이 관찰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문서에 미음자를 기재하면서 이와같이 4종류의 형태로 기재한다는 것은 필적감정인의 오랜 경력과 경험에 비추어 극히 희귀한 경우로써 유서 기재자와 진술서 기재자가 미음자를 기재하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잠재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면, 련, 력"자를 관찰해보면 유서에서 'ㅕ'의 제1획과 제2획이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필의 방향과 필획간의 간격이 차츰 좁아지는 습성이 관찰되는 바 진술서의 "연, 결, 렬, 려"에도 이와같은 잠재습성의 일치되는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읍니다.

"고"자를 관찰해보면 유서에서 "고"자의 기억 부분의 제1획의 곡선이 짧게 이루어 있고 제2, 3획을 단번에 연결시키는 운필 형태를 볼 수 있고, 특히 제1획이 제3획 부분 밑에까지 필획이 침범된 형태(즉 "ㄱ")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개인 고유의 희소성 있는 특징

인데 진술서에서도 이와같이 필획이 침범하지 아니한 속필 형태와 회소성 있는 필획의 침범된 특징을 볼 수가 있는 바 이와같은 특징은 극히 드문 특징입니다.

"해, 쟁, 생, 책"자의 'ㅐ'부분을 관찰해보면 유서에서 부분적인 변화점은 있으나 'ㅐ'의 밑에 받침이 없을 때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기재되고, 'ㅐ'자 밑에 받침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필획간의 연결되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ㅐ'부분의 필획 길이가 나란히 이룬 형태(즉 "ㅙ")와 제2획보다 제3획의 길이가 짧아진 형태(즉 "ㅞ")로 있으며, 또 필획의 각도와 방향의 변화점("ㅢ") 등 4종류의 변화상태가 관찰되고 있읍니다. 이는 기재 과정상의 변화점이 많음을 알 수가 있는데 강기훈의 자술서에도 이와같은 기재습성과 공통적인 4종류의 변화상태의 일치되는 부분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변화 중에서도 4종류 모두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써 회소성 있는 잠재습성의 일치되는 특성을 알 수 있읍니다.

"다"자 등 문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문장이 끝날 때 점을 찍는 습성을 가진 사람은 많으나 그런 중에서도 점의 필압, 방향, 위치 등의 변화점이 있고 또 공통적인 습성도 나타납니다. 위와 같은 형태가 유서의 "다."부분에서 나타나는 위치와 간격이 진술서에도 동일한 위치와 장소에 찍혀 있는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일, 결, 일, 날" 중에서 'ㅣ'부분과 받침의 'ㄹ'이 연결되는 위치와 방향을 유서 필적에서 관찰해보면 일관성 있는 연결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위와 같은 습성이 자술서의 "열, 철, 일, 일" 등에서도 동일한 습성이 함께 관찰되는 것은 볼 수가 있읍니다.

"것", "엇"자를 관찰해보면 유서에서 "것"의 기억부분이 필획의 굴곡 형태의 획을 생략시킨 듯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 제2획에서 제3획이 바로 연결된 형태서 밑에 받침까지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습성이 관찰되는 바 이와같은 기재 습성과 필획의 연결 부분이 자술서에서 "것"자에서도 공통적인 특성의 일치점을 볼 수가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부분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으며, 그 당시 현미경 등 정밀기기에 의한 관찰에서 유연한 운필 형태와 필압 형태, 사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미세한 개인의 습성 등에서도 공통적인 상사점을 다수 관찰되었으나 매월 문서분석실에서 300여건 이상을 감정 처리하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가 없고 생각나는 부분 중에서 특별히 회소성 있는 특징부분을 감정서를 참조하여 대조하여 보았읍니다.

그외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성 부분 특히 'ㄹ'을 제1획으로 구성하는 형태, 'ㅂ'을 제2획으로 구성하면서 종필 형태의 방향 등에서 다수의 유사점도 평범한 유사점이므로 참조하였고, 기재 과정상의 변화점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특징과 여러 종류로 기재하는 습성 등을 볼 때 이와같은 변화점은 기재 과정상의 변화점으로 판단되었읍니다. 그리고 'ㅎ'부분에서 제1획의 기재방향이 우하방과 좌하방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는 김기설의 필적에서도 강기훈의 필적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최근에 변화된 필법의 변화상태로 생각되었읍니다.

위와 같은 회소성 있는 개인 고유의 특징이 다수 관찰되었으므로 결국 유서와 자술서는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되었읍니다.

3.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필적감정의 의미에 대하여

필적감정에서 특징비율에 따른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읍니다.

이 특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나타나는 유사성을 말하지 않고 회소성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배자의 형태, 필세, 필압, 자음과 모음의 구성, 숙련 정도, 기필 부분과 종필 습성, 필획간의 연결되는 위치와 간격, 운필 각도 등 종합적인 특징에서 일관성 있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현출되면, 이를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여러 형태의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상태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소성 있는 특징을 현출시켜서 이를 기준하고 있읍니다. 필적감정에 있어서 회소성 있는 특징을 찾아서 특징 기준으로 볼 수 있으려면 한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며, 외형상의 구성만을 대조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읍니다.

사람이 문자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회소성 있는 특징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필적감정의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유서 필적에서 'ㅁ'미음을 4종류로 기재한 특성이라던가, 종필 부분에서 필획이 받침을 침범하는 형태 등은 특히 회소성 있는 고유의 특성인데, 이와 같은 특징은 우연히 나타날 수 없는 개인 고유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회소성 있는 특징의 총수를 100으로 기준하여 볼 때 그 특징 중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회소성 있는 특징 수의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45% 이하이면 상이한 필적, 60-70%의 범위일 때는 그 특징의 회소도에 따라 극히 회소한 특징이 있으면, 동일필적으로, 그 특징의 회소도가 낮으면 이동식별 불명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4. 감정서 작성방식에 대하여

가. 당 연구소에서는 늘어나는 감정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서식을 간소화하도록 하여 공통적이고 능률적이며 객관타당하도록 1977년도 본 진술인이 연구끝에 서식을 만들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읍니다. 처음에는 필적과 인영, 기타 작성연도, 변조, 인쇄, 타자문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사용하다가 구별해야 하는 필요를 느껴서 현재는 필적, 인영, 기타 등의 세 종류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 서식에 기재된 감정기기와 종합적인 특징은 모두 필적감정 과정상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나. 감정기기에 대하여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비교 확대현미경),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 등은 인영감정에서도 활용하지만 필적감정에서도 함께 사용하는 기기들입니다. 특히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는 독일에서 주문 생산하는 고가의 정밀기기로써, 동양에서는 일본에도 없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기기입니다. 지난번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는 인영을 감정하는 기기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서 깜짝 놀랐읍니다. 일본에는 이 기기가 없을 뿐 아니라 그가 본 사실도 없는데 오오니시는 인영감정기기라고 말을 했으니 말입니다. 오오니시 생각은 확대투영기, 비교확대투영기 등 인영을 감정하는 기기가 모두 투영기로 표시하니까 아마 이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가 인영감정 기기로 잘못 안 것입니다.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는 필적이나 인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 필기구 색소를 구분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인영만을 감정할 때 사용하는 기기는 확대투영기, 비교확대투영기도 있으며 그외에도 필적의 필흔을 재생시키는 필흔재생기와 변조, 위조문서를 식별하는 적외선 현미경, 자외선 감식기 등도 있읍니다. 이러한 정밀기기로 분석해보면 처음 외형상에서 유사성이 있던 필적이 특징을 분석해 볼수록 차이점이 있는 필적이 있는가 하면, 외형상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필적에서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도 필적감정의 오랜 경험에서 종종 볼 수가 있었읍니다. 특히 필기구가 상이하고 대조자료의 문자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1차로 외형상의 육안 관찰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다. 필적감정에 대하여는 동일 특징비율에 근거하여 이동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회소성 있는 특징의 동일 배율이 어느 정도인가는 전문감정인이 정밀 감정하면서 어느 정도인가 분석하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서에는 그 회소성 있는 특징이 어느 부분, 어느 문자 등에서 몇 퍼센트가 있고 최종적으로 그 비율이 얼마라고 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술인이 지금까지 약 15여년 동안 감정해 오면서 특징비율을 감정서에 표기하였던 사건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일본에서도 특징비율을 표기하여 확율을 표기하여 확율을 수치로 표기하는 것을 본 일이 없으며, 참고로 일본의 오오니시도 몇개소가 있다는 수자는 기재하였으나, 그 퍼센트가 몇 프로였다는 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 수첩 절취선의 불일치 감정에 대하여

수첩의 절취선에 관하여 처음 감정의뢰되었을 때 수첩이 제본되어 있는 상태가 견고하였고 수첩의 잔

류 부분이 육안에서도 일부가 관찰되었고, 현미경 관찰에서는 그 형태가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명백하게 관찰되었읍니다. 또한 수첩 전화번호란의 절취된 부분과 모눈종이란의 절취된 부분 사이에 온전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 2장 있어 경계를 짓고 있었읍니다. 현미경 관찰 결과 수첩의 전화번호란의 잔류 부분 3매는 감정서에 번호를 매긴 순서대로 돌출하여 잔류되어 있고 뜯어진 수첩 3매의 절취선과 어느 부분과도 일치되지 아니하였고, 돌출 부분 각각이 뜯어진 3매와 모두 겹쳤읍니다.

감정 과정에서 원래 4매가 절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잔류된 부분은 3매 뿐이었고 나머지 1매는 완전히 절취되었는지 보이지 않았읍니다.

결국 감정 당시 수첩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상태여서 전화번호란에서 절취된 면이 수장을 넘을 수는 없었고 현재의 잔류 부분과 절취된 3매는 일치되는 부분이 없이 각각 겹쳤으므로 제본 때 사용하는 접착제나 실, 절취된 총 매수, 상호간의 순서, 기타 제본에 대한 상황은 수첩의 절취선의 일치 여부를 감정하는 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절취된 전화번호란은 감정대상인 수첩과 절취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절취된 전화번호란은 감정의 대상인 수첩에서 떨어진 것일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6.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각종 필적감정 기기를 사용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동원, 소신껏, 정확히 감정한 후 다른 사건에서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다른 필적감정인과 공동으로 현미경 등을 통해 관찰, 토의하여 전원의 의견이 이의없이 일치되어 회보한 것임을 진술합니다.

첨 부 : 대비표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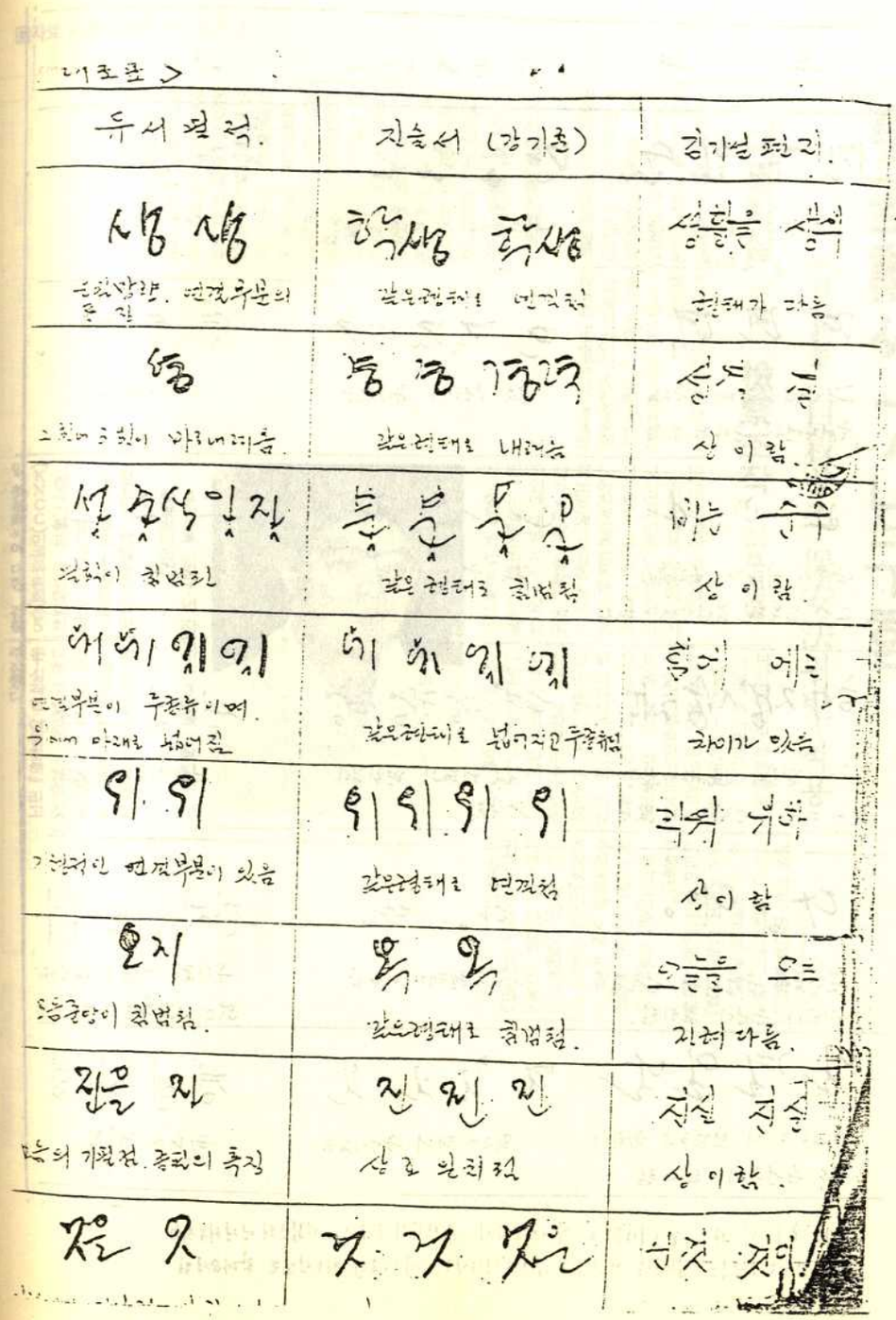

유서	진술서 (강기훈)	편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문서중에서 [illegible] 하는것은 특수한 경우임	ㅅ 종류가 같이 [illegible] 있음.	형태가 다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그 [illegible] 자음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좁아져 있음	같은 형태로 좁아졌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형태가 길고 특히 그 끝부분이 [illegible]	같은 형태가 있음.	[illegible] 없음
해쟁생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받침이 있을때와 없을 때에 따라 변화됨이 많은	같은 형태의 변화됨. 관찰됨.	[illegible]
다, 다.	다. 다.	[illegible]
문장끝에 습관적으로 점을 찍음. 위치와 습성이 일치됨.	같은 형태가 나타남.	문장끝에 가끔 있으나 대체로 없고 [illegible]
일결일날	[illegible]	[illegible]
ㅣ 와 ㄹ 의 연결하는 위치와 각도, 습성등이 일치됨.	같은형태의 습성이있음.	형태가 다름.

[illegible]

■자료 A-15 (동아, 91.12.5.)

91. 12. 5 동아

姜基勳씨 7년구형

「유서代筆」自殺방조 保安法위반 적용

"대필확실" 논고 "檢察조작" 최후진술

전민련사회부장 金基卨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총무부장 姜基勳피고인(27)에게 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이 적용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3년이 구형됐다.

4일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申相圭검사는 「姜피고인이 숨진金씨의 유서를 대필한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姜피고인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위반죄는 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약칭 혁노맹)에 가입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姜피고인에 대해 지난 7월 일단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기소한뒤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위반죄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했었다.

검찰은 1시간여에 걸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소위 민족민주혁명이론(NDR)에 심취된 좌경혁명분자로서 숨진 金씨의 유서를 대필해주어 그의 자살을 방조한 것도 피고인의 전력과 성향에 비추어보면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2시간여에 걸친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불신시대가 낳은 하나의 비극으로 궁극적으로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라며 姜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姜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등 수사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조작극」이라며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진실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오후 징역7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은 姜基勳피고인.

"결정적 代筆증거없이 7년구형은 人權침해"

KNCC 성명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는 5일 姜基勳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이 유서대필의 결정적 증거도 없이 姜씨에 대해 7년형을 구형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91. 12. 4

「유서代筆」姜基勳씨 오늘 결심公判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金基卨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총무부장 姜基勳피고인(27)에 대한 결심공판이 4일오후2시 서울형사지법합의25부(재판장 魯元旭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

姜피고인은 지난7월 자살방조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에 가입, 활동해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추가돼 그동안 10차례의 공판을 받아왔다.

■자료 A-16 (동아, 91.12.5.)

第21670號 91.12.5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東

확증없는「代筆공방」판결 관심

「유서대필」심리 마무리 의미

國科搜감정 채택여부가 초점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金基卨씨의 유서를대필한 혐의로구속기소된 전민련총무부장 姜基勳피고인(27)에 대한 1심재판의 심리절차가 4일 마무리됐다.

숨진 金씨의 유서를 둘러싼 검찰과 재야의 치열한「대필」-「자필」공방이 한 막을 내린 셈이다.

이 사건은 숨진 金씨의 유서가 대필된 것이냐, 아니냐하는 사실론과 姜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했다면 그것만으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느냐는 법률론, 또 그럴 경우 대필당시의 정황에 따른 姜피고인의 책임가감에 관한 정상론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1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모두 법률론과 정상론에 대한 언급은 전무할 정도였다. 오로지 사실론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집요한 공방을 벌여왔다.

문제는 어느 한쪽도 상대쪽을 승복시키고 나아가 재판부를 납득시킬 만큼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먼저 검찰측을 살펴보면 유죄의 직접증거로 제시한 것이라곤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가 유일하다. 그밖에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변호인측의 무죄 입증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 수많은 증인을 내세우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증인이나 증거는 없었던 것 같다.

특히 변호인단은 일본인 필적감정가 오니시 요시오(73)를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면서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으나 오니시의 증언내용이 기대에 못미치자 다소 당황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이 철저히 상반되고 그 논거도 박약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게 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나뿐인 진실」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다고 할수있지만 어쨌든 판결은 선고될것이다.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 세가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와 실형은 가지만 물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할 경우, 아예 검찰의 공소사실을 배척해 무죄를 선고할경우등이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어느정도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죄가 선고돼도 변호인단이 승복할것 같지 않고 무죄가 선고돼도 검찰이 승복할 것같지 않다.

이사건 재판을 지켜본 한 법원관계자는 『어쩌면 아 사건은 법정에서 심판하기가 부적당한 사건같다』고 말했다.

이사건으로 인해 공권력과 재야의 도덕성이 함께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은 아무래도 불행한 일이라고 할수밖에 없을것같다.

〈林彩靑〉

검찰 논고요지

金基卨의 유서가 피고인에 의해 대필됐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金馨榮의 증언 △전민련이 金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의 필적감정결과가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졌고△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의 절취선 붙임치 △金의 여자친구 洪成銀의 증언△피고인의 묵비권행사와 모순된 진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 자살방조행위는 이미 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것으로 그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고 정신적 무형적 방조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도 자살방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다. 유서대필의 일시 장소등이 특정되지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공소장기재사실과 종합해볼때 범죄사실을 특정할수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공소가 아닌것은 대법원판례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공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여러가지 필적은 과연 그것이 金基卨의 필적인지에 대해 과학적인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변호인단이 필적감정에 반대했고 일본인 오니시의 감정결과도 신빙성이 없는 의도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대학재학시 삼민투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현 노맹의 전신)에 가입, 활동해온 과격혁명분자다.

비록 피고인의 부인과 묵비권행사등으로 「분신의 배후세력」을 소상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죽음을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논죄할수밖에 없다.

변호인 변론요지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유서를 써주었다는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있지 않을뿐더러 金基卨군이 언제 분신자살한다는 생각을 하였다는것인지, 또 金군의 그같은 생각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알게되었는지에 관해 전혀 찾아볼수 없다.

결국 이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8조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기각이 되거나, 그렇지않더라도 같은법제254조의「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밖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유서대필사실의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 洪成銀이 제출한 메모, 업무일지 조작등도 근거가 없는것이다. 검찰이 증거로 내세우고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도 철저하게 검찰의 의도에따라 이뤄졌다.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필적감정결과만에 의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이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감정결과외에 다른 자료를 갖고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사건의 핵심에 관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洪成銀의 진술 하나밖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위반부분 역시 혁노맹의 중앙위원들이 의견차로 피고인을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은 점으로 볼때 무죄가 확실하다.

■자료 B-7

강기훈씨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

본회는 유서대필사건 이후 본회 진상조사활동과 일본의 필적감정을 통해 강기훈씨가 무죄임을 입증한 바 있고 지금도 그점에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현 정권의 의도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검찰은 12월 4일, 강기훈씨 결심공판에서 7년 징역에 3년의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 강기훈씨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와 증인들을 무수히 동원했지만 결정적인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과수의 필적감정인도 법정에서 감정의 과오를 드러냈고(이점은 재판부도 인정하였다), 홍성은양 역시 강기훈씨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육안으로 보아도 김기설씨 유서와 거의 같아 보이는 필적 10여종을 제출하였고, 일본의 권위 있는 감정가를 통해 국과수의 감정보다는 훨씬 과학적인 감정결과를 내놓는 등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의 성의없는 태도로 시종일관하였다. 우리는 이번 검찰 구형을 통해 현정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도덕성을 끝내 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둔다.

본회는 오늘 공판을 통해 검찰이 유서대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없이 강기훈씨에 대해 7년형을 구형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1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박 광 재

▣자료 B-8

유서대필 관련의 강기훈씨 석방요청에 관한 목회자연명 진정서

발 신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기훈씨사건 대책위원회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수 신 : 노원욱 부장판사 귀하
(강남구 서초동 서울형사지방법원)

예수그리스도의 은총이 노원욱부장판사님과 담당재판부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목회자 121인은 현재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과 관련 1심판결을 앞두고 있는 강기훈씨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진정하는 바입니다.

1. 강기훈씨는 4대째 기독교를 믿어온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닌 무학교회(담임목사 김광웅)에서도 신앙교육을 받고 줄곧 임원을 역임하고 교회학교 교사로도 봉사했던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살이 금지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가 신앙양심에 위배되는 타인의 유서을 대필했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검찰은 처음부터 강기훈씨를 다른 사건으로는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이 궁지에 몰린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유서대필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궁지에 몰린 검찰이 어떻게든 강기훈씨를 유죄판결 받게 함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사건의 세세한 전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검찰의 추가 기소내용인 국가보안법 우빈협의는 유서대필협의와 함께 마땅히 무죄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한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인류 앞에 남북이 동반자적 관계를 선언하고 UN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과 평화, 교류, 협력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현실 앞에서 북한을 더이상 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유인물과 도서를 보았다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추가기소한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은총과 성탄의 기쁨이 부장판사님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빌며 강기훈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첨부 : 진정인 121명 연서명부

---

* 김광웅(무학교회) 등 121명의 연명 생략.

▣자료 나-12-1 (공판기록 1166~????)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25 부

판 결

사 건 91고합 1126, 1328(병합)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강 기 훈(姜 基 勳, 일명 : 이현우, 김정훈, 상수, 상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1964. 3. 29 생
주 거 서울
본 적 서울

검 사 신상규, 송명석, 임 철, 안종택, 조균석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 김찬국, 장기욱, 박연철, 이석태, 한기찬, 박재승, 강철선, 조영황, 박용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3.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여 단국대학교 재학시 "국부독재 타도와 민중민주정부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88. 8. 31. 학사경고 재적을 당한 자로서 같은 해 11. 18.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 침입, 농성, 방화한 소위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1986. 8. 28.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7. 7. 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30. 그 잔형기를 경과하고 1989. 4.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이하 전노운협이라 약칭)의 연대사업실무간사로 활동하다가 같은 해 5.경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라 약칭한다)에 가입하여 "이현우"라는 가명으로 현재 총무국 부장직에 있는 자인 바,

1. 피고인과 함께 전민련에서 사회국부장으로 근무하는 공소외 김기설이 1991. 4. 26.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분위기가 고조되자 민중을 자극하여 고조된 반정부투쟁분위기를 더욱 확신시키기 위하여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위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신학대학 리포트용지

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위 김기설에게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 아름답고 맑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속에 얻은 결론이겠지요. …"라는 내용의 유서 1매와 위 김기설은 6세때 생모가 사망한 후 새로 들어 온 계모에 대한 정이 별로 없이 큰누나의 뒷바라지를 받아가면서 서울에서 나머지 학업을 계속한 터라 유서의 내용에 어머니에 대한 언급보다는 오히려 큰누나 김화자를 비롯한 3명의 누나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법한 데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아버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 날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일심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지껏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 이제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며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 전민련 선택이형,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 -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 1매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유서 내용에 의하여 위 김기설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도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과 소위 강경대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위 김기설의 분신자살의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결국 위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초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위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놓고 전신에 시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소지한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약 16.5미터 아래 지상으로 뛰어내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 중인 같은 날 08:20경 전신화상, 전두골함몰골절 및 두개강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고,[308]

2.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검정색 사인펜으로 위 김기설에게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 아름답고 맑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속에 얻은 결론이겠지요. …"라는 내용의 유서 1매와 위 김기설은 6세때 생모가 사망한 후 새로 들어 온 계모에 대한 정이 별로 없이 큰누나의 뒷바라지를 받아가면서 서울에서 나머지 학업을 계속한 터라 유서의 내용에 어머니에 대한 언급보다는 오히려 큰누나 김화자를 비롯한 3명의 누나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법한 데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아버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 날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일심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지껏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 이제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며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 전민련 선택이형,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 -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 1매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은 유서 내용에 의하여 위 김기설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도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과 소위 강경대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위 김기설의 분신자살의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결국 위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초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위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놓고 전신에 시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소지한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약 16.5미터 아래 지상으로 뛰어내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 중인 같은 날 08:20경 전신화상, 전두골함몰골절 및 두개강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고,[308]

2.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투쟁으로, 해방전후사의 역사를 반봉건투쟁과 민족해방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파쇼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층과 도시빈민·청년학생·지식인·중소상인 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하고, 폭력·비폭력·합법·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소위 "고려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반동정권퇴진,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폐지,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1987. 12. 20.경 순천교도소에 동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공소외 박대호, 노성철, 공영훈, 이재용, 이종원, 김철수 등이 대통령선거 이후의 정세와 전술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대중의 분노를 조직화하여 재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6월 이후 반동정권과 민중간의 권력투쟁이 계속이어지고 있는 현정세는 혁명적 정세으므로 우리의 전술적 구호는 임시혁명정부 수립이어야 한다"고 결론내리는 등 1988. 2. 20.경까지 석방 이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혁명적 정세, 임시혁명정부수립이라는 현정세에 대한 과학적 입장과 올바른 전술을 운동진영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기로 모의한 다음, 1988. 3. 중순경 특별사면으로 함께 석방된 위 박대호, 노성철, 이종원, 공영운, 이재용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전진"그룹명의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되 그 유인물에 정세분석과 전술 및 투쟁방침과 조직방침 등을 게제하기로 하고, 같은 해 4. 7.경 "전진"그룹명의로 "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들자" 제하의 유인물 약 200부를 제작, 서울시내 각 대학 총학생회실 및 민중의 당 인천지구당 등지에 배포하고, 같은 달 10.경 건국대학교 강의실에서 위 박대호, 노성철, 이종원, 공소외 김경숙 등이 유인물의 제작명의를 "혁명의 불꽃"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5.경 "혁명주의의 대오를 굳건히" 제하의 유인물 "혁명의 불꽃" 제2호 200부를 제작·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9.경까지 "혁명의 불꽃"그룹 명의로 "혁명적 정세, 임시혁명정부" 등의 제하의 "혁명의 불꽃" 제3호 및 제4호를 제작·배포하여 오던 중 같은 달 15.경 위 4인이 모여 사상이론지도부와 실천지도부로 나뉘는 그룹체계의 구성을 결정하고 사상이론지도부는 박대호가 맡고 실천지도부는 노성철과 김경숙이 맡아 문건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그룹주변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이종원은 양자를 겸하여 조종하는 업무를 담당키로 논의한 다음 조직강령을 마련키로 하고 같은 달 29.경 서강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박대호가 작성해온 강령초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혁명의 불꽃"그룹의 조직강령으로서,

(최소강령)

0. 파쇼공화국의 타도와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의 건설

- 현 파쇼공화국은 미·일제국주의 자본의 강도적 약탈과 소수독점재벌의 무한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국주의 무리 등과 독점 자본자놈들의 민중에 대한 파쇼적인 억압과 착취의 도구일 뿐이다.
- 파쇼공화국은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제반의 파쇼적 악법을 통하여, 주한미국과 정규군과 특수군인 공수부대특전단을 통하여, 경찰과 전경, 백골단을 통하여,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등의 정보통치기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등 수탈적인 조세제도와 국채를 통하여, 관료적이고 부패한 행정기구를 통하여, 파쇼공화국인 법률의 입법집행기관인 국회, 사법재판소를 통하여, 민중의 억압과 수탈의 기구로서 군림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파쇼세력과 민중간의 비화해성의 산물일 따름인 파쇼공화국의 성격상 파쇼공화국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선거나 의회주의적 방식, 점진적 교체의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직 민중의 무장봉기를 통하여서만이 파쇼공화국의 타도는 가능하다.
-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농민·청년·지식인·도시소자산가·중소자본가 등 모든 민중은 굳게 하나로 단결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기구일 따름인 파쇼공화국을 무장봉기를 통하여 타도하고 즉각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임시혁명정부는 민중의 총의에 기초하여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헌법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다.
-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은 다음의 원리에 따라 구성될 것이다.
  - 민중의 실질적인 권력기관으로서 각 지역, 지방, 단위로 각급의 민중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민중위원회대표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민중회의에 모든 권력이 귀속된다.
  - 파쇼공화국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군대와 경찰, 전경, 백골단, 제반의 특수부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축출하며, 혁명무력으로서의 혁명군과 민중개병제에 입각한 자위적 민족군대와 민중의 자정대를 창설한다.

0. 제국주의 자본과 예속독점 재벌소유자본의 몰수와 국유화를 통한 민중적 민족자립경제를 수립바여 경제의 발전을 이룬다.

- 제국주의 자본과 독점재벌소유의 자본, 주요기간산업은 민중의 권력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에 귀속 국유화한다.

0. 연방제에 의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

- 우리의 혁명은 제국주의와 파쇼도당에 의해 저질러진 조국의 분단이라는 암흑한 조건하에서 남한의 민중이 남한에서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연방제에 의한 통

308) 증자료집 II책 37쪽의 자살방조 공소장 참조.

일적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 민중의 무장봉기에 의한 파쇼공화국의 타도와 임시혁명정부에 의해 건설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은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당장 다음의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
  - 남북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간의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 민중차원의 남북한 모든 교류를 보장한다.
  - 연방제통일을 위한 제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연방제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조국통일을 달성한다.

Q.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혁명적이고 자주독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할 것.
- 우리의 민중혁명은 민족해방운동과 혁명적 당, 정부, 국가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반제국주의, 반파쇼 민중해방투쟁의 일환이다.
- 우리의 혁명은 우리 민중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국제적인 지원이 우리 혁명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한다.
- 우리민족 자신의 힘에 의한 우리의 혁명에 있어 북의 민중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형제적 지원과 연대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관건이다. 그와 함께 우리 민중자신의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제국주의와 파쇼도당에 대한 투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북의 민중의 보다 고도의 사회로의 발전과 건설의 과업에 무조건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의 민중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형제적 지원과 연대를 우리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올바르게 결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강령해설)

Q. 최대강령문제
- 공산주의 사회는 얼마나 위대하고 정의롭게 풍족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인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사라진 사회, 계급도 사라지고 국경도 사라지고 전쟁도 공포도 반목도 시기도 질시도 사라진 사회, 사람들의 자주성이 극도로 무한대로 고양되고 자율적인 규율과 높은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회, 고도의 물질문명이 고도의 자각된 존재인 인간과 조화롭게 합치된 사회, 도대체 왜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고 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사상-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상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
- 우리들 전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며 따라서 공산주의자이다. 그런데 대중앞에서 법정에서 유인물에서 우리가 빨갱이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대중의 의식수준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공공연하게 가장 대대적으로 자신의 사상의 본질,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선전선동하여야 한다.
-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은 피티와 피억압 민중의 해방의 사상이다. 특히 계급착취의 사회에서 자신의 몸뚱이 이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피티계급의 사상이다. 피티의 헤게모니는 여타의 계급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상적 능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했을 때만이 피티계급이 민주주의 혁명에 주저앉지 않고 더욱 전진,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 최대강령의 내용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회주의 혁명를 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인데 이러한 혁명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당연이 자본주의다. 계급의식적 전위의 목표는 피티의 계급적운동을 의식적으로 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는 것이다는 점에 있다. 최소강령은 피티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피티와 비지간의 순수하고 전면적인 계급투쟁을 위해 그 이전의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남한사회에서는 이미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전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발전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또한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경제정책이 깊숙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그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히고 파행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하고 있으며, 비지와 피티간의 순수한 계급분해와 전면적인 계급대립을 저해하고 있다.
- 이러한 모든 장애의 가장 집중된 표현이자 이러한 모든 장애의 가장 강력한 보루는 파쇼공화국이다. 파쇼공화국은 피티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투쟁하는데 있어 가장 적대적이며 따라서 가장 선결적으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파쇼공화국의 타도와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의 수립을 가장 긴급한 당면의 정치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민족민주혁명이라고 이름한다.
- 따라서 피티전위는 당면의 가장 긴급한 정치적 과제로 선정한 민족민주혁명의 과제를 진지하게 피티의 헤게모니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무조건 제기된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피티와 최소강령에 농축되어야 할 내용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티계급에게 최대강령에 입각한 선전선동이 민주주의혁명의 과정에서도 한시도 쉬지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확정·채택함으로써 폭력적 민중봉기에 의한 민족민주혁명(NDR)으로 사회주의의 체제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하여 북한과 연합한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혁명의 불꽃"그룹을 결성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바,

Q. 1988. 3.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민중의 당 중앙당사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마산교도소 복역중 알게 된 이종원과 피고인, 그 당시 활동하던 민중의 당 백기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선거전술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이종원으로부터

- 현파쇼권력은 군대·경찰 등 광범한 관료기구를 통원하여 민중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나 민중의 혁명적 진출로 국가권력이 위태로워질 때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파쇼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다.
- 현 파쇼권력은 조직화된 폭력으로서 선거에 의해서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선거를 통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연립정부의 주장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 현재의 국회도 파쇼권력기구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이에 반론을 제기함이 없이 정세성격과 전술론에 대한 토론을 다시 벌리기로 합의하고

Q. 같은 해 6월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다방 등지에서 위 이종원으로 부터 "혁명의 불꽃"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공받고 그로부터 현정세를 혁명적 정세로 보는 근거 내지 혁명적 정세의 분석틀로서
- 1986년 이후의 3저호황에도 불구, 경제적 성과가 대자본가와 권력층에 집중되어 민중의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었다.
- 개헌투쟁, 권인숙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민중의 파쇼권력에 대한 증오감이 6월 민중항쟁으로 달아오른 이후 대통령선거투쟁 등 반독재투쟁열기가 공공연히 진행되어 왔다.
-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권력을 6.29선언이라는 개량주의적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 결국 이러한 세가지 정세분석의 틀로써 현정세를 분석하면 혁명적 정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는 민중의 국가권력 장악에 대한 노동자의 분명한 태도표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시혁명정부"라는 슬로건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위 문건을 읽어본 후 다시 토론하기로 약속한 다음

Q. 같은 해 7월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상호불상다방에서 위 이종원과 만나 토론함에 있어 그가
- "혁명의 불꽃" 제1호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정세

분석의 틀을 분석하고
- "혁명의 불꽃" 제2호를 중심으로 선봉그룹의 소수파가 조직적 분리를 선언한 것은 기회주의·개량주의에 대한 결별, 혁명주의를 주장한 것이며, 전국적 정치신문은 노동자당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하며, "혁명의 불꽃"은 과거 선봉그룹이 벗어나지 못한 종파적 관점을 벗어났다는 설명을 하고
- "혁명의 불꽃" 제3호를 중심으로 올림픽은 그 본질이 노동자계급의 착취에 불과함으로 혁명적 피티는 "반동올림픽 결사반대", "임시혁명정부하의 남북공동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 현정세를 그와 같이 분석하는 정세틀에 동의한다.
- 국가권력의 장악과 관련하여 계급독재을 위한 임시혁명정부라는 슬로건에 동의한다.

는 등 전체적으로 대체로 동의하자, 위 이종원은
- 현 파쇼권력은 혁명적 방식인 무장봉기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다.
- 이 지긋지긋한 착취제도인 자본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계급의식을 불어넣어야 한다.

는 등의 보충설명을 한 다음 향후 정세관과 전술에 관한 토론을 계속하되 현장활동을 위한 실무지식을 갖추도록 현장준비팀을 소개 받으라는 제의와 함께 "혁명의 불꽃" 제4호, 제5호를 건네주어 피고인은 그 제의를 수락 2종의 유인물을 교부받고

0. 같은 해 7월경부터 9월경까지 경희대학교 잔디밭 등지에서 위 이종원으로부터 소개받아 접선한 "혁명의 불꽃"그룹 지도선인 가명 민호(본명, 곽선탁)와 조직원 가명 동현(본명, 김종구) 및 가명 효정 등과 함께 위 민호, 효정 등으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와 혁명", "사회민주주의자의 두가지 전술", "혁명의 불꽃" 제5호 내지 제7호 등을 교재로 하여 학습함에 있어
-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을 위한 전위당 건설, 전국적 정치신문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학습하고
- "사회민주주의자의 두가지 전술"에서는 노동자계급은 경제주의, 경제투쟁 외에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혁명적 정세하에서는 무장에 의한 공격적 조직으로 맞출 것을 학습하고
- "국가와 혁며에서는 국가의 본질과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 과정 및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학습하고
- "혁명의 불꽃" 제5호에서는 위에서 실시한 바의 "혁명의 불꽃"그룹 강령에 관하여 학습하고
- "혁명의 불꽃" 제6호에서는 5공정권은 광주학살 정권이며 혁명적 민중열기를 한데 모아 민중봉기로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정세관과 전술에 관하여 학습하고
- 그시경 위 학습지도팀과 함께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위 가명 효경의 지시로 안양지역 공장규모·소재지 등 실태조사를 하고

0. 1989. 1. 초순경 서울 신촌부근 상호불상카페 등지에서 위 이종원의 소개로 "혁명의 불꽃" 지도선인 노성철을 접선, 그와 함께 "혁명의 불꽃"그룹 기관지 "혁명의 불꽃" 제7호 내지 제9호를 교재로 학습·토론하면서 그 내용에 동의하자 그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해 2월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동인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 약력소개

  강기훈, 1964. 3. 29.생

  보통 중간정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부친은 현직 교사. 1982년도 단국대학교 입학, 학교에서는 주로 공개조직에서 활동(민추위, 삼민투)
- 구속·투옥 경력

  1985년도 구속, 1987년 석방되어 계속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중의 당에서 활동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 공개조직에서 활동하고 싶음이라는 요지의 "혁명의 불꽃"그룹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제출, "혁명의 불꽃"그룹 강령에 동의하고, 동인으로부터 전노운협 연대사업부 실무간사로 가입하여 활동할 임무를 부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나. 1988. 6.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소재 상호불상다방에서 위 이종원으로부터 "혁명의 불꽃" 창간호(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들자)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읽어본 바,
- 이제 우리는 다시 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간악한 미제와 파쇼도당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유일하게 객관적 진리인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사상의 원칙을 옹호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민중의 거대한 힘을 이끌어내어 미제와 파쇼도당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는가.
- 우리는 선봉과는 달리 현시기는 여전히 알(R, "혁명"을 지칭)정세이며, 현실의 정치상황의 핵심내용은 권력의 문제로 임알정("임시혁명정부"를 지칭)의 전술적 슬로건을 높이 치켜들고 알로 진군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 시기에 민중의 알적 진출에 따라 알투쟁은 본령의 비합영역뿐 아니라 힘으로 전취해낸 공간에서 알적아지프로("혁명적 선전선동"을 지칭)의 혁명에의 호소가 가능케되고 이에 합당한 ㅇ,ㄹ,ㄱ(Org:조직, "제반조직"을 지칭)를 합·비합 공간내에서 창출할 것을 피티의 전위에서 요구하게 된다.

라는 등 폭력적 계급혁명에 의한 임시혁명정부수립으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선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1991. 5. 16. 13:30경 주거지에서 압수될 때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제출 기재와 같이 "혁명의 불꽃"그룹 기관지 각호 및 "민족민주학생투쟁연맹" 제작의 각 유인물을 소지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각 표현물을 소지하고,

다. 1989. 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노성철에게 전민련 내부의 정당건설에 대한 동향을 보고함에 있어
- 전민련 내부에 정당건설에 대한 장기표의 지론은 합법정당건설이고 김근태의 입장은 시기상조론이다.

라는 등 보고하고

0. 같은 해 8월말경 같은 곳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노성철로부터
- "혁명의 불꽃"그룹의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이하 혁노맹이라 약칭한다)이 결성되었다.
- 강령은 "혁명의 불꽃"그룹의 강령과 동일하고 규약이 새로 제정되었다.

라는 등 혁노맹의 재건경위를 설명들은 다음 새로운 지도선을 소개받고

0. 같은 해 9월 초순경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노성철이 소개한 혁노맹의 지도선 가명 김명훈을 접선, 그와 정세관 전술에 관하여 토론한 다음 같은 달 초·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그와 재차 접선, 그로부터
- 노성철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계속해서 우리와 활동하겠다니 우선 혁노맹 재건대회 의사록과 혁노맹의 창건대회 선언문(초안), 그리고 보고서를 읽어보기 바란다.

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피고인을 김정훈, 동 지도선을 김명훈이라는 가명으로 지칭하되 "다음 회합에 필요한 사전준비"로서
- (1)전노운협의 체계구성,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보고내용, 그리고 정훈동지가 이전까지 해왔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
- (2) 전민련의 정당으로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관점(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3) 지난번 회합에서 해결하지 못한 논점을 보다 구체화, 풍부화된 형태로 정식화할 것(가급적이

면 REPO로 올릴 것, 본인도 정식화 해서 작성하겠음)
- (4) 가능하다면 최근의 DJP당직개편과 POL적 의미에 대한 토론준비

등의 임무에 관한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 및 혁노맹 창건대회 의사록과 창건대회 선언문(초안)을 교부받아 같은 해 10월경까지 활동하는 등 혁노맹의 결정 이후 계속 동 조직의 중앙위원 등 상부조직선과 회합하며 연계활동을 하면서 그 창건대회 선언문을 읽어본 바,

그 내용이

- 우리들은 현재 노동자계급과 민주의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전위당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전위조직인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 창건을 엄숙히 선포한다. 그리고 이는 전국적 정치신문으로써의 (불꽃)의 창간 또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혁명의 불꽃"그룹으로서의, 나아가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으로서의 과거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획을 긋고, 진정으로 명실상부하게 계급투쟁에 대한 전위적 지도와 남한 노동자계급혁명의 참모부가 될 전위당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전위조직으로서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의 창건과 전국적인 정치신문 "불꽃"의 발간에 하나의 달결된 대오로 굳게 뭉쳐 서고자 한다.
- 남한혁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현재 엄중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와 민중의 대대적이고도 폭풍우와 같이 특징지워지는 대중적 계급투쟁과, 그에 맞물려 반동파쇼도당의 노골적이고도 잔혹하고도 철저한, 대규모적인 탄압이 맞물려 일대격전이 예상되는 시기에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철저하고도 원칙에 입각한, 그리고 전위적 조직대오에 따른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의 임무이다. 또한 우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계급의 전위당 건설의 임무를 동시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이 양자는 분리된 과정인가? 아니다! 전국적 정치신문과 직업적 혁명가의 전국전 전위조직! 이것이 모든 과제를 통일적으로 추구하는 유일한 무기이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혁노맹", "불꽃"의 대오에 시급히 합류하라!
- 동지 여러분! 임박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전국적 전위당의 건설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투쟁의 환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에 시급히 동참하라!
- "혁노맹", "불꽃" 만세!
-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 자본가계급 타도하고 노동계급 해방 쟁취하자!
- 군사파쇼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하자! 혁명만세!

("혁노맹" 창건대회)

등의 내용임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이 압수될 때까지 소지·탐독한 것을 비롯, 별지(2) 기재와 같이 혁노맹 기관지 "불꽃" 창간호 독립보충판 및 "들불"그룹의 조직문건 "들불" 창간호를 위와 같이 압수될 때까지 소지·탐독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다.[309]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중 판시 제1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중 ①피고인은 1991. 4. 27.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서울을 떠난 사실이 없다는 진술 ②피고인은 1991. 5. 10. 15:00경 봉쥬르카페에서 홍성은과 만났을 때 동인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하고 쓸데없는 사람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등 조사시 진술내용 등을 지도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③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시켜 홍성은의 어머니에게 "홍양이 잘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곤란해 진다"며 변호사 선임을 독촉하였다는 진술 ④피고인은 홍성은이 검찰의 조서를 받기 시작한 1991. 5. 13.부터 같은 해 6. 24. 체포되기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민련 사무실과 강경대 대책위 사무실 및 명동성당 등에 머물면서 검찰조사에 불응하였다는 진술 ⑤피고인은 당초에는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를 본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김형민, 정윤서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도 업무일지를 본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위 업무일지를 5. 10에 본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진술 ⑥김기설을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전민련 총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1. 1.초부터 동인이 전민련 상근자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인 홍성은도 자신이 소개해 주었다는 진술 등

1. 증인 홍성은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①증인이 1991. 5. 7. 23: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무조건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진술 ②증인이 같은 해 5. 12. 21:30경 서울 종로 5가 소재 전민련 사무실 부근 도위치호프집에서 피고인, 김진수, 이영미 등을 만났는데 당시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분신 때나 최덕수 분신사건 장례를 직·간접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김기설 분신사건 때 최대의 실수는 성은이를 둥장시킨 일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말을 받아 "이마 엎지러진 물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③증인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김기설이 고등학교 중퇴자인데 김기설이 증인에게 준 메모지 내용은 세련되고 문학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김기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메모지를 가지고 와 자기가 쓴 것인 양 증인에게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졌다는 진술 ④증인이 5. 7. 전민련 선전부장 원순용에게 준 김기설의 수첩과 같은 달 26. 검사가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시한 수첩과는 수첩의 형상 및 수첩안의 일정표란 등에 기재된 글씨의 색깔이나 필기구 등이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증인 김정열, 같은 장병호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사망한 김기설의 가족관계에 관한 진술과 유서의 필적이 평소의 필적과 다르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이재구가 이 법정에서 한 증인은 김기설의 필적을 잘 알고 있는데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김형영이 이 법정에서 한 각 감정결과의 도출과정, 감정방법, 사용된 기구 등에 대한 각 진술

1. 이 법원의 홍성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이 1991. 5. 10. 15:30경 봉쥬르카페에서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수첩을 꺼내보라고 하여 꺼냈더니 피고인의 수첩 뒷부분의 여백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내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91. 7. 5.자) 중 ①업무일지 첫장의 4분의 3가량이 찢어져 없어지고 둘째, 세째장은 한번 또는 두번에 속필로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임무영이 썼다는 파란색볼펜 글씨는 처음보았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②김기설의 수첩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업무일지와 김기설의 수첩 및 유서의 글씨는 김기설의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④유서의 글씨가 피고인의 글씨와 일부 같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홍성은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검찰의 1차 조사시 자신이 김기설의 분신 전날 동인으로부터 수첩을 받은 사실을 숨겼던 사실과 자신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밝히면서 밝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진술기재

1. 국립과학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작성한 ① 1991. 7. 4자 감정서 중 피고인이 작성한 1985. 11. 22.자 진술서, 1986. 5. 30.자 항소이유서, 피고인의 대학노트, 피고인의 90년도 전민련수첩, 전민련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에 나타난 필적과 김기설 명의의 유서2매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②같은 해 5. 15.자 감정서 중 위 유서와 업무일지상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③같은 달 25.자 감정서 중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의 남아 있는 절취선과 그 수첩에 끼워져 있는 전화번호 기입부분 3매의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고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인정되는 주민등록분실신고서, 이력서,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메모 2매, 김기설의 친구 안혜정이 받았다는 편지봉투 및 내용 3매와 카드봉투 및 내용 2매의 필적과 유서 및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 ④같은 달 29.자 감정서 중 유서 2매

309) 총자료집 II책 37쪽의 국보법 위반 공소장 참조.

와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과 그 안에 끼워진 전화번호기입란 3매, 홍성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모 1매, 피고인 노트 1권, 위 진술서의 필적이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현장검증조서 및 의사 김승호 작성의 사체검안서 중 판시 김기설의 자살경위 및 사인에 대한 각 기재

1. 압수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들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박대호, 노성철, 이종원, 김경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지재

1. 박대호, 노성철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의 각 현존 및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개정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자격정지병과

위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들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이 위 김기설 명의의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준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김기설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공소기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첫째 형법 제252조의 제2항의 자살방조죄에 있어서 사람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자살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자살의 결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에는 적극적 수단에 의한 것, 소극적 수단에 의한 것, 유형적, 무형적 방법에 의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자살을 결심한 자에 주었다면 정신적, 무형적 방법에 의하여 자살하려는 자의 자살수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기각결정의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면 부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일시는 이중기소 또는 시효에 저촉되지 아니할 정도, 그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 등으로로 기재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를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일자불상경 서울 이후 불상지에서"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기각판결의 주장도 이유없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변호인들 제출의 증거에 대한 판단)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에 신뢰성

변호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①검찰의 의도에 따라 감정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②감정서에 필적감정의 모든 과정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동일필적 비율에 대한 표시가 없으며 감정방법이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필적감정기구가 아닌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도 이 사건 필적감정에 사용한 것처럼 나열되어 있으며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감정시 문자의 특정부분만 보려 하였지 전체적인 필세나 끝맺음, 쓰는 방향 등에 대하여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③감정희보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④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책표지의 글씨와 주민등록분실신고서에 대한 감정소견이 변경된 점, ⑤유서와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도 모두 동일필적인 것처럼 감정한 점, ⑥수첩의 절취선의 일치여부를 감정함에 있어 완전한 수첩의 형태, 제본의 방법, 접착제의 종류와 점도, 떨어져나간 면수와 잔류부분의 면수, 떨어져 나간 순서도 모른 채 감정한 점, ⑦유서와 피고인의 진술서, 항소이유서 및 옥중편지에 나타난 "ㅎ"의 필법과 글씨의 방향, 글자의 형태과 크기가 서로 다른데 이를 간과한 점, ⑧사설감정인 이인환의 감정결과가 위 감정서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나나난 점에 비추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김형영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①이 사건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압력을 받아 그 의도대로 감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형영은 이 법정에서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뢰자인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를 구한 사실은 있으나 감정을 함에 있어 검찰이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음이 없이 소신껏 감정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이 사건 필적감정의 책임감정인인 김형영은 현재 국립과학연구소의 문서분석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연수원 등에서 문서감정에 대한 강의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1977. 3.경 위 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요원으로 공채된 이래 1980년도의 2년 3개월을 재외하고는 계속해서 문서감정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동안 그가 처리한 문서감정 건수는 수만건에 달하였으나 인영감정 단 한건에 관하여 시비가 있었던 것을 재외하고는 그 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것이 한건도 없었으며 동인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한글필적감정방법과 같은 기준을 정리하고 동인이 만든 감정방법과 기준이 현재 국내에서 한국필적감정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인을 한글필적감정의 최고권위자라 볼 수 있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동인은 이 사건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 필의 구성, 배자의 형태, 필세, 필압, 자음과 모음의 구성, 속필 속도, 기필부분과 종필부분의 습성, 필획간에 연결되는 위치와 간격, 운필각도 등 종합적인 특징에서 일관성 있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현출되면 이를 특징으로 보고 여러 형태의 변화상태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 희소성 있는 특징을 현출시켜 이 특징을 희소성 있는 개인의 고유특징으로 보아 그 특징의 수를 100으로 기준하여 대조문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 수의 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양문서의 필적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45% 이하이면 상이한 필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때에 사용한 감정기는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 외에 최첨단 정밀기구인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자신의 감정결과를 다른 세 사람의 감정인과 공동으로 현미경 등을 통하여 관찰 토의한 끝에 감정 4인의 의견이 일치되어 감정결과를 회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적감정이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감정방법 등을 부동문자로 처리한 것은 늘어나는 감정의뢰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필적감정에 있어 그

기재방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감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회소성 있는 특징의 동일비율을 감정서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일반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종전 관례에 비추어 일응 수긍이 가고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그 과정이 대부분 밝혀진 점, ⑥감정회보서에 첨부된 사진은 의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감정서에 첨부한 것이지 그 부분만을 특히 주목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⑦감정회보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주장도 그것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괄 처리되면서 의뢰공문의 번호 기재가 누락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⑧감정소견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그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대조자료 부족으로 일단 판정을 유보하였다가 추가자료의 제출로 대조자료가 충분해져서 김기설의 필적의 특징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 판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⑨업무일지의 감정에 있어서도 의뢰자의 검찰로부터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서와 동일한 필적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감정대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일필적이 있느냐에만 주안을 두고 감정한 결과 동일한 필적이 발견되어 유서와 업무일지의 필체가 동일하다고 감정한 것이지 업무일지상의 모든 필체가 유서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뜻으로 감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서준식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업무일지는 "거의" 전적으로 김기설이 담당했다는 것이고 위 감정서에 유서와 동일필적이라고 지적된 부분 중 변호인들이 이동진이나 임무영이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이 수긍이 가는 점, ⑩이 사건수첩의 절취선 부분을 감정함에 있어서도 뒤어서 보는 바와 같이 떨어져 나간 각 장마다 잔류부분과 대조한 결과 모두 겹쳐진 부분이 있어서 불일치하다고 감정한 것으로 그 수첩은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11 유서상에 나타난 'ㅎ'의 필법은 김기설이나 피고인의 종전 필적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던 것으로 그것은 최근에 변형된 필적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12 사설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다르다고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에 실시한 바와 같은 김형영의 경력, 감정과정, 사용된 기구와 김형영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그 감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김기설의 수첩조작의 문제

이 사건 수첩이 떨어져 나간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장(현재 이 부분도 떨어져 있으나 당초 이 부분이 붙어 있었다는 점은 재판부도 확인한 바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해서도 명백하다)의 앞면은 전화번호부기재란이고 뒷면은 메모기재란 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앞에 4매가 떨어져 나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첩에 잔류된 면수는 3매로 나타나 있고 이 잔류부분은 떨어진 채로 남아있는 전화번호부 기재란 3매와 절취선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중복된다는 것이고 증인 김형영은 이 법정에서 위 떨어진 3매의 순서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화번호부의 성명기재순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렇다면 절취선의 중복은 위 3매 모두에 있는 것으로 감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떨어져 나간 4매 중 맨 앞장은 현재 없으므로 위 잔류분 3매 중 맨 앞장에 해당하는 잔류분을 확정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 3매의 절취선을 대조하여 할 것인데, 위 수첩의 성상과 위 감정서에서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서 표시된 잔류부분(1),(2),(3) (수사기록 590면)[310]을 살펴보면 잔류부분 (1)은 맨 앞장의 잔류분으로 보이나, 잔류분(3)은 제본이나 접착제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앞쪽으로 뜯어져나간 흔적이 보이는 점(수사기록 562면)[311]에 비추어 맨 앞장의 잔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잔류부분(1)을 제외하더라도 위 수첩의 절취선은 중복된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310) 총자료집 I 책 337쪽 참조.
311) 총자료집 I 책 275쪽 참조.

또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필흔재생기에 의하며 관찰한 결과 연필로 기재된 부분의 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증인 홍성은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91. 5. 7. 22:00경 서울 신촌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김기설이 분신자살 의사를 밝힌 후 연락해줄 사람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녹색 하이테크펜과 샤프로 표시를 해 주고 이를 자기에게 주었다가 수첩이 아직 쓸만하면서 위 전민련 수첩 전부를 증인에게 주길래 집으로 돌아와 자세히 살펴보니 위 수첩의 일정표란을 검은색 볼펜 또는 수성펜으로 기재되었고 연필이나 샤프로 기재되었거나 다른색 사인펜 또는 형광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으며, 특히 5. 7.자 "가든호텔"이라는 약속장소는 검정색 수성펜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수첩의 찢어짖 부분은 다소 울퉁불퉁하게 찢어졌고 회원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란은 바뀐 번호 등이 검정색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1991. 5. 26. 이 사건 수첩을 검사가 제시하여 보니 수첩이 흩어져 있고, 일정표란에 검은색 또는 수성펜 외에도 연필, 청색 필기구, 녹색 하이테크펜, 분홍색 형광펜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며, 회원단체 및 전화번호란이 검정색이 아닌 청색으로 쓰여져 있고, 가든호텔이라는 5. 7.자 약속이 녹색 하이테크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화번호기재란이 한장 없어졌고, 모눈종이 부분이 석장 없어졌으며 전화번호 기재란이 검정색이 아닌 청색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절취선이 기억보다 매끄러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영미로부터 김기설이 남긴 전민련 수첩의 전호번호란이 검은색 필기구로 기재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수첩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홍성은의 검찰 제2회 진술의 신빙성

홍성은은 5. 13. 검찰에 출두한 후 다음날 처음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진술조서를 받을 때 김기설이 분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5. 7. 만났을 때 알아차렸고 그날 김기설로부터 동인이 사용하던 전민련 수첩을 받았음에도 검사로부터 김기설이 편지나 쪽지를 준 일이 있는냐는 물음에 수첩 이야기는 숨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필적으로 감정된 메모지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김기설이 그 메모지를 직접 쓰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자기가 낙서한 것인데 잘된 것 같다, 읽어 보라면서 주기에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메모지 글씨가 마치 김기설의 글씨인양 제출하고, 기설의 필적이 나오는 다른 자료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수첩을 제시하면서 그 수첩에 김기설 전화번호 743-9127, 9128 에프 742-8289라고 기재한 것이 김기설의 글씨라고 답변하였다.

그후 검찰에서 홍양이 김기설로부터 분신 전날 수첩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고 이를 추궁하자 같은 달 16. 2차로 진술서를 쓰고 다음난 질술조서를 받으면서 같은 달 7. 김기설이 분신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날 수첩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1차 진술시 수첩을 받은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전에 전민련 관계자와 김진수 등이 수첩 이야기를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도 같은 달 10. 만났을 때 검찰 조사시 쓸데없는 사람을 끌어 들이거나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수첩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고 또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이 죽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은 뜻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피고인이 써준 사실을 밝히면 피고인을 위태롭게 할까봐 걱정되었고 피고인이나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애인인 이영미와의 정을 생각하여 말할 수가 없어서 죽은 김기설이 써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인데 이제 검찰에서 제시하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 더 이상 감추어도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5. 10. 오후 3시 반경 봉쥬르카페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수첩에 써 주었다고 밝히고 그것을 써줄 때 불쾌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어서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 신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이 2차 진술 등에 관하여 변호인들은 당시 홍성은이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끝에 김기설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의혹과 혼동속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그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1차 진술이 사실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홍성은 스스로도

그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누가 썼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 5. 10. 피고인이 써주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러면 2차 진술서와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시 피고인이 써주었다고 한 것은 거짓진술한 것이냐는 검사의 추궁에 대하여 머뭇거리며 그 수첩을 계속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모르게 써주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등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홍성은이 2차 진술시 1차로 조사받을 때 거짓진술을 하였던 경위, 김기설의 이름 등을 써주었다는 날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일주일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다만 그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있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그 애인인 이영미에 대한 의리상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번복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결국 검찰 2회의 진술이나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4. 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방명록외 13건의 서류 등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이 사건 유서는 김기설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여러 건의 서류와 문건을 제시하고 그 서류와 문건에 나타난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제시한 서류와 문건들 중 ①성남 터사랑학우회(증제1호)의 경우 서명부분이 찢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명록의 성상, 그것을 전달받은 전민련 관계자, 그 방명록을 찢은 시기 등에 관하여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②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증제3호)의 경우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부분이 찢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필기구의 색깔에 관하여 곽대순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엇갈리고, ③대유학보원고(증제4-1)의 경우 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④승의여전 메모(증제5호)의 경우 위 메모는 1991. 5. 20. 저녁에 전민련측에 제출되었다가 그 이튿날 이보령 등이 다시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보령은 검찰조사시 위 메모가 전민련측에 하루밤 있었던 일을 숨기려 하였고, ⑤노트(증제8호)가 원본인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고 ⑥수원민주화청년연합 방명록(증제10호)의 경우 서명란의 지질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⑦수첩사본(증제20-1, 2호)도 5. 8. 복사하였다고 하면서도 10. 20.경 이르러 뒤늦게 제출되었고, ⑧각서(증제23-1호)의 경우 문서의 성질상 인장이나 무인이 있을 법한데 그러한 것이 없고 ⑨위 각종 서류와 문건들의 작성자와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와 복사시기 등에 관하여 증언한 증인 서준식 등의 각 증언은 그 증인들이 모두 전민련 관계자이거나 전민련 또는 피고인과 친근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 증언들을 선뜻 믿기도 어렵고, ⑩한편 위 각종 문건이나 서류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명동성당에 은신하고 있을 때에 전민련측에서 수집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문건 등에 나타난 필적들이 과연 사망한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쉽게 단정하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일본국인 오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의 일부 감정결과를 제외하고는 위 필적들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과의 동일성을 뒷받침할 만한 필적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위 필적들에 관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측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였는 바, 변호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오오니시 요시오 작성의 감정서에 대한 판단

오오니시 요시오는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이고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감정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상반된 감정을 하였으나 위 오오니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①오오니시는 일본인으로 한글을 전혀 모르는 관계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데려다준 신원불명의 재일교포라고 생각되는 4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불러주는 데로 동일한 모음자음의 숫자를 세어 감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재일교포라는 사람들이 한글감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특히 공정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의심스럽고(위 오오니시는 이 법정에서 동인작성의 감정서에 기재된 자모 및 동일 필법에 대한 숫자의 착오를 시인하였는 바, 이는 자신의 계산착오에 기인한 결과도 있지만 위 4인이 잘못 세어준 자모를 기초로 하여 감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동인은 김기설의 필적인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수첩, 승의여전 메모, 방명록 노트 등에 관하여 그것들이 김기설의 필적임에 다툼이 없다는 전제하에 감정을 한 사실 ③이 사건 감정의 중심대상인 유서 등에 관하여 사본을 감정자료로 삼아 감정함으로써 필기구의 종류나 복사기의 성능, 상태에 따른 필적의 미세한 특징 및 필압 등을 검토한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기구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고 필적의 방향을 오인한 사실 ④동인은 한글에 대한 필적감정의 경험이 이건 이전에 전혀 없어 동인이 한글자모 총 24자 중 비교대상으로 삼은 "ㄹ", "ㅁ", "ㅂ", "ㅎ", "ㅏ", "ㅑ" 각각의 여러 자모형태 중 어떠한 형태가 희소성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징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감정한 사실 ⑤한글이 자모가 정서체와 속필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감정한 사실 ⑥동인은 사설감정인으로서 이 사건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 자신이 고안한 합성수지판으로 만든 사제기구를 사용하여 감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오오니시의 감정은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감정의 결과를 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2. 20

재판장 판 사 노 원 욱
판 사 정 일 성
판 사 이 영 대

별지 제 1 목록

증제번호	물 건	수 량
1-6	유 서	2장
2-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김기설)	1장
3-1	책표지(김기설의 필적)	2매
5-1	업무일지	1권
7-1	조국은 하나	1권
7-2	메모지	2장
8-1	서울지검 북부지청 85형제43084 기록	1권
9-9	수강노트(화학과 3년)	1권
9-10	사투의 의의	4매
9-16	what is chap 2	9매
9-18	수강노트(양론)	1권
9-24	일터에서 90	1권
9-25	전화수첩	2권
9-126	Two Tac	13장
10-1	이력서(김기설 작성)	1매
11-1	수 첩	1권
13-1	연말카드	1매
13-2	편 지	1매

별지 제 2 목록

증제번호	물 건	수 량
9-1	수신:김정훈 발신:김명훈	1매
9-91	들불 창간호	1권
9-95	노동자의 진실비판(혁명의 불꽃 7호)	1권
9-98	혁명의 불꽃 2, 3, 4호	각 1권
9-100	혁명의 불꽃 10호	1권
9-101	혁명의 불꽃 8호	1권
9-102	혁명의 불꽃 10호 독립보충판	1권
9-104	혁명의 불꽃 (44년 5월 22일)	1권
9-111 내지 116	혁노맹 창건 선언문 및 재건대회 의사록 (1)내지 (6)	각 1매
9-122	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들자("혁명의 불꽃" 창간호)	1권
9-125중	①혁명의 불꽃 제6호 (신새벽 비판) ②혁명의 불꽃 제10호 독립보충판 ③6월 이후의 정치정세와 통일투쟁 (민족민주혁명 학생투쟁 연맹) ④현 정치상황의 이해를 위하여 (같은 명의) ⑤현재의 정세와 피티의 전술적 결의 (같은 명의) ⑥"불꽃" 창간호 독립보충판 (혁노맹 명의)	각 1권

별지 제 3 "혁명의 불꽃"그룹 관련 유인물 및 그 내용고지

순 번	유 인 물 명	내 용 요 지
1	"혁명의 불꽃" 제 2,3,4 호 "혁명의 불꽃" (44년 5월 22일)	0 제2호(혁명주의의 대오를 굳건히) -전국적 정치신문에 의한 노동자 전위조직·노동자당의 건설 등 주장하면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민족민주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선동, 혁명정세를 준비할 것을 주장 0 제3호(혁명적 정세, 임시혁명정부) -당면 혁명적 정세는 임시혁명정부를 최상의 전술지침으로 하며 무장봉기의 실제 기술적 준비를 요한다면서 올림픽투쟁·조국통일투쟁을 선동하고, 남한혁명과 통일문제를 파쇼타도-임시혁명정부수립-민주민중공화국-연방공화국(통일)의 도식을 주장 0 제4호 -현정세는 혁명적 정세이고 전투조직에 의한 물리적 무장봉기로 파쇼권력을 타도하여 민주민중공화국 건설해야 통일의 유일한 경로라고 하면서 광주사태를 남한혁명의 전형이라 주장

순 번	유 인 물 명	내 용 요 지
2	"혁명의 불꽃" 제 6 호 (신새벽 비판)	-기회주의적 사이비 맑스·레닌사상을 분쇄하고 혁명적 정세관에 입각한 전술관하에 광주학살파쇼권력 자체를 타도하며, 올림픽투쟁을 계급투쟁 관점에서 전개하고, 자본주의 발달이 사회주의로의 급속한 발전임을 전제하여 계급투쟁의 전면적 발번을 실현할 것이라 선동
3	"혁명의 불꽃" 제 7 호 (노동자의 진실비판)	-김일성의 조선노동당 창건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전위적 혁명가로 구성되는 규율집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급투쟁을 합·비합투쟁으로 전개해야 하며 민중의 당은 합법영역에서의 혁명선동으로 민중혁명을 유도, 자유주의적 부르조아를 무력화시킬 것 등 주장
4	"혁명의 불꽃" 제 8 호	-혁명주의자들의 공동 정치신문 발행으로 당적활동을 전개, 단결강화해야 하고, 민중무장봉기로 임시혁명정부를 수립,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할 것을 주장
5	"혁명의 불꽃" 10호	-전민련의 진로에 관하여 자유주의적 보수야당의 후비대로 전락하는 길과 독자적 민중단결로 민중공화국 건설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발전하는 길이 있다면서 혁명정부 수립과 민중공화국 건설을 위한 진로를 주장
6	"혁명의 불꽃" 독립보충판	-현정권의 파쇼탄압으로 민중의 봉기는 필연적이고 현정세는 혁명적 정세이므로 노동계급은 대중적 무장봉기를 전국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 폭력적 계급혁명을 선동
7	"6월이후의 정치정세와 통일투쟁" ("민족민주혁명투쟁연맹" 제작명의)	-현정세는 혁명적 정세 ????????????? 이므로 노동자계급의 총파업과 전민중의 무장봉기, 노농연대투쟁을 전개하여 민주민중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급투쟁적 통일투쟁을 선동.
8	"현 정치상황의 이해를 위하여" (7번과 같은 제작명의)	-혁명적 정세관에 입각, 전계급연대의 파쇼타도 및 민중정권수립을 위한 폭력적 계급혁명을 선동하면서 통일투쟁은 민족문제로부터 남한 파쇼정권에 대한 계급혁명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9	"현재의 정세와 피티의 전술적 결의" (7번과 같은 제작명의)	-민중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임시혁명정부 기치 아래 전국적 총파업위원회 등의 구성으로 군사파쇼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폭력적 계급혁명을 선동

별지 제 4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관련 유인물 및 그 내용고지

순번	유인물명	내 용 요 지
1	"불꽃" 창간호 독립보충판 -전횡하는 백색테러	- 국가권력은 지배계급의 폭력기구로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에 야수적인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혁명군과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여 무장봉기로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계급적 폭력혁명을 선동
	-전교조 사수투쟁을 임시혁명정부 쟁취투쟁으로(혁노맹 명의)	- 전교조 사수투쟁은 계급적 투쟁이라면서 노동계급 중심으로 각 계층이 연대하여 전민중이 임시혁명정부의 수립투쟁을 전개해야 이를 사수할 수 있다고 주장, 민중연대 계급혁명을 선동
2	"들불" 창간호 (들불그룹 명의)	-남한 파쇼체제는 힘의 우위를 통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 자본주의화를 통한 통일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므로 민중은 식민지 예속 파시즘을 타도하고 반제민중민주공화국 수립을 통하여 분단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등 "혁노맹" 핵심원들이 구상에 대한 이적단체 "들불"의 혁명관과 통일론을 주장·선동

■자료 A-17 (동아, 91.12.20.)

「유서代筆」姜基勳씨 3년선고

서울地法

자살방조 保安法 적용 利敵단체 가입혐의도 인정

"國科搜감정 公正" 자격정지 1년6월 병과

분신 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金基卨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와 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혁명의 불꽃」(혁노맹의 전신)에 가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총무부장 姜基勳피고인(27)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20일오전 1심공판에서 징역3년의 유죄가 선고된 姜基勳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石東律>

서울 형사지법합의25부(재판장 魯元旭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姜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가입및 이적표현물소지)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감정인인 이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52)의 경력및 감정과정과 방법, 법정진술등을 종합해 볼 때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며 자살방조부분에 대한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변호인측 감정증인인 일본인 필적감정가 오니시 요시오(71)의 필적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한글을 전혀 모르는 점등을 고려할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민련에서 숨진 金씨의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수첩도 국과수의 감정을 받아들여 조작했음을 인정했으나 변호인단이 숨진 金씨가 작성한것이라며 법정에 제출한 城南 터사랑청년화우회 방명록등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진짜 숨진 金씨의 필적인지가 의심스럽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숨진 金씨의 여자친구인 洪成銀씨(25)의 진술에 대해서는 姜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야기한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서대필을 인정한 이상 자살을 방조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돼야 마땅하지만 유서대필경위가 적극적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양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姜피고인의 가족과 전민련관계자등 1백여명이 재판을 지켜보았다.

이들은 재판부가 姜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는 내용의 판결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내내 혀를 차며 불만을 표시하다가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 일제히 재판부에 야유를 보냈다.

姜피고인은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 격앙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관둬, 거지같은 ×들아. 그따위 재판은 집어치워』라고 외쳤다.

■자료 A-18 (동아, 91.12.20.)

國科搜공신력 인정 有罪판결

「유서대필」1審선고 배경

재판부도 확신없어 막판까지 고심

변호인단 抗訴태세 상급審에 관심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金基高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총무부장 姜基勳피고인(27)에게 1심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이사건 법정공방 1라운드는 검찰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어 검찰측의 승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절차적 의미에서 뿐만아니라 실체적 의미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韓元旭부장판사)스스로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5일 심리를 종결하고서도 『확실한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며 초조해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판결선고직후 『신이 아닌 인간의 판결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측이나 변호인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진지한 자세로 심리를 진행해온 재판부가 이처럼 판결전후 고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이 사건은 수사및 재판의 전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직접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가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를 100% 신뢰하기에는 그 무오류성(無謬性)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에 대해 국과수는 동일인의 필적임을 전제로 유서의 필적과 같다고 감정했으나 나중에 이 업무일지는 세명이 쓴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이사건 공소사실 입증이 과연 「엄격한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순간까지 저울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결국 유죄쪽으로 기운 데에는 국과수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공인된 필적감정기관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주요한 것같다.

즉 재판부가 이번에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법정에서 필적이 다툼의 대상이 돼도 이를 감정할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검찰과 재야는 지난5월부터 7개월여에 걸쳐 숨진 金씨의 유서를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공방과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숨진 金씨의 유서를 姜피고인이 대필했으며 이는 4월26일 명지대생 姜慶大군이 시위도중 전경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이후 2、3일 간격으로 잇따랐던 일련의 시국성 분신 투신자살의 배후에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야에서는 숨진 金씨의 유서가 자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姜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했다고 본 것은 당시 시국불안의 원인을 호도하고 재야의 존립기반인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과 재야의 도덕성시비라는 법률외적인 측면에서도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었다.

1심에서 姜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야의 도덕성 시비는 매듭이 지어질 것 같지가 않다. 변호인단은 20일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姜피고인이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姜피고인이 숨진 金씨의 유서를 결코 대필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검찰도 내심 이같은 사실을 알고있을 것입니다. 오늘 판결은 상식과 진실의 패배입니다』

반면 검찰은 선고공판 전날인 19일에 벌써 姜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을 낙관하고 예상선고형량까지 점치는분위기였다.

검찰은 그리고 이번 판결로「조작수사」라는 누명을 벗게되고 재야의 실체를 일부나마 국민들에게 인식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재판사상 동반자살 외에는 자살방조죄가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사건 재판은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林彩靑〉

■자료 A-19 (동아, 91.12.20.)

91.12.21 동아

記者의 눈

「앙금」남긴「유서대필」公判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金基高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姜基勳피고인(27)에게 20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유서대필사건은 여전히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도선고형량에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재판부 스스로도 유죄판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때 피고인이 유서를 썼다고 단정할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리면서도 「객관적 진실은 알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계속「유죄선고를 내리기까지에는 증거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적감정을 거부한 변호인단의 잘못도 있다」며 변호인을 원망하는듯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신이 아닌 인간의 판결임을 이해해달라」고도 했다. 이는 유죄선고를 내리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으나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음을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제1라운드에선는 거짓이 진실을 이긴 셈』이라며 재판부를 성토했다.

검찰 역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7년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 1년6월만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의 당사자들중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골치아픈 사건」을 마무리해 홀가분해하기보다는 어쩐지 착잡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이같은 아쉬움이 남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물론 법원의 관계자들중에는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선고가 났을 것』이라며 『1심재판부로서 현실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法諺이 이 사건에서 과연 원칙으로 존중됐는지 여운이 남는다.

韓起興〈사회부〉

▣자료 B-9

성 명 서

- 유서사건 조작사건 1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강기훈동지에 대한 재판은 강기훈동지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양심을 심판하는 재판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부 자신의 양심을 심판을 재판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판결은 거짓과 비양심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의 암담한 풍토와 그동안 정권유지의 도구가 되어 왔던 사법부의 추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이는 것이었다.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우리측에서 제시한 명백하게 강기훈동지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그 많은 증거와 증언을 애써 외면하고 국과수의 부실한 감정결과와 검찰의 불법수사과정에서 홍성은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강기훈동지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판결은 엄청난 비약과 상식을 뛰어넘는 억지로 가득찬 것이었다.

오욕의 전통을 충실하게 고수하는 오늘날의 사법부의 체질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몰상식한 판결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의 이 판결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구제불능의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져갈 것 또한 우리는 지금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검찰의 유서대필 조작음모에 1심재판부까지가 공범으로써 합세해버린 오늘, 우리는 다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 등 국가기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한 인간의 인권과 존엄이 너무도 쉽게 짓밟혀야 하는 상황, 이것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인권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강기훈동지는 결백하기 때문이며, 진실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기훈동지의 결백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훈동지의 무죄판결을 쟁취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91. 12. 20.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자료 B-10

성 명 서

본회는 재판부가 공의와 양심에 근거하여 유서대필사건의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1심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0,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와 정황들은 설득력을 상실한 것들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선고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았으며, 분노와 비애감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가 정권의 잘못을 은폐하여 진리와 정의수호를 포기한다면 결국 국가의 법질서는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본회는 강기훈씨의 무죄를 확신하는 바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1991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박 광 재